

2022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조사지침서



목 차

I.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개요	1
II. 조사업무 수행 시 유의사항	5
III. 조사표 작성방법	16
IV. TAPI 사용방법	85
V. 조사 사례별 판단	97
부록1. 직산업 분류표	117
부록2. 조사표	131

I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개요

1. 도입배경

- 장애인 경제활동 통계는 장애인 고용정책의 평가와 새로운 정책대안 제시 등을 위한 중요한 국가 기본 통계 인프라로,
 -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는 장애인실태조사(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고용패널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가 있으나,
 - 전체 국민 경제활동상태와의 절대적 비교가 용이하지 못하거나 조사특성 상 한계가 존재하여 정책분야에서의 활용도가 떨어짐
- 우리나라 국민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통계는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와 지역별 고용조사(통계청)로,
 - 동 조사에서 장애인의 경제활동 규모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 장애특성 등을 고려한 조사 전반과정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함

관련 조사 주요 특징

구 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주체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조사목적	경제활동상태 관련 규모 파악	노동시장에서의 이동 및 변화 추이 분석	장애인 복지 관련 전반의 실태 파악
조사대상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만1천여명	만 15~75세 등록장애인 5천여명	전체 연령대 장애인 7천여명
조사방법	횡단면조사	패널조사	횡단면조사
조사주기	연 2회(상/하반기)	1년	3년
조사기간	약 2개월 이내	3개월	3개월
결과활용	특정시점에서의 장애인 고용 현상 및 관심 이슈 파악(단기간)	장애인 경제활동에 대한 내재 요인 파악(장기간)	장애인 복지 전반의 실태 파악
주요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격 ■ 실업률 등 민감한 추정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표본설계 ■ 기준시점 준수를 위한 설계 ■ 통계청과 동일한 정의, 기준, 방법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상태의 총량이 아닌 변화에 관심 ■ 정보 활용까지의 시간이 오래 소요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 인구총조사 격 ■ 15세 미만, 미등록 장애인 포함으로 장애 출현율에 관심 ■ 기준시점 준수가 어려움

2. 조사목적

- 장애인의 경제활동 즉,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장애인력 자원의 규모와 경제활동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지원 활용정도 등의 정보를 장애인의 주요한 특성별로 생산, 분석하고자 함

3. 법적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

4. 조사대상

① 조사대상의 정의

- 모집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증명서 소지자로서, 조사대상월 15일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인 등록장애인(제주도 포함, 기타 도서지역 제외)
 -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및 접근 불가능한 요양소 수용자 제외

② 추출틀 : 2021년 12월말 기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등록 DB

③ 표본크기: 11,000명

5. 조사기간

- 조사대상 기간 : 2022. 5. 15(일) ~ 2022. 5. 22(월) [7일간(日~月)]
- 사전조사 기간 : 2022. 4. 29(금) ~ 5. 15(일)
- 본조사 기간 : 2022. 5. 23(월) ~ 2022. 7. 17(일) [8주간]
- 자료입력 및 내검기간 : 본 조사기간을 포함한 12주간

6. 조사주기

- 연 2회(상/하반기)

7. 조사내용

- 개인 인적사항
 - 개인특성 : 성별, 생년월일, 교육정도, 혼인상태 등
 - 장애특성 : 장애유형, 장애발생원인, 장애발생시기 등
- 고용 및 구직상태
 - 구직상태 : 지난주 주요활동, 구직여부, 취업희망여부 등
 - 고용상태 :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판별 등
- 취업자
 - 종사상지위 : 임금/비임금근로자 여부, 상용/임시/일용직 여부 등
 - 근무환경 : 근무처, 산업, 직종, 사업체 형태 및 규모, 근로시간, 월평균 임금, 직위 등
 - 비정규직 여부 : 근로계약, 파견/용역 여부, 가정 내 일자리 여부 등

○ 실업자

- 일자리 경험 : 과거 일자리 경험, 그만둔 사유, 산업, 직종, 지위 등
- 희망 일자리 : 희망하는 고용형태, 산업, 직종, 월평균 임금 등
- 구직활동 : 구직활동 기간, 구직경로 등

○ 비경제활동인구

- 현재 상태 : 근로 가능 여부, 구직하지 않는 이유 등
- 일자리 경험 : 구직경험, 과거 일자리 경험, 그만둔 사유, 산업, 직종, 지위 등
- 희망 일자리 : 향후 취업의사, 희망하는 고용형태

○ 기타

- 고용서비스 욕구 : 필요한 국가의 고용서비스
- 가구정보 : 가구주, 가구원 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등

8. 조사방법

○ 조사원이 각 대상자를 직접 방문 조사하는 「면접조사식 방법」과 동시에 자료 입력(TAPI1)이용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에 한해 직접 면접이 불가능한 경우 장애인 동석 하에 대리응답 일부 허용
- 취업자 등 3회 이상 방문 시에도 접촉이 불가능한 경우 비대면조사 일부 가능
- 사전조사기간에 사전조사표 작성

9. 조사절차

① 최종 조사표 설계

○ 기초조사표를 근간으로 시범조사 등을 거쳐 최종 조사표 확정

- 실제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수요자의 욕구를 사전 조사하여 반영함으로써 향후 자료 활용도를 높임
 ↪ 정부, 학계, 장애인계, 공단 등을 대상으로 면접 등의 수요조사를 실시함

② TAPI 개발

- 기초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고 조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TAPI를 도입하여 태블릿PC용 조사표를 개발·활용함

③ 시범조사 실시

- 실제 조사에 앞서 소규모의 표본을 추출하여 실제 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본 조사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수립하여 조사수행의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함

1) TAPI(Tablet PC-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 컴퓨터를 이용한 면접조사로 조사담당자들이 태블릿PC(또는 PDA 등 소형장비)를 들고 다니면서 조사한 후 조사내용을 직접 입력하는 기법

④ 본 조사 실시

- 조사대상 추출 및 홍보, 면접원 교육 등의 조사 준비 후 본 조사를 실시함(사전조사 포함)

⑤ 자료처리

- TAPI로 수집된 자료는 매일 각 지역사무소에서 입력자료 점검 및 보완
 - TAPI 미실시 응답자의 조사표는 자료입력 및 내검기간 내 입력 및 점검

10. 조사활용

- 장애인의 경제활동 상태(정책대상 규모) 파악
 - 경제활동인구, 취업자(비정규직근로자, 불완전취업자 등),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구직단념자, 한계근로자, 근로희망자 등)의 규모 파악
-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보 제공
- 장애인 노동시장의 공급측면에서의 종합적인 통계로의 활용

11. 조사인력 및 조사체계

- 조사인력
 - 리서치 전문업체 소속 전문 조사원
- 조사체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리서치 업체 ⇒ 조사원 ⇒ 조사대상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종합기획 ·조사실시 및 지도 ·결과공표 및 보고서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준비 ·조사결과 분석
리서치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관련 프로그램 개발 ·현지조사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원 채용 및 관리 ·실사 및 부호기입, 지도

☞ 표본설계 및 추출 등은 외부 전문가에 의해 별도 실시

12. 조사결과 공표 및 보고서 발간

- 조사결과 공표: 2022년 12월(예정)
- 보고서 발간: 2022년 12월 「2022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II

조사업무 수행 시 유의사항

1. 실사 전 준비단계

- 조사대상자 위치 파악
 - 응답자 사전조사 결과(취업 여부) 확인 및 적절한 조사 시간대 파악
 - 응답자와의 전화 컨택 및 조사 일정 협의
 - 응답자 사전조사 결과에 따른 주요 조사 내용 숙지
 - 조사준비물 준비 (신분증, 공문2종, 팸플릿, 태블릿PC, 지침서, 예비용 설문지, 응답자 선물 등)
 - 읍면동 주민센터 및 사회복지 담당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협조 요청
- ※ [참고] 공단 및 고용노동부,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 포스터 부착, 신문광고 게재 등을 통한 오프라인 홍보 실시 상황 숙지

2. 본조사

- 조사대상자 방문
- 조사 홍보 자료 제공 및 조사 안내
- 응답자 면접 및 조사내용 태블릿PC에 입력
- 조사완료 후 조사대가 및 감사의 현물 또는 선물 제공
- 조사완료 후 조사내용 검토 및 보완

3. 일반적 유의사항

- 조사지침서 등을 미리 숙지하고 조사원증(신분증)을 반드시 패용하고 조사에 임하도록 함
- 조사가 완료된 조사 자료는 내용상의 모순이나,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를 반드시 현장에서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은 다시 방문하여 보완함
 - 누락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함
 - 기타에 표시된 경우 사유가 기입되었는지 확인하고 또한 기입된 내용이 다른 응답항목에 포함되는지 확인함
 - 응답내용이 수정된 경우 TAPI 설문 상에 제대로 수정을 하여 착오가 없도록 주의함
-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을 직접 조사해야 함
 - (1) 조사방법 관련
 - 모든 조사대상자를 직접 만나서 조사하여야 하나, 취업자 등 응답자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 직접 면접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일부 제한적(30% 이내)으로 전화조사를 진행함
 - 조사완료 후 답례품 지급 후 수령 서명을 받고, 전화조사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음

(2) 대리응답 관련

- 청각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등 응답자와 직접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대리응답을 일부 허용함
 - 대리조사 시 조사대상자와의 사실관계를 반드시 파악하여 신뢰성 있는 응답이 가능한 자인지를 파악한 후 조사를 진행함(대리응답 확인서 기재)
 - 대리인은 제1보호자로서 부모, 가족 등이 가능하며, 가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 간병인 등 주변지인이 대리인 자격을 제한적으로 갖출 수 있음
 - 대리인과의 조사는 응답자와의 동석을 원칙으로 함
- 불가항력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해당사유를 TAPI 인터뷰어에 반드시 기록하여 보고함
- 원표본 유지율이 매우 중요한 조사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사유에 대해 사후 승인 과정을 거쳐 대체표본 배부가 진행됨
 - 원표본의 대체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최대한 원표본을 접촉하여 조사를 진행하도록 함
 - 조사 비성공 사유가 '2. 단순거절', '6. 실거주지 다름, 연락처 및 새주소 가르쳐줌', '4. 3회 이하의 외출로 인한 부재'의 경우 원표본 대체 신청이 불가능함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통계법(제33조 및 제39조)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조사된 자료는 타인의 눈에 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관리하고, 조사활동 중에 분실 또는 도난 훼손되지 않도록 함
- 응답 항목 중 「기타」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함

〈조사의 핵심 원칙〉

원표본 조사	원표본을 반드시 조사하고, 원표본을 조사할 수 없을 경우 대체1-대체2-대체3 순차적으로 대체
조사 기준시점 준수	5월 15일 주간의 경제활동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조사
취업자 표본 탈락 최소화	취업자로 확인된 대상자의 표본 탈락을 최소화 (직접 면접이 곤란한 경우 전화조사 진행 가능)
대리응답 원칙 준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응답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대리응답 허용 대리응답은 보호자(부모, 가족)를 통해 받고, 보호자를 통한 대리응답이 어려울 경우 시설관계자, 지인, 복지사를 통해 진행

4. 장애유형별 유의사항

1) 지체장애인

지체장애는 흔히 체간(몸통), 상지와 하지에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하며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로 구분된다.

- 면접일정을 결정할 때, 해당 장소의 접근성을 확인하고 출입구나 주차장의 계단 등과 같은 잠재적 장벽이 접근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 장애인의 휠체어를 잡지 않으며, 장애인이 휠체어를 밀어주기를 바란다고 지레짐작하지 말고 항상 먼저 묻고 나서 이동해야 한다.
- 휠체어 사용자와 장시간의 대화를 나누는 경우, 휠체어 사용자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의자에 앉고 조사를 진행하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위해 좌석 공간을 마련한다.
- 모든 휠체어 사용자가 마비 환자는 아니므로 휠체어 사용자가 다른 가구로 옮겨 앉거나 휠체어에서 내려 이동하더라도 놀라지 않도록 한다.
- 휠체어 사용자가 아닌 경우 의자를 미리 빼주거나 위치를 조정해주는 것이 좋다. 다만 미리 의사를 물거나 “의자를 밀어드릴까요?” “자리를 이쪽으로 할까요?” 등의 질문을 통해 응답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전신마비로 응대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응답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응답자가 충분히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대리응답자가 정확하게 표기했음을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대답하도록 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기다려야 한다.

조사 진행 시 참고사항 !

- 응답자 본인의 직접 대면면접이 어려운 경우 가족의 도움을 받아 조사를 진행하도록 함
- 가족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족의 협조가 어려울 경우 응답자와 친분이 있는 주변 분들(이장, 옆집 이웃)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한 후 조사를 진행함
- 급수가 높은 응답자들은 활동성의 제약으로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접근이 쉬우며 협조도 잘되는 편임
- 50~60대 남자 지체장애인의 경우는 장애 때문에 실직한 분들이 많아 공통적으로 재취업에 대한 의지가 큰 편임

2) 뇌병변장애인

뇌병변장애는 뇌성마비, 뇌출중, 외상성 뇌손상 등의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상지와 하지의 마비가 나타나 주로 보행장애와 일상생활동작의 제한을 받게 된다.

- 언어 구사에 어려움이 많은 경우에는 충분한 답변 시간을 주어야 하며 천천히 설문을 진행해야 한다.
- 언어장애가 심한 편이나 대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답변을 모두 청취하고,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거나 조사원 임의로 정리하여 “그렇다는 말씀이죠?” 등의 질문을 하게 될 경우 응답자는 기분이 상하거나 위협을 느낄 수 있다.
- 언어장애가 심해서 대화가 어려운 경우, 미리 양해를 구하고 설문지를 반복해서 읽어주거나 요약해서 전달하여 응답자가 양자택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 일부 심각한 뇌성마비, 또는 기타 근육이나 신경 장애를 앓고 있는 이들은 글, 타자, 또는 통신용 자판이나 기타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 언어장애가 있고 온몸을 흔든다고 지능이 낮은 사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 설문 도중 음료를 먹는 경우 상대방이 힘들어하면 “도와드릴까요?”라고 의사를 물은 후 도와주는 것이 좋고, 빨대를 사용하여 음료를 권하는 것이 좋다.

조사 진행 시 참고사항 !

- 장애 정도가 심해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와 동석하여 대리 응답으로 진행할 수 있음
- 중증장애인은 요양소나 병원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시설에 입소해 있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시설 관계자를 통해 조사하며, 이 경우 시설에서 상담을 전담하는 관계자와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시설 관계자가 개인 신상(학력, 장애발생 시기 및 원인)을 대부분 파악하고 있으나, 모른다고 할 경우 **보호자를 통해 재확인함**

3) 시각장애인

시각장애는 빛이 눈으로 들어와 뇌까지 전달되는 과정 중 어느 부위가 손상되어 시력을 잃거나 시야가 결손된 것을 말한다. 전체 시각장애인 중 전혀 볼 수 없는 장애인은 소수이며 대부분은 명암이나 물체의 형태를 구분할 수 있다.

- 실명자나 시각장애인에게 통상적인 어조로 직접 마주보고 이야기한다. 문서화된 정보를 큰소리로 읽어줄 준비를 갖추거나 훈련된 낭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설문 내용을 읽어주고 번호를 선택하게 한다. 단, 이 경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것임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조사원은 응답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기입하기 전 “2번 000라고 하셨죠?”라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응답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안내견을 건드리거나 주의를 산만하게 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동물은 애완동물이 아니다.
- 실명자가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을 사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저쪽에”이란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실명자나 시각장애인의 위치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말해준다.
- 설문 도중 음료를 마시는 경우 컵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음을 알려주고 손이 있는 방향으로 밀어주되, 시각장애인의 컵을 완전히 잡을 때까지 컵에서 손을 떼지 않은 것이 좋다. 시각장애인의 컵을 쳐서 쓰러뜨릴 위험이 있으며 뜨거운 음료일 경우 부상의 위험이 있다.
- 그러나 이 경우 시각장애인의 팔을 끌어다 컵에 대주거나 손에 쥐어주는 것은 좋지 않다.

조사 진행 시 참고사항 !

-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경계를 심하게 하므로 면접원의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함
- 방문 시 장애인의 타인에 대해 불신하는 마음 때문에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문을 열어주려고 하지 않지만, 일단 조사 협조를 얻으면 문항을 천천히 읽어주고 진행하면 순조롭게 진행됨

4) 청각장애인

청각장애는 귀를 통하여 들어온 소리를 감지하여 뇌에 전달하는 경로에 손상이 있어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거나 무슨 소리인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또한 평행기능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청각장애에 포함된다.

- 청각장애인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는 얼굴을 마주본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선을 끌어야 한다. 말할 때에는 눈을 보면서 입모양과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필요하면 반복해서 말해준다.
- TAPI 화면의 <수화보기>를 눌러 수화동영상을 보며 진행하도록 한다. 단, 모든 청각장애인의 수화를 할 줄 아는 것은 아니다.
- 청각장애인의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러한 방법 역시 효과적이지 않을 때에는 글을 쓰거나 컴퓨터 단말기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볼 수 있다.
- 청각장애인들에게 몸짓 및 얼굴 표정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색안경, 커다란 챙모자는 전체 얼굴 특히 눈을 가릴 수 있으므로 의사소통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
- 자신의 의도와 태도를 강조하기 위하여 의미 있는 표정이나 몸짓을 이용한다.
- 답변은 스스로 기입할 수 있기 때문에 또박또박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시간, 장소 등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은 알려준 즉시 다시 물어봐서 이해했는지를 확인한다.

조사 진행 시 참고사항 !

- 조사 시 글로써 대화를 하고, 입을 크게 벌리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림
- 연세가 많으신 분은 글자나 수화를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큰소리로 이야기하여야 함
- 중증이면서 주변에 의사소통 해 줄 사람이 없는 경우나 부부가 모두 같은 장애를 가진 경우 청각장애인의 평소에 도움을 받는 지인, 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 농아인협회를 통해 컨택하고 설문 시에도 같이 동석하여 설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 요청
- 수화를 하는 장애인의 경우 TAPI의 수화동영상을 적극 활용할 것
- 수화를 하다보면 표정이 괴장되거나 인상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수화는 얼굴표정 역시 대화의 수단이므로 응답자의 표정에 면접원이 과민반응해서는 안됨

5) 언어장애인

언어장애는 의사소통을 위해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음성을 통하여 표현하는 과정 중 어떤 부분의 이상으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 많은 언어장애인들이 언어장애에도 불구하고 말로써 의사소통을 한다. 언어장애인의 대화속도는 비장애인만큼 빠르지 않으며 청각장애를 함께 지닌 경우 상대방의 대화를 이해하는데 더욱 시간이 걸림을 인식하여야 한다. 얼굴, 눈을 바라보고 대화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인다.
- 언어장애인의 오랫동안 이야기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고 몇 마디 말을 하여 경청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 언어장애인의 말하는 것이 힘들어 보일지라도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끝마칠 때까지 기다린다. 언어장애인의 말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듣고 함부로 추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조사 진행 시 참고사항 !

- 본인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가족을 기다렸다가 진행하거나 글로 써서 보호자가 몇 시 쯤 오면 만날 수 있는지 확인 후 조사하도록 함
- 언어장애는 귀도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설문 과정 시 청각장애와 비슷하게 글로 쓰며 조사를 하거나 수화동영상을 활용함
- 수화나 글을 알 경우 컴퓨터 화면을 직접 같이 보면 응답 받고 대화가 필요한 경우 문자 / 필담으로 대화함

6) 안면장애인

안면장애는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노출된 안면부의 면상반흔, 색소침착,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 등이 남아있는 것을 말한다. 노출된 안면부란 상지나 하지, 몸통 이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 안면(화상)장애인을 보았을 때 빤히 쳐다보거나 함부로 흉터에 손을 대거나 하는 행동은 예의에도 어긋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됨을 주의해야 한다.
- 자신의 상처를 보고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나 시선을 꺼려하므로 한 여름에는 긴 상의/하의를 입거나, 모자 또는 장갑 등으로 상처를 가리고 다니게 되는데 이들에게 무리하게 상의나 하의를 걷게 하거나 모자나 장갑 등을 벗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화상이나 외상으로 언어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뇌병변 장애인이나 언어 장애인에 대한 대응을 참조하며 천천히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 부상으로 인해 응대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응답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응답자가 충분히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대리응답자가 정확하게 표기했음을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 진행 시 참고사항 !

- 안면화상부위로 타인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음
- 응답자가 면접원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경우 응답자와 면접원이 벽(문)을 사이에 두고 대화하는 것도 방법임
- 경증장애인 경우 별 어려움 없이 진행 가능하나, 중증일수록 대부분 주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함

7) 신장장애인

신장장애는 혈액 내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변을 만드는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는 경우 그리고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신장장애에 포함된다.

- 갑작스럽게 힘을 주어 혈액투석을 하는 팔목, 혹은 복막투석을 하는 복강부분을 잡거나 밀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 신장장애인은 투석치료와 이외의 당뇨병, 고혈압 등의 합병증으로 인해 몸의 피로가 빨리 찾아올 수 있다. 피로를 느끼는 경우 충분한 휴식을 취하거나 다음 약속을 잡는 것이 좋다.

조사 진행 시 참고사항 !

- 신장투석 받는 날짜를 파악하여 신장 투석 다음날에 컨디션 확인하여 방문함
- 응답자가 회사에 장애인인 것을 알리지 않고 취업을 했는데 혹시나 조사 이후에 회사에 장애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조사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응답자가 조사한 사실, 응답한 결과가 모두 비밀이 보장되므로 안심해도 된다고 설득하여 진행하고 회사로 연락을 취하거나, 회사 부근으로 방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함

8) 심장장애인

심장장애는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심부전증 또는 협심증 등으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한다. 심장 이식을 받는 경우도 심장장애에 포함된다.

- 인공심장을 가진 장애인의 경우, 시계 초침과 같은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실례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 피로를 느끼는 경우가 있으므로 힘들어하는 경우 휴식시간을 가지거나 다음 약속을 잡는 것이 좋다.

조사 진행 시 참고사항 !

- 중증인 경우 사망한 사례가 있을 수 있음
- 경증 장애인의 경우는 별 어려움 없이 진행이 가능하나, 중증 장애인은 대부분 병원에 입원 중이라 병원 방문 후 보호자를 통해 응답을 받음

9) 간 장애인

간장애는 간경변, 간암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최초 진단이후 1년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간을 이식받은 경우도 간장애에 포함된다.

- 간장애인은 간 기능의 이상 외에 표면적으로 별다른 이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약물치료 중인 경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므로 별다른 주의 사항은 없다.
- 다만 식도정맥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 간장애인의 어지러워하거나, 식은땀, 창백한 혈색, 호흡 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 본인에게 휴식이 필요한지 여부를 물어보고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다.
- 증세가 심하다고 느껴지면 본인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만약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이송해야 한다.

조사 진행 시 참고사항 !

- 경증 장애인의 경우는 별 어려움 없이 진행이 가능하나, 중증 장애인은 대부분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병원에 방문하여 보호자를 통해 응답을 받음
- 다른 장애보다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됨

10) 호흡기장애인

호흡기장애는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 호흡기의 착용이나 호흡 곤란으로 말하기 곤란한 경우 본인의 의사를 미리 확인하여 대리응답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응답자가 충분히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대리응답자가 정확하게 표기했음을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 진행 시 참고사항 !

- 산소통을 하고 있어서 숨을 쉴 때마다 힘들어해 말을 천천히 하며, 그로 인해 조사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 있음

11) 장루·요루 장애인

장루·요루장애는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을 말한다.

- 설문 도중 응답자의 주머니가 터졌을 때 가까운 화장실로 안내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킨 후 되도록 따뜻한 물을 마련하여 닦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 괈약근이 없는 관계로 가스가 수시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배출되기 때문에 소리 내어 가스가 배출이 되거나 냄새가 날 때 자연스럽게 무시하는 것이 좋다.
- 당황하거나 놀라는 모습,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응답자에게 침착한 인상을 주어 조사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사 진행 시 참고사항 !

- 보조도구 등을 착용하나, 간단한 일상생활은 모두 가능함
- 조사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신경질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음
-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응답자들이 많아서 재택률이 높기 때문에, 거절을 하지 않는 이상은 조사가 비교적 잘 진행됨

12) 뇌전증장애인

뇌전증장애는 대뇌 세포의 과잉 방전으로 의식소실, 운동성 활동의 변화 등 여러 종류의 임상증상이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 설문 진행 중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를 눕게 하고 머리 아래를 푹신한 것을 깔아준다. 또한 안경을 벗기고 넥타이, 단추, 허리벨트를 풀어주고 기도유지를 해주어야 한다.
- 주변의 딱딱하고 날카로운 물건을 치우고 경련 도중 어떤 것이라도 입에 넣어서는 안 되며 경련이 끝났을 때에는 옆으로 뉘어서 숨쉬기를 도와주고 입안의 분비물이 흘러나오게 한다.
- 완전히 깨어날 때까지 음식물이나 물을 주지 않아야 하며, 완전히 깨 때까지 주변에서 지켜보아 주거나 지켜봐달라고 도움을 청한다. 경련이 끝났는데도 숨을 쉬지 않는 경우 119를 불러야 한다.
- 설문을 마치지 못한 상태라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충분한 휴식을 가진 후 다시 시작하거나 별도의 약속을 잡는 것이 좋다.
- 당황하거나 놀라는 모습,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응답자에게 침착한 인상을 주어 조사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자극적인 말로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조사 진행 시 참고사항 !

- 발작 등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 진행에 큰 어려움은 없음
- 다른 장애보다 큰 어려움은 없음

13) 지적장애인

지적장애는 지적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지적장애는 보통 지능지수(IQ)를 통해 판단하는데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대개의 경우, 일반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되, 보다 구체적이고 쉽게 설명하는 것이 좋다. 그림이나 기호를 활용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지적장애인인 사용하는 말의 발음이 불명확하고 단어선택이 미숙하여 대화할 때 어려움이 많으나 천천히 신중하게 진행하면 설문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 지적 능력이 경계선에 있는 경우 어려운 설문을 쉬운 말로 풀어서 물어보고 대답을 유도하되 지나친 경우는 조사원자의 의도대로 대답하려는 경향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 지적장애인인 지능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반말을 하거나 나이 어린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데 생활연령에 맞게 존칭어를 사용해야 한다.
- 보호자가 있는 경우 지적장애인인 보다 편안한 상태에서 대답을 할 수 있으나 설문의 내용을 보호자가 모두 대답하거나 대답을 유도하는 경우는 조사원이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조사 진행 시 참고사항 !

- 발음이 어둔하고 동문서답이 많을 수 있으므로 면접원이 중간에 천천히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주면서 진행함
- 중증인 경우 학력 등 여러가지 기본 인적 사항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음. 이런 경우 보호자와 동석하여 대라응답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시설에 입소해 있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시설 관계자를 통해 조사함. 이 경우 시설에서 상담을 전담하는 관계자와 조사할 수 있도록 함

14) 자폐성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은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자폐성장애인은 감정, 의견의 표현이 서투르고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응답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 자폐성장애인은 낯선 장소, 익숙하지 않은 절차, 낯선 사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등에 심하게 불안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행동특성 즉, 착석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려 한다던가, 계속 소리를 낸다던가 하는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익숙한 장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 비장애인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음악, 소음, 냄새, 공간 등이 어떤 자폐성장애인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울 수도 있으므로 함께 하는 자폐성장애인의 이런 특성을 알고 배려하는 것이 좋다. 미리 보호자나 동반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

조사 진행 시 참고사항 !

- 대상자 중 미성년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이 경우 보호자(부모)와 컨택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보호자가 자녀에 대한 조사를 거절할 경우 “현재 장애인 고용정책이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아 국가에서 제대로 된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만들기 위해 이러한 조사를 하고 있으니 향후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좋은 일자리를 얻고 자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려해봐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여 보호자를 설득하도록 함

15) 정신장애인

정신장애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정신장애는 그 종류가 다양하며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이 정신장애에 포함된다.

- 비장애인과 대화하듯 설문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 면접 중에도 자연스럽게 약을 복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 약물이나 치료 과정에 따라 인지 과정이 느리고 이해가 느릴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설문을 진행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쉽게 설명해야 할 필요도 있다.
- 다그치거나 재촉하는 것은 응답자를 당황하게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답을 기다려야 한다.
- 조사원은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접근하는 것이 좋으며 편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 진행 시 참고사항 !

- 항상 정신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정신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들은 조사 당시에는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아 다른 장애보다는 조사하기가 수월함
-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이 없어 조사를 진행하다가 도중에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기 때문에 단어 선택 등 주의가 필요함
- 돌발행동 시 당황하지 않고 호응해줌

5. 거절·부재 상황별 대처 방안

거절 상황	대처 방안
<p>(심한 경계) 타인에 대한 경계가 심해 면접원의 방문을 꺼리고, 문을 열어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 시 가급적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같이 있는 시간에 방문을 약속하여 응답자에게 안정감을 준 상황에서 설문 조사를 진행함 응답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문을 조금 열어놓고 면접원이 밖에서 서서 응답을 받음 안면장애 등으로 응답자가 면접원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경우 응답자와 면접원이 벽(문)을 사이에 두고 설문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해 볼 것
<p>(경증 취업자) 장애인과 외관상 드러나지 않아 응답자가 회사에 장애인인 것을 알리지 않고 취업을 했는데 혹시나 조사 이후에 회사에 장애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조사를 거절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답자가 조사를 한 사실, 응답한 내용은 모두 비밀에 부쳐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회사로 연락을 취하거나 회사 부근으로 방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설득함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취업의 기회가 많아지는 것 아니냐며 응답자를 설득함
<p>(미성년 장애인) 보호자와 컨택 시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것도 속상한데 조사까지 해야겠느냐며 조사에 대한 거절이 심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자(부모)에게 조금이라도 좋아진 다른 사례나 영화의 예를 들어 친근하게 다가감 “현재 장애인 고용정책이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아 국가에서 제대로 된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만들기 위해 이러한 조사를 하고 있으니 향후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좋은 일자리를 얻고 자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려해봐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여 마음을 돌림
<p>(초고령 장애인) 연세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분께 왜 경제활동조사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조사는 만15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 연로하신 분들도 저희가 조사를 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어 계십니다. 연로하시지만 일자리를 원하는 다른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건강상의 이유로 직접 응답하시는 것이 어려우시면 자녀분이 대신 응답해 주셔도 됩니다.
<p>(보호자 거절) 장애 정도가 심해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조사 협조를 강력하게 거절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 시 공문이랑 조사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신원을 확인시켜 설득을 진행하고, 조선일보에 실린 광고를 보여주며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하는 조사임을 강조하여 보호자를 설득함
<p>(보호자 부재) 응답자는 조사에 참여할 마음이 있으나 거동을 할 수 없어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데, 보호자가 집에 잘 없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자, 가족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족의 협조가 어려울 경우, 응답자와 친분이 있는 주변 분들(이장, 옆집 이웃)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한 후 조사를 진행
<p>(응답자 부재) 응답자가 부재중인 경우 응답자는 없고 가족만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경제활동실태조사를 위해 방문드렸습니다”라고 메모와 연락처를 남겨 응답자의 장애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응답자가 경증장애인인 경우 가족이나 지인이 장애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 취지는 응답자 본인과 만났을 때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6. 방문 시 예상되는 질문과 응답방법

1) Q.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는 무엇입니까?

- A.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자,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 장애인의 경제활동 규모를 파악하여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실시되고 있는 국가적 조사입니다.

2) Q.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꼭 참여해야 합니까?

- A. 1. 이 조사는 전국 11,00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장애인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으로 선정된 조사대상자가 응답을 하지 않으면 조사 자료가 정확하지 않게 되어 결국 자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2. 모든 국민은 통계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통계법 제32조)

3) Q. 이 조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 A. 이 조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 보건복지부 협조 하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주) 한국리서치에서 자료 수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 Q.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 A.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5) Q. 면접원의 신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A. 정부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면접원의 신분을 보증하므로, 원하시면 전화를 통해 해당 면접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Q. 조사내용의 비밀보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 A. 1. 조사된 내용은 엄격히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남에게 누설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법 제33조)
2. 조사된 내용은 모두 부호화되어 전산 처리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 관한 내용인지 식별할 수 없습니다.

7) 기타 개인정보 관련 문의

질문	답변
내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조사대상자의 기본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저는 보건복지부에 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 제공하는데 동의한 적이 없는데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에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합니다. 한국리서치는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선생님의 정보를 위탁받았으며, 오직 이 조사 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예정입니다.
제 개인정보가 다른 곳에 활용될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생님의 개인정보는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상업적 목적으로는 절대 이용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각별한 보안을 통해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개인정보는 완전히 폐기처리 합니다. 한국리서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통계법을 준수합니다.

III

조사표 작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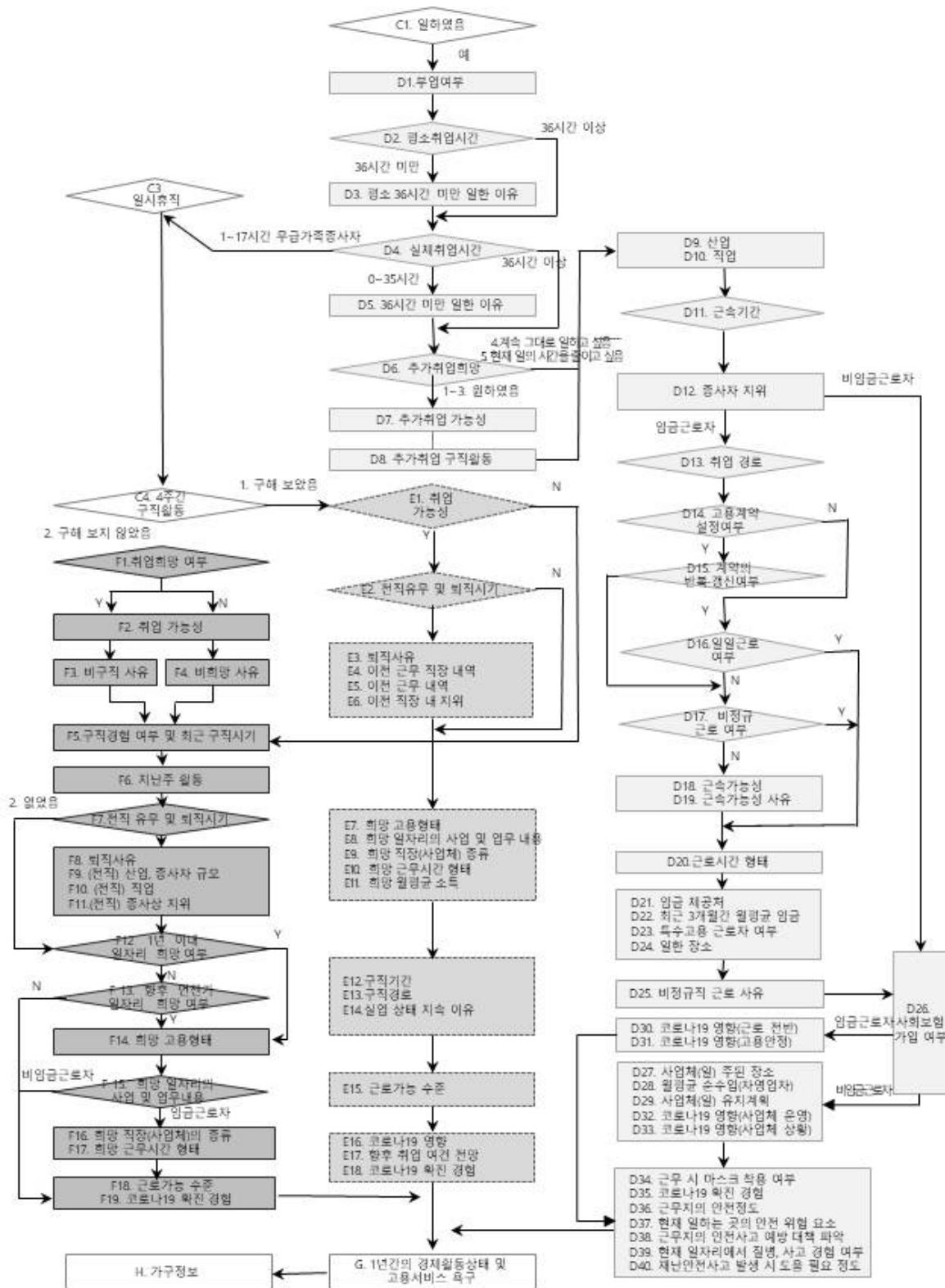
1. 조사표 구성

조사항목수 : 96개 항목

구 분	해 당 항 목
A. 인적사항 (5개)	A1. 성별 A2. 생년월일 A3. 교육정도 A4. 수학여부 A5. 결혼상태
B. 장애정보 (3개)	B1. 장애유형 B2. 장애 발생 시기 B3. 장애발생 원인
C. 경제활동상태 판별 (4개)	C1.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여부(자신의 일) C2.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여부(가족의 일) C3. 일시 휴직 여부 및 이유 C4. 4주간 구직 여부
D. 취업자 (39개)	D1. 부업 유무 D2. 평소 1주 총 일한 시간 D3. 36시간 미만 일한 이유 D4. 취업시간 D5. 지난주 36시간 미만 일한 사유 D6. 추가취업 또는 전직희망 여부 D7. 추가취업 또는 전직가능성·시기 D8. 추가취업특색 여부 D9. 직장(일) 특성 D10. 직업 D11. 현 직장(일) 취업시기 D12. 종사상 지위 D13. 취업경로 D14. 근로계약기간 설정 여부 D15. 계약(기간)의 반복·갱신 여부 D16. 일일근로 여부 D17. 근속지속 가능 여부 D18. 근속지속가능 기대기간 D19. 근속지속가능 기대기간에 대한 사유 D20. 근로시간 형태 및 사유, 전일제 희망 여부, 유연근무제 실시 여부 D21. 임금 제공처 D22.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D2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여부 D24. 가정 내 근로 여부 D25. 비정규직 근로 사유 D26. 사회보험 가입 여부 D27. 사업체의 주된 장소 D28. 월평균 소득 D29. 사업체 운영계획 D30. 코로나19가 현 직장의 근로에 미친 영향 D31. 코로나19가 현 직장의 고용안정에 미친 영향 D32. 코로나19가 사업체 운영에 미친 영향

구 분	해 당 항 목
	D33. 코로나19가 사업체 운영상황에 미친 영향 D34. 근무 시 마스크 착용여부 D35. 코로나19 확진 경험 D36. 근무지의 안전정도 D37. 근무지의 인전사고 예방 대책 파악 D38. 현재 일하는 곳의 안전 위험 요소 D39. 현재 일자리에서 질병, 사고 경험 여부 D40.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도움 필요 정도
E. 실업자 (18개)	E1. 지난 주 취업가능성 여부 E2. 과거 일한경험 유무 및 퇴직시기 E3. 그만둔 사유 및 코로나19와의 연관성 E4. 이전 직장(일) 특성 E5. 이전 직장(일) 직종 E6. 이전 직장(일) 내 종사상 지위 E7. 희망 고용 형태 E8. 희망 일자리의 사업 및 업무내용 E9. 희망 일자리의 종류 E10. 희망 근무시간 형태 E11. 희망 월평균 소득 E12. 구직기간 E13. 구직경로 E14. 실업상태 지속 이유 E15. 근로가능 수준 E16. 코로나19가 취업 및 창업 준비에 미치는 영향 E17. 향후 취업 여건에 대한 전망 E18. 코로나19 확진 경험
F. 비경제활동인구 (19개)	F1. 지난 주 취업희망 여부 F2. 지난 주 취업가능성 여부 F3. 지난 4주 내 비구직사유 및 코로나19와의 연관성 F4. 직장(일) 비희망사유 및 코로나19와의 연관성 F5. 지난 1년간 구직경험 여부 및 최근 구직 시기 F6. 지난주 한 일 F7. 과거 일한경험 유무 및 퇴직시기 F8. 그만둔 사유 및 코로나19와의 연관성 F9. 이전 직장(일) 특성 F10. 이전 직장(일) 직종 F11. 이전 직장(일) 내 종사상 지위 F12. 1년 이내 일자리 희망 여부 F13. 향후 언젠가 일자리 희망 여부 F14. 희망 고용 형태 F15. 희망 일자리의 사업 및 업무내용 F16. 희망 일자리의 종류 F17. 희망 근무시간 형태 F18. 근로가능 수준 F19. 코로나19 확진 경험
G. 고용서비스 욕구 (4개)	G1. 취업(또는 유지)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G1-1. 필요한 취업지원 사항 및 즉시 참여 가능성 G1-2. 필요한 고용유지 지원 세부사항 G1-3. 직업능력개발훈련 즉시 참여 가능성
H. 가구정보 (4개)	H1. 가구주 피약 H2. 가구원수 H3.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가구 여부 H4. 월평균 가구소득

2. 조사표 흐름도



3. 조사항목별 기입요령

□ 조사표 표지

ID	①	②	-	③	④	⑤
----	---	---	---	---	---	---

ID	조사표 번호는 행정구역별로 새롭게 부여하고, 조사된 대상자수와 조사표의 마지막 번호는 일치해야 함 - ①② : 사도를 나타내는 행정구역분류 부호를 나타냄 서울(11), 부산(21), 대구(22), 인천(23), 광주(24), 대전(25), 울산(26), 세종(27), 경기(31), 강원(32), 충북(33), 충남(34), 전북(35), 전남(36), 경북(37), 경남(38), 제주(39) - ③④⑤ : 일련번호 001~999
----	---

응답자 성명				전화번호	()	-
				휴대폰 번호	()	-
응답자 주소	시(도)	구(시/군)	동(읍/면)	구주소	번지	호 (0파트 동 호)
				신주소	, 동	호(동, 0파트)
대리 응답자 성명				응답자와의 관계		
대리 응답 이유	<input type="checkbox"/> 1)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input type="checkbox"/> 2) 기타(적을 것 : _____)					
답례품 수령 확인	(인)					

응답자 성명	■ 조사대상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함
전화/휴대폰번호	■ 조사대상자의 연락처는 추후 확인 조사 시 필요하므로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기재함 -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연락처가 없을 경우에는 연락 가능한 번호를 기재함
응답자 주소	■ 응답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소(신, 구 주소)를 기입하고 아파트인 경우에는 아파트명과 동 호수 등을 기입함
대리응답자 성명	■ 부득이하게 대리 응답을 진행한 경우, 대리응답자의 성명을 확인하여 기재함
응답자와의 관계	■ 대리 응답자와 응답자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대리응답이유	■ 대리 응답을 진행한 부득이한 사유를 파악하고, 항목에 없는 '기타' 사유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함
답례품 수령확인	■ 조사가 완료된 후 답례품을 증정하고 이에 대한 응답자 또는 대리인의 수령확인 서명을 받음

□ 면접원 기록사항

방문일시	1차 방문	____월 ____일 (오전/오후) ____시	<input type="checkbox"/> 1) 조사완료 <input type="checkbox"/> 2) 부재 중 <input type="checkbox"/> 3) 응답거부 <input type="checkbox"/> 4) 미완성 <input type="checkbox"/> 5) 조사불가
	2차 방문	____월 ____일 (오전/오후) ____시	<input type="checkbox"/> 1) 조사완료 <input type="checkbox"/> 2) 부재 중 <input type="checkbox"/> 3) 응답거부 <input type="checkbox"/> 4) 미완성 <input type="checkbox"/> 5) 조사불가
	3차 방문	____월 ____일 (오전/오후) ____시	<input type="checkbox"/> 1) 조사완료 <input type="checkbox"/> 2) 부재 중 <input type="checkbox"/> 3) 응답거부 <input type="checkbox"/> 4) 미완성 <input type="checkbox"/> 5) 조사불가
응답시간	____시간 ____분 동안	조사장소	
면접원 성명	(ID :)	수퍼바이저 확인	
에디터 확인		검증원 확인	

방문일시/응답시간	■ 조사대상자를 방문하여 조사한 일자와 시간을 기록함
조사장소	■ 조사대상자를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 장소를 기록함
면접원 성명	■ 면접담당직원의 성명 및 ID를 기재함으로써 사후관리가 용이하고, 응답자에게 신뢰감을 주도록 함
수퍼바이저확인	■ 면접담당직원 수퍼바이저가 조사표의 작성상태를 확인하여 ‘양호’한 조사표인 경우에만 이에 대한 확인 서명을 함
에디터확인	■ 조사표 점검 및 부호화가 완료되면 담당 에디터는 자신의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함
검증원확인	■ 데이터의 논리적 오류 등 점검이 완료되면 담당 검증원은 자신의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함

A. 인적사항

A1)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A2)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십니까? (※주민등록 기준)
1. 남자 2. 여자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성별	응답자의 성별을 확인하기 위한 항목
■ 이름만 보고 판단해선 안 되며 반드시 현지에서 확인하여 해당 성별 표기	
생년월일	응답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항목
■ 주민등록(호적)상 생년월일 기입	

A3) 최종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1. 무학 → A5)로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3년제 이하 대학
 6. 4년제 이상 대학
 7. 대학원(석사)
 8. 대학원(박사)

A3-1) 최종 학교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1. 일반학교 일반학급
 2. 일반학교 특수학급
 3. 특수학교

A3-2) 대학의 전공계열은 무엇입니까?

1. 교육 - 유아교육학과, 교육학과, 국어교육학과, 특수교육과, 체육교육과, 미술교육과 등
 2. 예술 - 미술학과, 공예학과, 음악학과, 무용학과, 영상학과, 연극영화과 등
 3. 인문학 및 어류학 - 국문학과, 영문학과, 시학과, 철학과, 윤리학과, 신학과 등
 4. 사회과학 인문 및 정부학 - 경제학과, 정치학과, 심리학과, 사회학과, 문헌정보학과 등
 5. 경영 행정 및 법학 - 경영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등
 6.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 - 수학과, 생물학과, 천문학과, 통계학과 등
 7. 정보통신기술 - 멀티미디어학과, 정보과학과, IT 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보안학과 등
 8. 공학, 제조 및 건설 - 전자공학과, 환경영화학과, 재료공학과, 신물기능학과, 기계학과, 토목공학 등
 9. 농림어업 및 수학 - 농업학과, 수산공학과, 축산학과, 원예전경학과, 수의학과 등
 10. 보건 - 의예과, 한의예과, 약학과, 간호학과 등
 11. 복지 - 보육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학과 등
 12. 서비스 - 기장학과, 미용학과, 호텔관광학과, 외식학과, 스포츠학과, 국방학과 등

A4) 마지막으로 다녔던 학교의 졸업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1. 졸업 : ____년도 →
 2. 재학
 3. 중퇴
 4. 휴학
 5. 수료
 6. 검정고시 자격 취득

A4-1) 졸업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1. 2012년 이전 졸업
 2. 2013년
 3. 2014년
 4. 2015년
 5. 2016년
 6. 2017년
 7. 2018년
 8. 2019년
 9. 2020년
 10. 2021년
 11. 2022년

교육정도

응답자의 교육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

■ 정규과정을 이수했거나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에게 해당

☞ 기능훈련, 직업훈련, 입시학원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조사대상 기간 현재의 학력을 기준으로 작성

☞ 4년제 대학 졸업 후, 다시 2년제 대학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경우: 『5. 3년제 이하 대학』에 표시하고, 전공계열도 현재 전공학과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재학여부는 '재학'으로 표시

■ 전혀 학교에 다닌 적이 없는 사람은 『0.무학』한 곳에만 표시

■ 공민학교는 초등학교 과정이고,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에 해당

■ 과거 학제인 경우에는 현재 학제로 판단하여 기입

(예) 과거 5년제 중학 졸업 ⇒ 고등학교 졸업으로 표시

■ 2년제, 3년제 대학은 『5. 3년제 이하 대학』에 해당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하면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인지,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인지, 일반학교 일반학급인지 확인

☞ 검정고시의 경우는 『1.일반학교 일반학급』에 해당

■ 『5. 3년제 이하 대학』 이상인 경우에는 계열란의 1~12중 표시

수학여부

졸업, 재학, 중퇴, 휴학의 해당사항에 기입

■ 『1.졸업』인 경우에는 졸업년도를 조사하여 기입해야 함

☞ 조사대상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2012년 이전 졸업" 선택

■ 『2.재학』인 경우에는 검정고시 준비생은 포함되지 않음

■ 『4.휴학』인 경우에는 군입대, 해외연수, 건강문제 등으로 휴학한 경우가 해당

■ 『5.기타』의 경우에는 수료, 검정고시 등이 해당함. 수료는 학교를 다니는 동안 졸업 이수 학점을 다 이수하였으나 졸업시험이나 졸업논문 등 졸업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참고 계열별 학과

1. **교육** - 유아교육학과, 교육학과, 국어교육학과, 특수교육과, 체육교육과, 미술교육과 등
2. **예술** - 미술학과, 공예학과, 음악학과, 무용학과, 영상학과, 연극영화과 등
3. **인문학 및 어문학** - 국문학과, 영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윤리학과, 신학과 등
4. **사회과학, 언론 및 정보학** - 경제학과, 정치학과, 심리학과, 사회학과, 문헌정보학과 등
5. **경영, 행정 및 법학** - 경영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등
6.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 - 수학과, 생물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공학과, 천문학과, 통계학과 등
7. **정보통신기술** - 멀티미디어학과, 정보과학과, IT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보안학과 등
8. **공학, 제조 및 건설** - 전자공학과, 화학공학과, 재료공학과, 식품가공학과, 건축학과, 토목공학 등
9. **농림어업 및 수의학** - 농업학과, 수산공학과, 축산학과, 원예조경학과, 수의학과 등
10. **보건** - 의예과, 한의예과, 약학과, 간호학과 등
11. **복지** - 보육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학과 등
12. **서비스** - 가정학과, 미용학과, 호텔관광학과, 외식학과, 스포츠학과, 국방학과 등

A5) 결혼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1. 미혼 2. 유배우(결혼/동거) 3. 사별/이혼/별거

결혼상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상의 신고와는 관계없이 15세 이상자에 대한 **사실상의 결혼상태**를 말함

■ 결혼상태는 연령과 관련이 높으므로 연령과 비교하여 확인하도록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결혼관계**를 말함

예1) 이혼 후 다시 재혼한 경우 → 「2. 유배우」

예2) 재혼하였으나 배우자가 사망하여 현재 혼자 살고 있는 경우 → 「3. 사별/이혼/별거」

■ 1. 미혼 : 혼인한 경험이 없는 사람

■ 2. 유배우 (결혼/동거) : 혼인여부에 상관없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

☞ 사실혼 관계 및 배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포함

■ 3. 사별/이혼/별거

☞ 사별 : 혼인한 사람으로서 배우자의 한쪽이 사망하여 현재 독신으로 있는 사람

☞ 이혼/별거 :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현재 독신으로 있거나 이혼을 전제로 하여 배우자가 서로 헤어져 혼자 살고 있는 별거인 경우도 해당

B. 장애정보

B1)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장애유형은 어떻게 됩니까?

주된 장애 : 번 중복 장애 : 번

- | | | |
|-----------|-----------|------------|
| 01. 지체장애 | 06. 지적장애 | 11. 호흡기장애 |
| 02. 뇌병변장애 | 07. 자폐성장애 | 12. 간장애 |
| 03. 시각장애 | 08. 정신장애 | 13. 안면장애 |
| 04. 청각장애 | 09. 신경장애 | 14. 장루요루장애 |
| 05. 언어장애 | 10. 심장장애 | 15. 뇌전증장애 |

장애인유형	장애 등록 시 법정 장애유형을 파악하는 항목
■ 장애유형은 1~15 중 표시	
■ 2가지 이상 장애가 있을 경우 더 중증인 장애가 주된장애임	
■ 주된 장애 외에 보건복지부 등록장애(1~6급)가 또 있을 경우 '중복 장애'에 응답(1개까지 응답 가능)	
- 국가보훈처에서 등급판정(7~15급)을 받은 장애유형은 제외	
- 중복장애가 없을 경우에는 중복장애를 응답받을 필요가 없음("98. 중복장애 없음" 입력)	

참고 법정 장애 유형

장애유형	유형 정의
1. 지체장애	절단장애/관절장애/지체기능장애/변형 등의 장애, 척수장애
2.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3. 시각장애	시력장애/시야결손장애
4. 청각장애	청력장애/평형기능장애
5. 언어장애	언어장애/음성장애/구어장애
6. 지적장애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이하인 경우
7.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8. 정신장애	조현병/조현정동장애/양극성 정동장애/반복성우울장애
9.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10.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11.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12.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13.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험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14.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15.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장애

B2) 주된 장애는 몇 살 때 발생하였습니까?

1. 출생 전(선천적) 2. 출생 시 3. 출생 후 : 만 ___세

B3 - 1) 정확한 발생시기를 모를 경우, 대략 언제쯤 장애가 발생하였는지 응답

1. 출생 후 ~ 만 3세
2. 만 4~6세
3. 만 7~14세
4. 만 15~19세
5. 만 20~29세
6. 만 30~39세
7. 만 40~49세
8. 만 50~59세
9. 만 60세 이상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의 장애 발생 시기를 파악하는 항목

■ 주된 장애가 최초로 발생한 구체적인 나이를 만으로 기입

☞ 장애등록시기와 장애발생시기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와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장애발생시기를 말함

B3) 그럼, 이 장애가 발생한 가장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1. 질환
2. 교통사고
3. 사고(교통사고 외)
4. 산업재해
5. 국가유공(전상)
6. 원인불명

장애발생원인

주된 장애의 장애 발생 원인을 파악하는 항목

■ 3. 사고 :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국가유공 등을 제외한 사고

예) 사업장에서 산업기기에 손이 끼어 손가락이 절단되어 장애를 등록한 경우 → 4. 산업재해

참고**장애 주된 원인**

장애원인	내 용
질환	질병이나 각종 질환으로 인한 손상
교통사고	탑승 시, 보행 시 등에 일어나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상
사고(교통사고 외)	물리적인 폭력, 가정 내 사고, 스포츠 및 놀이 중에 일어난 사고, 가스폭발이나 불에 의한 화상 사고, 약물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손상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인한 손상
국가유공(전상)	전쟁으로 인한 손상
원인불명	어떤 이유에서 장애가 발생하였는지를 모르는 경우

C. 경제활동상태 판별

■ 본 조사에서 지난 주는 2022. 5. 15.(일)~5. 21.(토)까지, 지난 4주는 2022. 4. 24.(일)~5. 21.(토)까지를 말함

C1) 지난 주에 본인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습니까?	C2) 지난 주에, 함께 사는 가족의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1시간 이상 일하였습니까?
1. 예 → (D1번으로) 2. 아니오	1. 예 → (D2번으로) 2. 아니오

활동상태	지난주(월~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파악하는 문항
자신의 수입 있는 일	<p>■ 『C1) 일하였음』에서 자신이 임금을 받거나 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농장)의 이윤을 얻기 위해 일했던 사람은 「1.예」에 해당함 ↳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농장)에서 무급으로 일한 사람은 『C2) 무급가족종사자』로 이동 ↳ 가정주부, 학생, 장애인, 연로자라고 해서 전혀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됨</p>
가족의 무급일	<p>■ 『C2) 무급가족종사자』는 자신이 아닌, 함께 사는 가족의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1시간 이상 일했던 사람을 파악함 ■ 자가사용 또는 자가소비만을 위한 일은 『C1) 일하였음』과 『C2) 무급가족종사자』문항에서 「2.아니오」에 해당됨(예: 자기집 짓기, 텃밭 가꾸기 등)</p>

참고 「일하였음」의 정의

“임금이나 이윤을 목적으로 일한 사람과 가족(동일 가구 내에 거주하는 혈연, 혼인 또는 양자에 의한 혈연관계)이 경영하는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한 사람”

※ 무급으로 동일 가구 내 비혈연 가구원의 일 또는 혈연관계라 하더라도 생활근거를 별도로 달리하는 가구원의 일을 돋는 것은 무급가족일로 볼 수 있으므로 활동상태를 다시 확인

- 일한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식사, 주거 또는 곡물제공)을 받는 경우
현금급료나 봉급을 받고 하는 일, 현물급료(주거제공과 식사제공 및 곡류포함)를 받고 하는 일과 팀을 받고 하는 일도 포함
- 원재료를 제공한 사업체가 마련한 장소에서 직업을 행하여 일한 분량대로 돈을 받는 삽일의 경우
- 원재료를 제공받아 개인의 가정에서 가공활동을 하고 완료한 일의 분량에 따라 돈을 받는 삽일의 경우
- 자기 자신의 사업장이나 농장을 가지고 이윤을 목적으로 일을 한 경우 또는 전문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경우
예) 하숙운영, 미장원 운영, 법률사무소 운영, 농사짓는 일, 양계장 운영 및 행상이나 노점상 등
- 소득의 적자 여부를 불문하고 조사대상기간에 실질적인 소득을 올리지는 못했으나 계속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시간을 보낸 경우
- 농림어업 사업체를 가진 사람이 파종, 비료撒포, 살균, 어획활동 등 실질적인 농림어업활동을 하지 못했으나 농기구 손질, 수선 등으로 시간을 보낸 경우
- 서로 노동력을 교환하는 형식의 활동인 품앗이(주로 농가에서 이루어짐)

※ 일하였음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 법률에 위배되는 비생산적인 활동(예 : 도박, 매춘 등)
- 법률에 의한 강제노역 및 봉사활동
- 경마, 경륜, 증권, 선물 등 투자활동

※ 불법취업자 조사여부

☞ 불법 취업자(자격증 없는 간호사, 의사등)의 활동상태는 본인의 확인 없이는 알 수 없는 사항이므로 구분하지 않고 조사

※ 자영업을 준비하는자의 활동상태 구분 예시

- ☞ 취업 : 자기 사업장의 확보 후 개업을 위한 물건 주문, 물건을 진열하는 행위 등
- ☞ 구직활동 : 사업계획 확정 후 사업장을 물색하는 경우
사업계획 확정 후 필요한 자재 구입이나 자금 확보를 하는 경우
사업계획 인허가 취득준비 등 허가신청 후 영업을 기다리는 경우 등

<p>C3) 지난 주에 일을 하자는 않았지만 직장(일)을 가지고 있었습니까?(지난주 일시휴직 상태였는지를 의미)</p> <p>◆ 1. 있었음 ↳ C3-1) 왜 지난 주에 일하지 않았습니까? 1. 일시적 병, 사고 2. 휴가·연가 3. 교육·훈련 4. 육아 5. 가족적 이유 6. 노사분규 7. 사업부진·조업중단 8. 기타(적을 것 : _____) → (C4번으로)</p> <p>◆ 2. 없었음 → (C4번으로) → (D2번으로)</p>	<p>C4) 지난 4주내에 직장(일)을 구해 보았습니까? (1개월 이내 취업예정자는 '구해 보았음'에 해당됩니다.)</p> <p>1. 구해 보았음 → (E1번으로) 2. 구해 보지 않았음 → (F1번으로)</p>
<p>일시휴직여부 및 이유</p>	<p>『C1) 일하였음』과 『C2) 무급가족종사자』에서 파악된 취업자 외에 '일시휴직자'에 해당되는 사람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 7』에 해당되는 사람만 일시휴직자임 ■ 조사대상주간에 일시적 이유(자신이나 가족의 병 등)로 직장 또는 자기가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지 않은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휴직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직장에 복귀 가능해야 함 ☞ 노동쟁의 때문에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는 사람도 포함 ■ 유급휴직자는 '유급' 자체가 복귀가 확실한 것으로 간주되어 휴직기간에 관계없이 일시휴직자로 처리함
1. 일시적 병,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의 병 및 사고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경우
2. 휴가 · 연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학(교사, 교수들의 방학), 휴가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
3. 교육 ·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군 훈련, 직장(소양) 교육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
4. 육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학 전 아동 돌봄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
5. 가족적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안의 경조사, 가족의 병 및 사고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
6. 노사분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업 중에 있는 사람으로 파업에 참가한 사람 뿐만 아니라, 파업 때문에 출근하지 못하는 사람도 포함
7. 사업부진조업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기불순, 기계고장, 원료부족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러한 요인들이 해소되면 곧바로 작업에 들어갈 것이 확실한 경우,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는 경우
8.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7개항(1 ~ 7)에 속하지 않는 다른 이유들을 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기업의 경영사정으로 대기발령을 받았으나, 재발령 가능성성이 희박한 경우(복귀가 불확실하므로 일시휴직이 아님)

참고

직장의 정의

♣ 직장이란 ?

- 직장은 매주 또는 매월 정규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것을 말함
 다만, 계절적인 근로자의 경우 현재 해당 계절에 있고, 조사대상기간이 해당계절에 속하는 경우에만 해당
- ☞ 조사대상기간에 일하지 않은 무급가족종사자, 호출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예: 가사도우미, 운전사 등)는 직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음
 - ☞ 직장유무는 일시휴직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직장이 있지만 일하지 않은 경우에만 일시휴직으로 봄)

◇ 직장으로 간주되는 경우

- 토요일, 일요일에만 정규적으로 돋는 소매활동
- 가정에 고용되어 봉사하는 가사서비스(가정부 등)
- 해당 계절에만 일하는 계절적 취업자(예: 스키강사, 수상안전요원 등)
- 일감을 가져다 자기 집에서 삽질하고 있는 경우
- 사업체나 개인사업으로 인하여 조사대상기간에 일은 못하였지만 매월 단위로 볼 때 계속 일해 왔으며(취업의 계속성), 앞으로도(30일이내에) 계속하여 일할 것이 확실한 경우
- 방학을 맞이한 학교 교사

◇ 직장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 직업소개기관에 등록하고 호출되기를 기다리는 사람(가사도우미, 일용노무자 등)
- 비수기의 계절적 취업자
- 무급가족종사자로 조사대상기간에 일을 하지 않는 사람
 ※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는 일시휴직이 나올 수 없음
- 복귀할 직장이 확실하게 없는 사람

4주간 구직여부

지난 4주간 일을 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항목

■ 『1. 구해보았음』은 조사대상기간에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 해당함

- ☞ 공공/민간 직업알선기관에 등록 또는 의뢰
- ☞ 사업주와 면담 또는 전화상담
- ☞ 원서접수 또는 취직시험 응시
- ☞ 취업이 보장된 상태에서 받는 무보수 수습 또는 직장훈련
- ☞ 사업장 인허가 취득 등 자영업을 위한 준비
- ☞ 일자리를 찾아 사업장, 농장, 건설공사장 등을 방문
- ☞ 친구, 친지, 동료에게 소개 부탁

■ 1. 구해 보았음 ⇒ 『E1. 취업가능성 여부』로 이동

- ☞ 과거에 구직활동을 한 후 계속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예) · 정보지 구인란에 등록만 하고, 몇 달이 경과된 상태
 - 5주전에 취업알선기관에 등록 후 대상기간에 확인 등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은 경우

■ 2. 구해보지 않았음 ⇒ 『F1. 취업희망』로 이동

- ☞ 조사대상기간을 포함하여 과거 4주
- ☞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입사시험 등에 합격하여 30일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것이 확실한 사람은 구해보았음에 기입하고 『E1. 취업가능성 여부』를 질문

D. 취업자

D1) 지난 주에 주된 일 이외에 다른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D2) 평소 1주 동안 총 몇 시간 일합니까? 주된 일과 그 외 일들을 포함해서 응답해 주세요
1. 있었음 2. 없었음	1. 36시간 미만 2. 36~52시간 → (D4번으로) 3. 52시간 초과 → (D4번으로)

부업여부	두 가지 이상의 일, 소위 복수직업(two jobs)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	---

■ 주된 일(주업) : 수입을 목적으로 주로 하는 일로서 조사대상기간에 최업시간이 가장 많은 일

■ 다른 일(부업) : 주업이외에 따로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일

◇ 부업유무 판단

예1) 주부가 가사일을 하면서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예2) 학생이 통학하면서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 '아르바이트'를 주업으로 판단하므로 『D1.부업여부』에 「2.없었음」으로 기입

▶ 「1. 있었음」에 응답하는 경우는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는 사람이 부수적인 일을 하는 경우에 해당

※ 비임금근로로 2가지 이상 일을 하는 경우는 부업으로 인정되지 않음

⇒ 여러 가지 일 중 적어도 1가지 이상 임금근로자로서 일을 하는 경우에만 주업/부업을 구분하여 판단함

평소 취업시간	지난주 보다 긴 기간(평소대상기간)에 일시적 사유와 관계없이 전형적으로 일한 주당 시간을 측정하는 문항
① 지난주 보다 긴 기간(평소대상기간): 지난 1년, 반기/분기, 계절별 성수기/비수기, 1개월간 등 ② 일시적 사유: 일정기간 동안(평소대상기간의 1/2미만 기간) 발생했다가 없어지는 사유 ③ 전형적으로 일한 주당 시간: 반복적으로(가장 빈번하게 또는 평균적으로) 1주일간 일한 시간	

■ 평소취업시간은 주된 일(주업)과 주된 일 이외에 다른 일(부업)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함

☞ 평소취업시간의 총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 『D3. 평소 36시간 미만 일한 이유』로 이동

■ 조사대상주간에 일시휴직자는 일시휴직 전의 평소취업시간으로 판단

■ 조사대상주간에 신규 취업한 경우 계약상 정해졌거나 근로예정인 주당취업시간으로 판단

■ 계절성 있는 농사일은 경우 농번기 또는 농한기에 따라 평소취업시간을 다르게 판단

참고 평소취업시간 측정

① 매주 규칙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

: 정규근로시간, 근로계약시간, 영업(운영)시간 등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반복적으로 일한 주당 시간으로 판단
: 특히, 정해진 취업시간 이외에도 매주 규칙적으로 더하거나 적게 한 시간이 발생할 때 평소취업시간은 정해진 시간과 추가가 시간(또는 덜한 시간)을 함께 계산함

② 매주 일을 하지만, 일한 시간의 변동이 큰 경우

: 평소 대상기간(지난주 보다 긴 기간)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당 시간으로 판단

③ 매주 일을 하지 않지만, 매월 하루 이상 일한 경우

: 지난 1개월간의 주당 평균시간으로 판단

④ 매월 일을 하지 않지만, 매 분기(또는 반기) 하루 이상 일한 경우

: 지난 3개월(또는 6개월)간의 주당 평균시간으로 판단

⑤ 일시적으로 지난주에만 일한 경우

: 평소대상기간에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가 지난주에만 1회성으로 일을 했다면 평소 취업시간은 0시간으로 판단

※ 계절적인 일을 하는 경우

: 먼저 계절별로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한 후, 위의 ①~⑤ 기준에 따라 성수기 또는 비수기에 평소 일하는 시간을 각각 파악하여 주당 시간으로 판단 (예. 농번기 또는 농한기, 여름철 또는 겨울철)

참고 평소취업시간 사례

- 사례1) 정규(계약)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매주 반복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10시간하는 경우
 ⇒ 평소 1주간 취업시간 50시간 (=정규시간 40시간 + 시간외시간 10시간)
 ※ 특정 기간(연말, 연초 등)에 집중적으로 시간외 근무하더라도, 평소대상기간의 1/2 기간 이내에 발생하는 일시적 상황이면, 평소취업시간에서 제외함
- 사례2) 사업장의 영업시간(월~토요일 : 50시간, 일요일 휴무)이 정해져 있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일시적으로 주문이 많아져 20시간을 더 일한 경우
 ⇒ 평소 1주간 취업시간 50시간 (영업시간 이외에 일시적 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 사례3) 농부가 농번기에 평소 60시간, 농한기에 평소 10시간을 일한다고 할 때 농한기와 농번기로 바꾸는 시기(3~4월, 10~11월)의 경우
 ⇒ 농번기의 평소 1주간 취업시간 60시간(농한기 : 평소 1주간 취업시간 10시간)
 ※ 조사대상주간을 기준으로 본격적인 농사일의 시작(종료)여부에 따라 구분
- 사례4) 평소에 주 40시간을 일하는 공무원인데 1년간 일시휴직(육아휴직)한 경우
 ⇒ 평소 1주간 취업시간 40시간 (육아휴직 전의 평소시간에 따라 기입)
- 사례5) 공장(병원)에서 매달 2주간 야간근무를 주당 60시간, 나머지 2주간 주간근무를 주당 40시간씩 번갈아 교대 근무한 경우
 ⇒ 평소 1주간 취업시간 50시간 (=매달 총시간(60+60+40+40) / 4주)
- 사례6) 매월 마지막 주에만 반복적으로 40시간 씩 일을 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일을 0시간 한 경우
 ⇒ 평소 1주간 취업시간 10시간 (=지난 1개월간 총시간(40+0+0+0) / 4주)
- 사례7) 가게를 운영하는 아버지가 갑자기 입원하셔서 아들이 지난주에만 일시적으로 50시간 일을 한 아들의 경우
 ⇒ 평소 1주간 취업시간 0시간 (1회성으로 일한 경우)

D3) 평소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정규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
2. 장애관련 이유
3. 장애 이외 건강문제
4. 육아
5. 가사
6. 통학(온라인 등교 등)
7. 본인이 원해서
8.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
9. 기타(적을 것 : _____)

평소 36시간 미만 근무 이유

평소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사유

- 1. 정규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
 - ☞ '임금근로자'로서 평소에 직장 정규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
 - ☞ '시간제근로자'로서 1주간에 취업시간이 36시간미만인 경우
- 2. 장애관련 이유 : 동일 직무의 타 근로자는 정규근무시간이 36시간 이상인데 장애로 인해 36시간 미만으로 근로 계약한 경우
- 3. 장애 이외 건강문제 : 장애 이외 건강 때문에 평소에 일을 많이 하지 못하는 경우
- 4. 육아 : 육아로 인해 36시간 미만 근무
- 5. 가사 : 가사로 인해 36시간 미만 근무
- 6. 통학(온라인 등교 등) : 통학(온라인 등교 등)으로 인해 36시간 미만 근무,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등교한 것 포함
- 7. 본인이 원해서 : 스스로 36시간 미만 일하는 것에 만족함
- 8.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 : 더 일하기를 원하지만 일거리가 없는 경우
- 9. 기타 : 위의 응답항목 외 사유를 기입

D4) 지난 주에 실제 몇 시간 일하였습니까?

1. 주된 일 : 시간
 2. 다른 일 : 시간
 3. 총 계 : 시간
- ↳ D4-1) 1~17시간 무급가족종사자 → (C3번으로)
 2. 36시간 미만 → (D5번으로)
 3. 36~52시간 → (D6번으로)
 4. 52시간 초과 → (D6번으로)

지난주 취업시간 조사대상기간 중 실제로 일한 시간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 취업시간 결정기준**

- ☞ 자기 직무를 다하기 위하여 보낸 시간
- ☞ 정규근무시간이외 초과근무시간도 포함
- ☞ 가족이 경영하는 농업, 상점 등의 일을 도운 시간
- ☞ 조사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록, 0.5시간(30분)이상은 반올림하여 한 시간으로 간주

※ 임금근로자는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지 못하더라도 자기직무와 관련해서 일한 시간을 포함
 ※ 비임금근로자는 자기가족사업을 위해 보낸 시간을 말하며, 실질적인 거래는 없어도 거래를 위해 사업장 밖에서 보낸 시간도 포함

■ 취업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

- ☞ 식사, 통근소요시간 / 사적 용무를 본 시간
- ☞ 집안일(가사)에만 종사한 시간 / 무보수 봉사와 같은 활동에 종사한 시간

■ 18시간미만 무급가족종사자

- ☞ 『C3. 일시휴직 여부』 확인 후, 일시휴직 여부에 따라 『D2. 평소취업시간』 또는 『C4. 구직활동여부』로 이동
- ☞ 최종 18시간 미만 무급가족종사자로 확인된 경우, 구직활동여부에 따라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 조사대상기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 사람

- ☞ 조사대상 1주간(日 ~ 土)의 첫날부터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중간에 시작한 취업자의 경우
 - 기존 일 존재유무에 상관없이, 새로운 일에 대한 1주간 취업시간을 기입
 - 『D5. 지난주 36시간미만 일한사유』 : 『12. 기타()』에 '지난주 ○요일에 취업'으로 기입

■ 조사대상기간에 일이 종료된 사람

- ☞ 종료되기 전까지 조사대상기간에 일한 시간을 기입

참고 실제취업시간 측정**♣ 무급가족종사자의 취업시간 판단예시**

1. 무급가족일만 한 경우
 - 종전대로 취업시간(18시간 기준)을 기준으로 취업자로 또는 『C4. 구직활동 여부』를 조사
2. 무급가족일과 수입있는 일을 같이 한 경우
 - 무급가족일 수입이 있었던 일 중 취업시간이 많은 것을 『주된 일』로, 나머지 일을 『다른일』로 취업시간을 기입
 - 예1) 무급가족일 30시간 + 수입있는일 10시간 ⇒ 주된일 30, 다른일 10 으로 입력
 - 예2) 수입있는일 30시간 + 수입있는일 20시간 ⇒ 주된일 30, 다른일 20 으로 입력
 - 예3) 무급가족일 15시간 + 수입있는일 10시간 ⇒ 주된일 10, 다른일 0 으로 입력
 (무급가족일이 18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취업자로 간주)

♣ 매일 일하는 장소 및 고용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 두 가지 이상의 일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고 일한 시간을 모두 합하여 주업으로 기입
 예) 가사도우미, 건설공사현장의 일용근로자 등 : 『D4. 취업시간』항목에서 『1. 주된 일』, 『3. 총계』에 동일시간 기입

♣ 매일 일거리가 변하여 동일한 일에 대한 시간을 구분하기 어려운 일용근로자

- 일의 내용에 상관없이 1주간 일한 시간을 모두 합하여 『1. 주된 일』, 『3. 총계』에 동일시간 기입

♣ 비임금근로로 2가지 이상 일을 하는 경우는 부업으로 인정되지 않음

- 예) 자영자로 농업을 40시간, 자영자로 어업 10시간을 한 경우 : 주업 50시간

D5) 지난 주에 36시간 미만 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평소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함
2. 장애 이외 일시적 병 사고
3. 장애 관련 이유
4. 날씨가 좋지 않아서
5. 휴가 · 연가 · 공휴일
6. 교육 · 훈련
7. 육아
8. 가족적 이유
9. 노사분규
10.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어서
11. 사업부진, 조업중단
12. 기타(적을 것 : _____)

지난주 36시간
미만 근무이유

'지난주에만' 36시간미만 일한 사유

- 1. 평소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함 : 평소(지난주보다 긴 기간) 1주간에 36시간 미만 일을 하기 때문에 36시간 미만 일한 경우 (\rightarrow D2 평소 근로시간이 '1. 36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외 평소에는 36시간 이상 일하지만 지난주에만 특별한 사유로 36시간 미만 일한 경우는 아래 사유 중에서 응답>

- 2. 장애 이외 일시적 병, 사고 : 본인의 일시적인 병이나 사고로 인해 지난주에만 36시간 미만 일한 경우
- 3. 장애 관련 이유 : 장애 관련 이유로 지난주에만 36시간 미만 일한 경우
 - 예) 평소 36시간 이상 일하던 신장장애인이 지난주 혈액투석으로 30시간 일한 경우
- 4. 날씨가 좋지 않아서 : 장마, 폭설 등 일기불순으로 36시간 미만 일한 경우
- 5. 연(휴)가, 공휴일 : 조사대상기간에 연가, 휴가나 교사(교수)가 방학 등으로 일을 적게 한 경우
 - ☞ 조사대상기간에 공휴일이 있어 근로시간이 감소된 경우도 포함
- 6. 교육·훈련 : 직장(소양)교육 등으로 일을 적게 한 경우
- 7. 육아 : 미취학 아동을 돌보기 위해 36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 8. 가족적 이유 : 집안의 경조사, 가족의 병 및 사고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
- 9. 노사분규 : 직장의 노사분규로 인하여 지난 주에 36시간 미만 일한 경우
 - ☞ 노사분규 참여자 또는 노사분규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
- 10.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어서 : 평소에는 36시간 이상 일하지만, 지난주에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거나 부족하여 36시간 미만 일한 경우
- 11. 사업부진조업중단 : 직장 및 본인의 사업체의 경기부진, 주문감소 등으로 일을 적게 한 경우, 기계고장 등 회사사정으로 조업이 중단되어 일을 적게 한 경우
- 12. 기타 : 위 응답항목에 없는 경우로 해당 이유를 ()내에 기입
 - ☞ 사업장의 증·개축, 이사, 이전 등으로 일을 적게 한 경우
 - ☞ 계절적 농업 종사자가 농번기가 아닌 기간(농한기)에 다음 농사 준비를 위해 적게 일한 경우

D6) 지난 주에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원하였습니까? 또는 다른 일을 더하거나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다른 일(직장)으로 바꾸기 원하였습니까?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음
2. 현재 하고 있는 일 이외에 다른 일도 하고 싶음
3.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일(직장)로 바꾸고 싶음
4.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
5.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시간을 줄이고 싶음

→(D7번으로)
→(D9번으로)

**추가취업 또는 전직
희망여부 (시간관련
추가취업기능자 관련)**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에서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원하는지를 파악
현재 일을 추가하기를 원하거나, 현재 일 이외에도 다른 일도 원하는지,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다른 일(직장)로의 전직을 희망하는지를 여부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음

☞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어하는 경우와 같은 직종의 일에 대해 매일 일터와 고용주가 바뀌는 건설 일용근로자, 가사 도우미 등이 더 일하고 싶은 경우

■ 2. 현재 하고 있는 일 이외에 다른 일도 하고 싶음

☞ 현재 하고 있는 일 이외에 수입 등의 여러 이유로 다른 일도 하고 싶은 경우

■ 3.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일로 바꾸고 싶음

☞ 현재 일의 취업시간이 적어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은 경우에 해당

■ 4.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

☞ 『D3. 평소 36시간미만 일한 이유』와 상관없이 모두 현재의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상태

☞ 동일 고용주하에서 근무 위치나 장소 변경만을 원하는 경우도 포함

■ 5.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시간을 줄이고 싶음

☞ 현재 일의 취업시간이 많아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줄이고 싶어하는 경우 또는 더 적게 일할 수 있는 다른 일(직장)으로 옮기고 싶은 경우에 해당

D7) 지난 주에, 일이 더 주어졌거나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다른 일(직장)이 주어졌다면 할 수 있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D8) 지난 4주 동안, 더 많은 시간 일하기 위해 현재 하는 일을 더 찾아보거나 다른 일(직장)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1. 있었음

2. 없었음

**추가취업 또는
전직기능성**

지난주 기준으로 기회가 주어졌다면 일을 더 하거나 직장을 바꾸는 것이 가능했는지를 파악

**(시간관련 추가
취업기능자)**

■ 지난주에 현재 일/다른 일을 더 하거나, 다른 일로 바꿀 수 있었으면
☞ 『1. 예』에 응답
■ 지난주에는 불가능하였으면
☞ 『2. 아니오』에 응답

**추가취업 또는
전직 구직여부**

지난 4주간 추가로 일을 더하거나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일로 바꾸기 위해서 다른 일을 찾아 본 적이 있는지 확인하여 기입

**(시간관련 추가
취업기능자)**

■ 구직활동의 기준은 『E13. 구직방법 및 경로』 항목의 설명을 참조

<p>D9) 지난 주에 어디에서 일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9-1-1) 사업체(직장)명 : _____ ◆ D9-1-2) 사업체(직장)이 주로 하는일 : _____ □□ <p>◆ D9-2) 지난주의 직장(사업체)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과 같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2. 공공근로, 복지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과 같은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3. 공무원, 교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일자리 4. 그 외 일반사업체 <p>◆ D9-3) 지난주의 직장(사업체)의 종사자수는 얼마나 됩니까?</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1. 1~4인</td> <td style="width: 50%;">6. 100~299인</td> </tr> <tr> <td>2. 5~9인</td> <td>7. 300~499인</td> </tr> <tr> <td>3. 10~29인</td> <td>8. 500~999인</td> </tr> <tr> <td>4. 30~49인</td> <td>9. 1,000인 이상</td> </tr> <tr> <td>5. 50~99인</td> <td></td> </tr> </table>	1. 1~4인	6. 100~299인	2. 5~9인	7. 300~499인	3. 10~29인	8. 500~999인	4. 30~49인	9. 1,000인 이상	5. 50~99인		<p>D10) 지난 주에 직장(사업체)에서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10-1-1) 내가 한 일 : _____ ◆ D10-1-2) 직명(직위) : _____ □□□
1. 1~4인	6. 100~299인										
2. 5~9인	7. 300~499인										
3. 10~29인	8. 500~999인										
4. 30~49인	9. 1,000인 이상										
5. 50~99인											

산업	취업자는 조사대상기간에 종사한 산업과 사업체의 주된 활동을 기입
-----------	-------------------------------------

■ 사업체명

- ☞ 『◆ 사업체명』은 줄여서 쓰지 말고 정확히 기입
- ☞ 임금근로자는 직장명을 최하단위까지 구체적으로 기입
예) 서울지방 병무청, 서울 북부 수도사업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등
- ▶ 여러 곳에서 일하거나, 매일 다른 곳에서 일하는 사람 → 일한 곳의 특징을 기입
예) 가사도우미 : 남의 가정에서, 유리창 닦이 : 남의 건물에서
- ☞ 비임금근로자는 점포명이나 사업체명을 기입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가 점포명이나 사업체명이 없는 경우 ⇒ 『자기사업』 또는『가족사업』이라고 기입

■ 사업체의 주된 활동

- ☞ 사업체내에서 조사대상자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사업체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업체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기능을 명시
- ☞ 산업중분류 두자리까지 입력

(사업체 종류)	
-----------------	--

■ 사업체의 종류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 ☞ 보호작업장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돋는 역할을 하는 시설(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시설은 일정 임금을 받는 경우 이에 포함시킴)
 - ☞ 근로사업장 :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돋는 역할을 하는 시설

※ 자립작업장 : 장애인 단체 등에서 장애인의 직업을 통한 자립생활을 위해 설치된 작업장
2.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 조사대상자가 수행하는 일이 정부에서 창출한 공공근로, 희망근로, 복지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의 단기적 일자리인지지를 파악하기 위함
3. 공무원, 교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일자리
4. 그 외 일반사업체

(종사자 규모)	
■ 임금근로자 : 자기가 속한 직장의 전체 종사자수를 파악	
☞ 본사(점) 근무직원인 경우 : 본사 근무하는 직원수를 기입	
☞ 지사(점) 근무직원인 경우 : 해당지점 근무직원수만 기입	
예) 삼성 대전리빙프라자의 경우 ⇒ 삼성리빙프라자(주) 전체 직원수가 아니라 해당 사업장인 삼성 대전리빙프라자 소속 직원수만 파악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주를 포함한 자기 사업체내의 전체 종사자수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자영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종사자수	
☞ 남의 집에서 혼자서 일하는 육체적 단순노무, 가사서비스 등과 같은 임금 근로자(일용)로 분류된 경우 ⇒ 자신만 종사자로 파악 『1. 1~4인』에 기입	
☞ 개인사업체의 경우(고용주(주인) 포함) ⇒ 종사자수를 묻게 되면 주인을 제외한 종사자수를 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주인 포함 여부를 확인	

직업	조사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체에서 어떠한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느냐 또는 수행하여야 할 임무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함
----	---

■ 직업소분류 세자리까지 입력

■ 일의 종류

- ☞ 질문할 때 응답자에게 직업이란 말을 가능한 사용하지 말고 직장(회사, 공장 등)에서 맡은 일의 내용을 물어서 기입
- ☞ 회사원, 공무원, 상업 등으로 기입하면 안됨

■ 직명(직위)

- ☞ 단순히 계장, 과장, 실장 등으로 기입하면 안되고, 경리계장(6급), 책임 연구원, 간호조무사 등 자세한 형태로 기입해야 함

참고 사업체의 주된 활동 판단

1.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기관명만으로 산업을 구분할 수 있으나, 민간사업체 또는 민간기관과 같이 현업을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활동을 명시
 - 예) ◆ 사업체명 ◆ 사업체의 주된 활동
 -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 매수, 매각, 공매 대행
 - 한국담배인삼공사 담배, 인삼 제조
2. 여러 가지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
 - 사업체의 각 활동들이 별도 장소에서 수행되는 경우 응답자가 속한 사업장의 수행활동을 기입
 - 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산업활동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기입
3.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구분
 - 사업체의 주된 활동이 제조공장이면 다른 제조업체나 도·소매업체에 아무리 많은 양의 제품(자사제품)을 팔더라도 그 사업체는 제조업
 - 도매업은 소매업체 또는 다른 도매업체에 제품을 되팔기 위하여 많은 양의 제품을 사들이는 경우
 - 소매업체는 주로 가정에 소비용 상품을 파는 경우
 - 제조업체의 본사나 공장에서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 있는 판매영업소는 판매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
 - 예1) 대리점 또는 지점 ☞ 본사명과 지점명을 같이 기입
삼성전자 광주대리점, 온누리여행사 강남지점, 엄마사랑 대구대리점
 - 예1) 제조업 : 상자를 제조하는 경우 ☞ 종이상자 제조, 나무상자 제조, 금속상자 제조

참고 산업내용 기입 예시

구분	착오 예		바른 예	
	사업체명	사업체의 주된 활동	사업체명	사업체의 주된 활동
1	자 기 집	농 사	나의 논	논 농사
2	한양산업	광 산 일	한양산업주식회사	무연탄 광업, 토탄제굴
3	현대상회	음식료품 도매	현대상회	과일채소도매
4	삼광건설	건 설 업	삼광건설	토지조성공사 및 정리사업
5	경성빌딩	청 소	(주)신양(경성빌딩관리)	건물 내 청소
6	크라운 베이커리	빵 판매	크라운 베이커리 둔산점	빵 소매
7	한국 DHL	우편배달	한국 DHL 둔산영업소	우편물운송 및 배달서비스
8	강동병원	치 료	강동병원	애완동물치료 및 수의서비스

참고 직업내용 기입 예시

구분	착오 예		바른 예	
	일의 종류	직명(직위)	일의 종류	직명(직위)
1	경 리	계 장	경리사무	경리계장(6급)
2	설 계	프로그래머	시스템 프로그램 설계	시스템 프로그래머
3	치 료	의 사	치아치료	치과의사
4	감 별	감 별 사	병아리 암수 감별	병아리 감별사
5	수 리	직 원	카메라 수리	카메라 수리원
6	판 매	직 원	여성의류 소매	판 매 원
7	판 매	외 판 원	책 판 매	방문 외판원
8	하 역	운 반 원	선박화물 하역	부두 하역원

D11) 지난주의 직장(일)은 언제부터 시작하였습니까?

년 월 (모를 시 범주형으로 응답)

◆ 정확한 연도를 모를 경우, 대략 언제쯤인지 응답

- | | |
|---------------|---------------|
| 1. ~2002년 | 5. 2013~2015년 |
| 2. 2003~2006년 | 6. 2016~2018년 |
| 3. 2007~2009년 | 7. 2019~2021년 |
| 4. 2010~2012년 | |

◆ 정확한 월을 모를 경우, 대략 언제쯤인지 응답

- | | |
|--------------|---------------|
| 1. 봄(3월~5월) | 3. 가을(9월~11월) |
| 2. 여름(6월~8월) | 4. 겨울(12월~2월) |

현직장 취업시기

취업자가 지난 주 일자리(직장)를 언제부터 시작하였는지 확인

■ 건설근로자, 가사도우미의 경우 일하는 장소(건설현장, 방문 가정)가 바뀔 때 마다 취업시기가 변동

예) 4월에는 A건설현장에서 일하고 5월에는 B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경우 취업시기 : 2022년 5월

예) 2년 째 월요일에는 철수 집, 목요일에는 영희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취업시기 : 2022년 5월

D12) 지난 주 직장(일)에서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 임금근로자

1. 상용근로자
2. 임시근로자
3. 일용근로자

→ (D13번으로)

◆ 비임금근로자

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6. 무급가족종사자

→ (D26번으로)

종사상 지위(임금)

◇ 임금근로자(상용, 임시, 일용근로자) 구분 기준

★ 「D14. 근로기간 설정여부」의 고용계약 체결여부를 먼저 파악 (아래 ①, ②, ③ 순서에 따라 분류)**① 고용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1년 미만: 임시근로자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나 일정한 사업완료의 필요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도 고용계약 기간에 준하여 판단함
(☞ 사업완료의 필요기간에 따라 1년 이상은 상용근로자, 1년 미만은 임시근로자로 각각 구분)

②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분류

-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하여 입사한 사람으로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을 적용 받는 자 또는 퇴직금 등 각종 수당 수혜자는 상용근로자로 분류
- 단순 보조원으로서 상여금 등 제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통장, 이장, 시군구의회의원 등)은 임시근로자로 분류
- 계약기간 없이 1년 이상 일하고 있더라도 퇴직금 비수혜자는 임시근로자로 분류(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일정한 장소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은 일용근로자로 분류(예: 지게꾼, 굴뚝 청소부, 건설노무자)

③ 분류시 주의사항

- 동일업체에 1년 이상 근속(계약기간이 아님)한 경우라도 고용계약이 임시 또는 일용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우선하여 분류
- 응답자의 응답내용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 것
(응답자가 원하는 직장을 구하기 전에 '임시로 다닌다'라고 대답한 경우라도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분류)

※근속기간과 계약기간을 혼동하지 말 것, 계약기간은 근속기간이 아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근로자로 판별한 뒤, D23에서 특수형태근로자에 응답****종사상 지위(비임금)**

◇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 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 ☞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임금을 주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
- ☞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신만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분류

■ 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 자기 책임하의 독립적인 형태로 일이 수행되며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일을 하는 자
- ☞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자
- ☞ '사장'이라 하더라도 개인기업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이나, 법인기업이면 임금근로자로 분류됨

■ 6. 무급가족종사자

- ☞ 자기가족(동일가구 내)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없이 적어도 주당 18시간 이상(정상근로시간의 1/3 이상) 일한 자
- ☞ 동일가구 내 가족이라도 일정한 봉급을 받는 경우는 임금근로자로 분류
- ☞ 가구를 달리하는 가족 또는 친척의 사업체에서 무보수로 일할 경우→ 무급가족종사자는 아니며,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임금근로자로 분류

참고

종사상 지위 판단

구분	예시
만15세 이상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르바이트를 할 요량으로 입주 및 방문 과외를 하는 경우 → 임시직/자영업자 방학 동안만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기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경우 → 비경제활동인구 학원에서 칠판청소 등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보수대신 무료수강을 하는 경우 → 임시직
일용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일용직의 경우, 기준 시점(5월 15일주) 중 한 번이라도 일한 경험이 있는 경우 → 일용직 가내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사업체에서 제공한 원료 및 반제품을 받아다가 가정에서 하청 작업을 하고 일한 만큼 수수료를 받는 경우 → 일용직 전기 등 시공, 수리공 중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혹은 인력시장을 통해) 일한 대가를 받을 경우는 일용직 임금근로자 → 일용직 남의 논밭 일을 하는 경우 중 여기 저기 품을 파는 경우는 일용직 임금근로자 → 일용직
보험모집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모집인 중 일정기간의 교육이수 후 회사 소속의 모집인으로서 보험협회에 정식 가입되면 실적에 따른 실적급이 기본급과 더불어 지급되는 경우 → 임금근로자로 보며, 상용, 임시, 일용으로 구분해야 함 보험모집인 중 보험대리점이나 영업소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등록증을 부여 받아 독립된 점포를 소유한 경우 → 자영업자
외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유, 요구르트, 화장품 등 외판원 중 대리점이나 회사에 소속되어 물건을 판매하여 실적급 형식의 수당을 받는 경우 → 임금근로자로 보며, 상용, 임시, 일용으로 구분해야 함 우유, 요구르트, 화장품 등 외판원 중 자기자본을 투자하고(독립된 점포, 판매할 물건을 자기자본으로 구입하는 것 등) 고정된 보수를 지급 받지 않는 경우 → 자영업자
프리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리랜서(일러스트레이터, 컴퓨터 프로그래머) 중 회사에 정식으로 채용되어(계약기간 1년 이상) 일을 하는 경우(사실상 프리랜서 아님) → 임금근로자로 보며, 상용, 임시, 일용으로 구분 프리랜서(일러스트레이터, 컴퓨터 프로그래머) 중 사무실 없이 단기적으로 계약을 맺어 일하는 경우는 임시/일용임금근로자로 분류 → 임금근로자로 보며, 상용, 임시, 일용으로 구분 프리랜서(일러스트레이터, 컴퓨터 프로그래머) 중 사무실이 있는 경우는 자영자 → 자영업자
농업, 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주(船主)와 작업을 같이 하는 어부 중 투자 없이 어획고를 나눠 먹기식으로 하는 경우 → 임금근로자로 보며, 상용, 임시, 일용으로 구분 선주(船主)와 작업을 같이 하는 어부 중 배나 장비 등에 투자를 한 경우는 동업자로 봄 → 자영업자 남의 논밭 일을 하는 경우 중 남의 논밭을 빌려서 일을 하는 경우 → 자영업자
종교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명백한 월급사장 → 상용직 종교법인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승려, 목사, 신부 등 성직자 → 상용직 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소규모 종교기관(개척교회)을 운영하는 성직자 → 고용주
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목상 월급사장 일 뿐, 개인기업처럼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비교적 소규모), 실질상 고용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 고용주 개인기업이면 → 자영자 또는 고용주 법인기업이면 → 임금근로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 내 가족의 일을 도와주기는 하지만, 주당 1시간 이상 일을 도우며, 일정한 봉급을 받는 경우 → 임금근로자로 보며, 상용, 임시, 일용으로 구분 가내작업을 하는 경우 중 · 장기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경우나, 자기 장비가 없더라도 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작업판매하는 경우 → 자영업자 행상, 노점상 등으로 장사를 하며 사업장 없이 떠돌아다니는 행상의 경우 → 자영업자

D13) 지난 주의 직장(일)에 취업할 때 이 직장(일)을 어떤 경로로 알아보았습니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워크투게더 포함)
2.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워크넷 포함)
3.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 등)
4.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5. 민간 취업알선기관(복지관 제외)
6. 대중매체(신문, 인터넷, 광고 등)
7. 학교, 학원
8. 부모(친척), 친구, 동료 등 지인
9. 기타(적을 것:)

취업경로

임금근로자의 현 직장(일)의 취업경로를 파악함

■ 임금근로자가 현 직장(일)을 어떤 경로를 통해 알아보았는지 취업경로를 표시**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워크투게더 포함)**

Worktogether(워크투게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한 취업 포함

2.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워크넷 포함)

Worknet(워크넷: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한 취업 포함

- ▶ 해당기관에서 관리하는 온/오프라인 시스템을 모두 포함

5. 민간취업알선기관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직업소개소 등을 통한 취업

- ▶ 해당기관에서 관리하는 온/오프라인 시스템을 모두 포함

6. 대중매체(신문, 인터넷, 광고 등)

일간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한 취업

7. 학교, 학원

학교, 학원 등의 추천, 소개, 의뢰에 의한 취업

8. 부모(친척), 친구, 동료 등 지인

부모, 친척, 친구, 동료 등을 통한 취업

9. 기타

앞에 언급한 경로 외에 다른 경로를 통한 취업(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회사 공채, 공무원 시험을 통해 입사한 경우 '기타'에 응답하지 말고 공채 정보, 공무원 시험 정보를 얻게 된 경로를 파악

D14) 지난 주의 직장(일)에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였습니까?**◆ 1. 정했음**

↳ D14-1) 고용계약기간은 얼마입니까?

1. 1개월 미만
2. 1개월 이상~1년 미만
3. 1년
4. 1년 초과~2년 이하
5. 2년 초과~3년 이하
6. 3년 초과

◆ 2. 정하지 않았음(※ 정년은 '정하지 않았음'에 해당됨) → (D16번으로)

→ (D15번으로)

**고용계약여부
계약기간**

고용될 당시 근로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항목

■ 고용주(사용자)와 근로기간을 구두로 정(약속 또는 계약)한 경우도 『1.정했음』에 해당**■ '2. 정하지 않았음'은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취업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예. 일반기업체 정규직 근로자, 공무원, 교사 등)**

※ 일정한 장소 없이 떠돌아다니며 일하는 일용직의 경우는 '1. 계약기간을 정함'(계약기간'1. 1개월 미만'으로 응답)

D15) (근로기간을 정했다면) 지난주 일자리의 현재 계약(기간)은 반복·갱신된 것입니까?

1. 예 →(D17번으로)
 2. 아니오(최초 계약기간 내인 경우만 해당)

**계약(기간)
반복·갱신여부**

지난주에 일한 직장(일)에서의 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된 상태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

-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고용계약이 처음으로 맺은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반복 또는 갱신된 것이라면 『1. 예』에 해당됨(☞ 반복 또는 갱신주기가 정기적인 기간일 필요는 없음)
-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고용계약이 처음으로 맺은 것이라면 『2. 아니오』에 해당됨

D16)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지난 주 일자는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주씩 일하는 형태입니까? (예 : 건설 일용근로자,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1. 예 → (D20번으로) 2. 아니오

단기근로자여부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무의 자속성, 규칙성이 없는 단기적이고 불규칙적인 근로자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

- 고용이나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근무자속성, 규칙성이 없이 일자가 생겼을 경우 단기간 근무하는 자**
 - 간병인, 행사도우미, 가사도우미, 건설일용근로자, 백화점 또는 대형할인점 아르바이트 사원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장소가 단기간에 바뀌는 경우가 대표적임**
 - **업체의 요청 또는 호출을 받아 일시적으로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음**
 - ☞ 단기근로자의 경우 종사상지위는 ‘일용직’에 해당
 - ☞ 단, 위와 같은 경우로서 동일한 사업체(장소)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도 『1. 예』에 해당될 수 있음
- ※ 다만, 적정기간 일하기로 명백하게 구두 또는 서류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간주

D17) 회사가 아주 어려워져서 폐업 또는 고용조정을 하거나 귀하가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원하는 한 계속 그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까?

- ◆ 1. 예
 ↳ D17-1) “예”(계속 다닐 수 있음)로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하였으므로
 2.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고용이 자속되고 있으므로
 3. 묵시적인 고용관행(정년)에 의해
- ◆ 2. 아니오
 → (D20번으로)

계속근로 가능여부

고용의 안정성(근로의 자속성 여부)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

- 특별한 사유(본인의 중대한 과실, 폐업 등 사업체자체의 소멸 또는 고용조정, 천재지변 등)가 없고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계속해서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야 함
- 「1. 예(계속 다닐 수 있음)」의 경우
 아래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응답자의 업무수행이 적절하다면, 본인이 원하는 때(정년퇴직 또는 은퇴)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경우가 해당
 - ※ 특별한 사유
 - 경제적 이유(사업체 소멸, 폐업 등으로 인한 구조조정)
 - 귀책사유

계속근로 가능 이유

- ▶ 계속근로가 가능한 이유(D17-1)를 판단하여 응답

①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하였으므로

☞ 고용계약은 하였으나 근로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계속 근무가 가능한 경우(예. 무기계약 등)

②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고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 근로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계약의 반복 갱신을 통해 근무를 계속하는 경우

③ 묵시적인 고용관행(정년 등)에 의해

☞ 고용계약은 하지 않았으나, 회사 또는 사업체(장)의 내부 규정으로 지속적으로 근무가능한 경우

예) 정년은 있으나, 특별히 고용계약을 하지 않고도 계속적인 근무가 가능한 일반 기업체 정식사원, 공무원, 교사 등

※주의 : 계약직공무원, 임시교사, 기간제 교사는 ③묵시적인 고용관행으로 볼 수 없음

참고 귀책사유 예시

♣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에서 “특별한 잘못”이란 해고에 이를 정도의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해당됨

- ① 무단결근, 직장규율 위반,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복 등 「근무태도 불량」
- ② 절도, 횡령 등 업무와 관련 수뢰배임 등 「범법행위」
- ③ 채용의 주요 요소가 되는 「경력위조」
- ④ 기타 사업장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해고사유

D18) 지난 주의 직장(일)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1. 1년 이하(□□□ 개월)
2. 1년 초과~2년 이하(□□□년 □□□ 개월)
3. 2년 초과

향후기대근속기간

『계속 근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대해서 더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대기간을 조사해
서 근로자속 가능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

■ 앞으로 더 일할 수 있는 기간이 「1. 1년 이하, 2. 1년 초과~2년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는 ()내에 그 개월도 기입해야 함

☞ 계속 근무가 가능한 개월 기입 시 15일미만은 “1개월”로 기입하고, 이외에는 반올림하여 기입

☞ 「1. 1년 이하(□□개월), 2. 1년 초과~2년 이하(□□년 □□개월)」의 □□개월에서는 “1개월”에서 “12개월”까지 기입 가능

< 주 의 >

- 근무 가능기간이 1년인 경우는 「1. 1년 이하」에 해당됨
- 1년은 넘지만 2년까지만 가능한 경우는 「2. 1년 초과~2년 이하」에 해당됨
 - ☞ 근무 가능기간이 2년인 경우도 여기에 해당됨
- 2년이 넘을 경우는 「3. 2년 초과」에 해당됨

D19) 그렇게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2. 묵시적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3. 사업주가 그만두라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임시직 등)으로 채용되었으므로
4. 현재 하는 업무(프로젝트)가 끝나기 때문에
5. 현재의 일자리에서 전에 일하던 사람이 복귀하기 때문에
6. 특정 계절동안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7. 적성근로조건능력 등의 이유로 다른 일자리를 찾을 예정이므로
8. 규정관행상 퇴직하는 연령에 도달하기 때문에
9. 장애 때문에 일하기가 힘들어져서
10. 학업·가족부양·건강 등의 이유로
11. 직장의 경영상 이유 때문에
12. 기타(적을 것 : _____)

근로기간 제한이유

『D18.향후 기대근속 기간』을 응답한 바와 같이 한정되게 생각하는 이유가 ‘비자발적/비경제적 사유’인지 ‘자발적/경제적 사유’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

※ 여러 가지 사유가 해당될 경우에는 가장 주된 것에만 기입한다.

■ 1.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 고용 당시 이미 정해진 계약기간이 끝나기(종료되기) 때문인 경우

■ 2. 묵시적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 정해져 있는 고용계약이 묵시적 또는 관행적으로 끝나기(종료되기) 때문인 경우

■ 3. 사업주가 그만두라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임시직 등)으로 채용되었으므로

☞ 특별히 정해진 고용기간 없이 근무하면서 사업주가 그만 나오라고 하면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

* 임시직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임

■ 4. 현재 하는 업무(프로젝트)가 끝나기 때문에

☞ 고용기간이 현재 하는 업무(프로젝트)가 완료(종료)될 때까지로 한정된 경우

■ 5. 현재의 일자리에서 전에 일하던 사람이 복귀하기 때문에

☞ 현재의 일자리에서 일하던 사람이 출산·휴학·파견 등과 같은 사유로 현 일자리를 떠났으나, 그러한 사유 등이 종료되어 복귀하기 때문에 고용기간이 한정된 경우

■ 6. 특정 계절동안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 여름철 해변가, 겨울철 스키장 등과 같은 계절적 사업장에서 고용되어 특정 계절동안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기간이 한정된 경우

■ 7. 적성근로조건능력 등의 이유로 다른 일자리를 찾을 예정이므로

☞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장(일)이 자기 자신의 적성, 능력 등에 맞지 않거나 근로조건 불만족 등으로 다른 일자리를 찾기 위해 그만 둘 예정이기 때문에 근무가능기간이 제한된 경우

■ 8. 규정관행상 퇴직하는 연령에 도달하기 때문에

☞ 사업체 규정 또는 관행상 퇴직하는 연령에 이르기 때문에 근무가능기간이 제한된 경우

■ 9. 장애 때문에 일하기가 힘들어져서

☞ 자신의 장애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애가 악화되어 계속 일할 수 없게 되어 근무가능기간이 제한된 경우

■ 10. 학업·가족부양·건강 등의 이유로

☞ 학업(상급학교 진학, 학업전념 등), 가족부양(육아, 장애연로가족 돌봄, 병원입원가족 간병 등), 자신의 건강악화(장애제외) 등과 같은 사유로 계속 일할 수 없어서 근무 가능기간이 제한된 경우

■ 11. 직장의 경영상 이유 때문에

☞ 종사하고 있는 직장의 경영악화(부진), 기업의 인수합병(M&A), 기업내 전환배치,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근무 가능기간이 제한되어 계속 일할 수 없는 경우

■ 12. 기타()

☞ 상기 어느 항에도 해당되지 않는 이유로 근무 가능기간이 제한된 경우가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

D20) 지난 주의 주된 직장(일)의 취업형태는 어떤 형태로 정해진 것입니까?

1. 전일제 근로 → (D20-3으로)
2. 시간제 근로

- ◆ D20-1) 그렇다면 시간제 근로를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임금 등 다른 근로조건에 만족해서
 2. 전일제 일자리를 원해도 구할 수 없어서
 3. 가사로 인해
 4. 육아, 자녀/가족 돌봄으로 인해
 5. 장애로 인해 오랜 시간 근무할 수 없어서
 6. 장애 이외의 건강문제로 오랜 시간 근무할 수 없어서
 7. 직장경험, 경력 등을 쌓아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8. 학업, 취업준비, 직업훈련 등과 병행하기 위해
 9. 다른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를 같이 하려고
 10. 용돈벌이, 소일거리 정도를 찾아서
 11. 기타(적을 것:)

- ◆ D20-2) 전일제로 전환되길 원하십니까?
 1. 원함 2. 원하지 않음

- ◆ D20-3) 그 직장(일)에서 1주 평균 몇 시간 일하십니까? 초과근로 등을 포함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1주일 평균 근로일수 일

1주일 평균 근로시간 시간

☞ (D20번 2.시간제 근로는 D21번으로)

취업형태

지난주에 일한 주된 직장(일)에 고용될 당시 정해져 있는 취업형태 파악

■ 1. 전일제 근로

☞ 직장(일)에서 정한 소정의 근로시간대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정상근로시간동안 근로하는 자가 해당

- 정규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이상 근무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전일제근로에 해당됨
- 직장에서 정규직원 또는 일반직원으로 불리며,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일함
-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는 대부분 “전일제 근로”에 해당됨
- 경비, 공장 가동 등으로 격일제 근무 또는 2~3교대 근무하는 경우도 대부분 “전일제 근로”에 해당됨
- 직업의 특성상 정규근로시간이 짧은 경우는 전일제 근로로 조사
(예. 회사에 관리직으로 1년이상 계약하고 사회보험 및 퇴직금수혜자로 상용인데 근무시간은 주 24시간 근무하는 금융결재원 전산처리 취업자)

■ 2. 시간제 근로

☞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가 해당

- 평소 주당 36시간미만 근무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시간제근로에 해당됨
-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일을 시작할 때(고용계약을 할 때) 몇 시간 일할 것인지 정한 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인 경우가 해당됨
- 주로 하는 일(가사, 통학 등)이 따로 있으면서 여가를 이용하여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는 경우도 해당

※ 전일제/시간제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시간제로 분류

- ① 동일 회사에 동일업무를 하는 동료(상사나 부하)가 있는 경우
 - 직장 내에서 동일 업무를 하는 동료보다 정해진 근로시간이 1시간이라도 적은 근로자
- ② 동일 회사에 동일 업무를 하는 동료가 없는 경우
 - 평소 1주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35시간 이하)인 근로자

※ D20-1, D20-2: 시간제 근로자에게 시간제 근로를 하는 주된 이유와 전일제 전환 희망 여부를 파악

주당 근로일수, 근로시간 | 지난주에 일한 주된 직장(일)에서의 1주일 평균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정규+초과)을 파악

- 지난주 근로시간이 아닌 평소 1주 동안 근무하는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을 말하며,
주된 직장(일)의 통상적인 정상근로시간 외에 초과근로시간도 포함해서 기입
- 고용업체와 실제로 근무하는 업체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근무지를 기준으로 파악

- ◆ D20-4) 그 직장(일)에서 근로자가 개인 여간에 따라 근무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구하께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근로시간단축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탄력적 근무제, 재택 및 원격근무제 등)
1. 직장(일)에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활용하고 있음 → (D21번으로)
 2. 직장(일)에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활용하지 않음
 3. 직장(일)에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지 않음
- ◆ D20-5) 향후 직장(일)에서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면 활용하기를 원합니까?
(근로시간단축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탄력적 근무제, 재택 및 원격근무제 등)
1. 활용하기를 원함
 2. 활용하기를 원하지 않음

유연근무제 실시/활용 여부

'전일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일) 내 유연근무제 실시, 활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

■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선택·조정하여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근로시간단축근무제

☞ 주당 정규근로시간을 40시간 미만으로 단축하는 제도 (예. 주당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 실시. 9시 출근~5시 퇴근)

• 시차출퇴근제

☞ 1일 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 (예. A는 8시출근~5시퇴근, B는 10시출근~7시퇴근)

• 선택적 근무시간제

☞ 일정기간(1개월)동안 미리 정해진 총 근로시간에 맞추어 근로자가 매일의 출퇴근시간을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 (예. 월화수목은 8시출근~6시퇴근, 금요일은 8시출근~12시퇴근)

• 탄력적 근무제

☞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은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은 줄여 평균으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맞추는 제도 (예. 마감이 있는 4째주는 주당 70시간 근무하는 대신 1~3째주는 주당 30시간만 근무)

• 재택 및 원격근무제 ☞ 1주일에 하루 이상을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D21) 임금(급여)을 어느 곳에서 받았습니까?**

1. 지난 주 일한 곳
2. 파견업체
3. 용역업체

임금 지급주체

'임금(급여) 지급주체를 파악하여 지난주 직장과 다른 경우 파견근로자 또는 용역근로자인지 구분하기 위한 항목'

■ 1. 지난 주 일한 곳

☞ 임금(급여)을 지급하는 주체가 현재 일하고 있는 업체(직장)와 동일한 경우

☞ 통상적인 근로자의 경우 여기에 해당됨

☞ 개인 또는 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용역)를 제공하고 개인 또는 가정에서 대가(보수)를 받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됨

☞ 제조업체 소속으로서 자사 제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해 백화점, 할인점 등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출향근로)도 여기에 해당(파견업체로 분류하면 안됨)

■ 2. 파견업체

☞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맺고 임금을 지급하면서 당해 근로자를 다른 업체(사업업체)에 파견을 보내서 다른 업체(사업업체)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다른 업체로부터 파견 대가를 받는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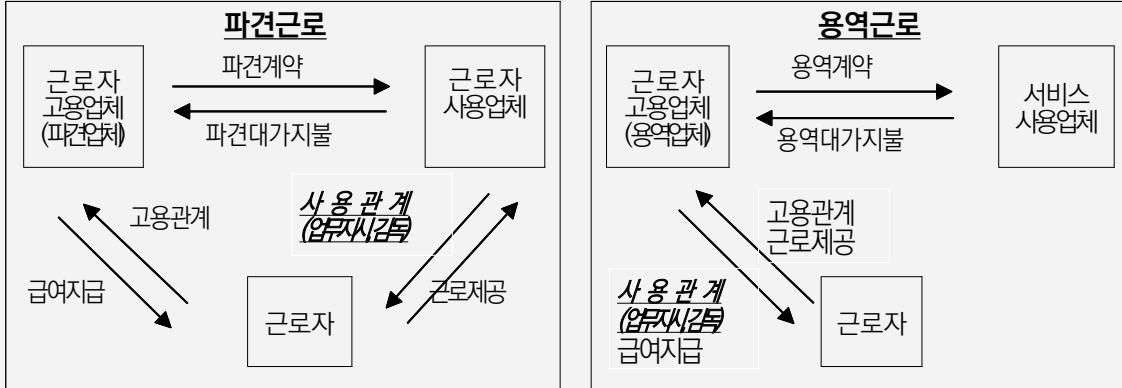
☞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구두계약포함)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임

■ 3. 용역업체

☞ 다른 업체(원청업체)로부터 용역 업무를 수주 받아 수행하는 업체로서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맺고 당해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도 직접 지급을 하는 업체

☞ 용역근로자는 다른 업체(원청업체)에서 근로를 하며. 다만, 고용관계에 있는 용역업체가 지휘·명령권을 직접 행사한다는 점에서 파견과 차이가 있음

참고 과견·용역 비교 : 업무지시



구분	파견업체	용역업체	출향근로
정의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고용(고용주)업체와 업무지시를 하는 근로자사용(사용자)업체가 <u>일치하지 않는 경우</u>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 고용(고용주)업체와 업무지시를 하는 근로자사용(사용자)업체가 <u>일치하는 경우</u>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관련회사 또는 자회사로 배치전환하는 것
임금지급	고용업체	고용업체	고용업체
임금원천	근로장소 제공업체	근로장소 제공업체	<u>고용(고용사업주)업체</u>
업무지시	<u>근로자 사용업체</u>	<u>근로자 고용업체</u>	<u>근로자 고용업체</u>
근로장소	사용업체가 제공	주로 사용(원청)업체가 제공	사용업체가 제공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경비업체에서 아파트관리 경비를 위해 파견 계약을 체결 한 후 경비원만 A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파견한 경우 - ○○용역(주)에서 채용한 직원을 ○○ 대리점과 파견계약 체결 후 근로자를 파견하여 경리업무를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아파트에 ○○경비업체에서 A아파트 경비업무 전체 맡아서 하는 경우 - B회사가 ○○환경 (청소업체)에서 건물 청소를 맡아서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인점내 제조업체 파견 판매원 - 공단 직원의 노동부 파견

D22) 주된 직장(일)에서 받은 월평균 임금(세금공제 전)은 얼마였습니까?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월평균 만원

D22-1) 정확한 월평균 소득이 기억나지 않으신 경우,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요?

- | | |
|-----------------|------------------|
| 1. 50만원 미만 | 5. 200~300만원 미만 |
| 2. 50~100만원 미만 | 6. 300~500만원 미만 |
| 3. 100~150만원 미만 | 7. 500~1000만원 미만 |
| 4. 150~200만원 미만 | 8. 1,000만원 이상 |

3개월 평균 임금(급여)

최근 3개월간 받은 상여금, 봉사료(팁) 등을 포함한 3개월 평균 임금(급여)을 확인하여 기입하는 항목

■ 세금, 적금, 기부금(후원금), 보험료 등 각종 공제액을 공제하기 전의 총 수령액을 기준으로 파악하고,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로도 받은 경우는 시가로 환산하여 포함시켜야 함

☞ 많은 사람이 자기의 소득을 높게 또는 낮게 대답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최대한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함

■ 월급 외에 상여금, 보너스 등을 포함하여 응답

(상여금, 보너스가 연말에 나오는 경우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으로 응답)

■ 일용근로자(일당 또는 매일 품삯으로 받는 사람과 시간급으로 일하여 보수를 받는 사람)는 지난 3개월간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쳐서 3개월 평균 근로소득으로 조사해야 함

☞ 단, 「근무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단순노무자, 공사현장 일용노무자, 가사도우미 등의 일」을 하면서 부업으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등 근무장소가 일정한 일 또는 비임금근로」를 하는 경우는 주된 일 기준으로 월평균 임금을 파악해야 함

■ 취업한지 아직 1개월이 안된 사람은 향후 받기로 되어 있는 임금(급여)을 기준으로 조사함

■ 「취업한지 아직 3개월이 안된 사람」이거나 「학업, 병원입원 등 일을 할 수 없었던 명백한 사유」인 경우는 취업한 달의 평균 임금(1~2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조사함

D23) 지난 주에 다니던 직장(일)은 개인적으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형태에 해당됩니까? (예: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배달기사, 골프장 보조원,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 | | |
|------|--------|
| 1. 예 | 2. 아니오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을 얻는 형태를 파악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여부를 구분하기 위한 항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경우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종사자를 말함

- 1)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고,
 - 2) 계약에 의해 주로 특정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된 상태, 다만 근로(노무)제공의 방법, 근로(노무)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 3) 타인을 사용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근로를 직접 제공
- (예)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레미콘 자립차주, 화물운송 차주, 덤프 트럭기사, 컨테이너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흥의회 판매원(철도매점), 퀵서비스 배달원,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방송사 구성작가, 프로(야구)선수, AS기사, 수도검침원, 시청료징수원, 다단계판매원 등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경우** : 직접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서비스)을 제공하고 소득을 올리는 형태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근로형태는 유사하나, 회사(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경우는 근로(노무)제공 방법 및 근로(노무)시간에 대한 독자성은 없어 일반 임금근로자([참고]의 B에 해당)임

예) 화장품, 자동차, 제약, 음식료품 등 제조업체 또는 보험회사 등에서 직접 채용한 영업직 사원, 회사소속 택시 기사

참고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구분

• 자영업자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대체 가능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며, **작업장, 점포 등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자영업자로** 분류. 이 때 “자기책임 하에서 독립적으로”라는 의미는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조달, 생산활동, 판매망 등을 자기계정하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한다는 의미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조사항목에 대한 설명(다음 표 참조)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

구분	자영업자	임금근로	
독립성 여부	독립적 형태로 업무 수행	비독립적 형태로 업무 수행	
작업장 등 보유 여부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업무수행(재료조달, 생산활동, 판매망 등을 독자결정)	A.근로(노무)제공의 방법, 근로(노무)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지만, 주로 특정된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된 상태에서 타인을 사용 하지 않고 근로를 직접 제공	B.근로(노무)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까지 비독자적으로 결정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 <u>보유하지 않음</u>	자유업자(음악평론가, 화가, 저술가, 번역사, 컨설턴트, 조산원, 도안사 등), 과외교사 등이 해당되며 자영업자로 분류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골프장캐디, 대리운전자 등이 해당되며, 이 부문을 특수 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	일반 임금근로자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 <u>보유함</u>	일반 자영업자(2인 이상의 공동출자, 공동사무실 또는 공동작업장 포함), 개인택시운전사 등이 해당되며 자영업자로 분류	-	-

D24) 지난 주에 주로 어떤 장소에서 일하였습니까?

1. 가정에서(※ 가사도우미, 입주보모, 입주 가정교사 등은 2에 해당됨)
2. 사업장 내 또는 사무실 이외의 지정된 장소에서

근로제공장소	주로 근무하는 장소(근로제공 장소)에 따른 근로자 특성을 구분하기 위한 항목으로서『가정 내 근로』(재택근무, 가내 하청 등) 파악이 주목적임
--------	--

■ 1. 가정에서

- ☞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 작업장이 아닌 가정 내에서 근무(작업)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해당됨
- ☞ 대상자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집 또는 인근 남의 가정에 모여서 작업하는 경우도 해당됨
 - 의류 또는 모피제품 등에 단추나 장식물 달기, 대나무 방석 완성, 나무젓가락 끼우기, 봉투 제작, 구슬꿰기 등의 일을 가정에서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 114 전화안내 등을 가정에서 하는 경우
 - 전화를 이용한 인터넷가입권유·상품판매
 -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관련 업무를 가정에서 수행하고 1주일에 1~2일 또는 정해진 요일에만 사무실에 나가는 경우

[주의] 가사도우미, 입주 보모, 입주 가정교사 등과 같이 일의 특성 자체가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는 가정이 사업장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여 「2. 사업장내 또는 사무실이외의 지정된 장소에서」로 분류

■ 2. 사업장내 또는 사무실이외의 지정된 장소에서

- ☞ 실제 근무하는 곳이 고용계약(묵시적, 명시적 계약 포함)을 맺은 업체와 동일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경우가 모두 해당됨. 즉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가 해당됨
 - 고용계약을 한 사업주(사용자, 고용주)의 근로감독 아래에서 근무하는 경우
 - 고용계약이 된 직장(일)내 또는 지점이나 지사에서 근무한 경우
 - 사무실이외의 지정된 장소에서 일하면서 임금은 고용업체로부터 받는 경우
(예 : 제조업체에서 백화점에 설치한 매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 가사도우미, 입주 가정교사, 입주 보모인 경우
 - 파견근로, 용역근로 등과 일정하게 고정된 근무지가 없이 사업장(사업체)내 또는 현장, 일반가정, 사업체,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일하는 경우
(예 : 외근 영업사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골프장캐디, 차량 운전기사 등)

[비정규직만 응답]**D25) 지난 주의 일자리 형태로 일하게 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1. 내가 원해서
2. 원하지는 않았지만 비자발적인 사유로

◆ D25-1) 귀하가 그 일자리 형태로 일하게 된 것은 귀하의 장애가 영향을 미쳤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약간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비정규직 근로 사유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고용형태로 일하게 된 사유가 자발적인지, 비자발적 사유인지를 파악함

※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비정규직 근로자임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고용형태〉

- D14=1 :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
- D17-1=2 또는 D14=2 & D19=1~6 : 한시적 비기간제 근로자
- D20=2 응답 : 시간제 근로
- D16=1 응답 : 일일근로(단기근로)
- D21=2~3 응답 : 파견/용역근로
- D23=1 응답 : 특수고용형태
- D24=1 응답 : 가정내 근로

■ 1. 내가 원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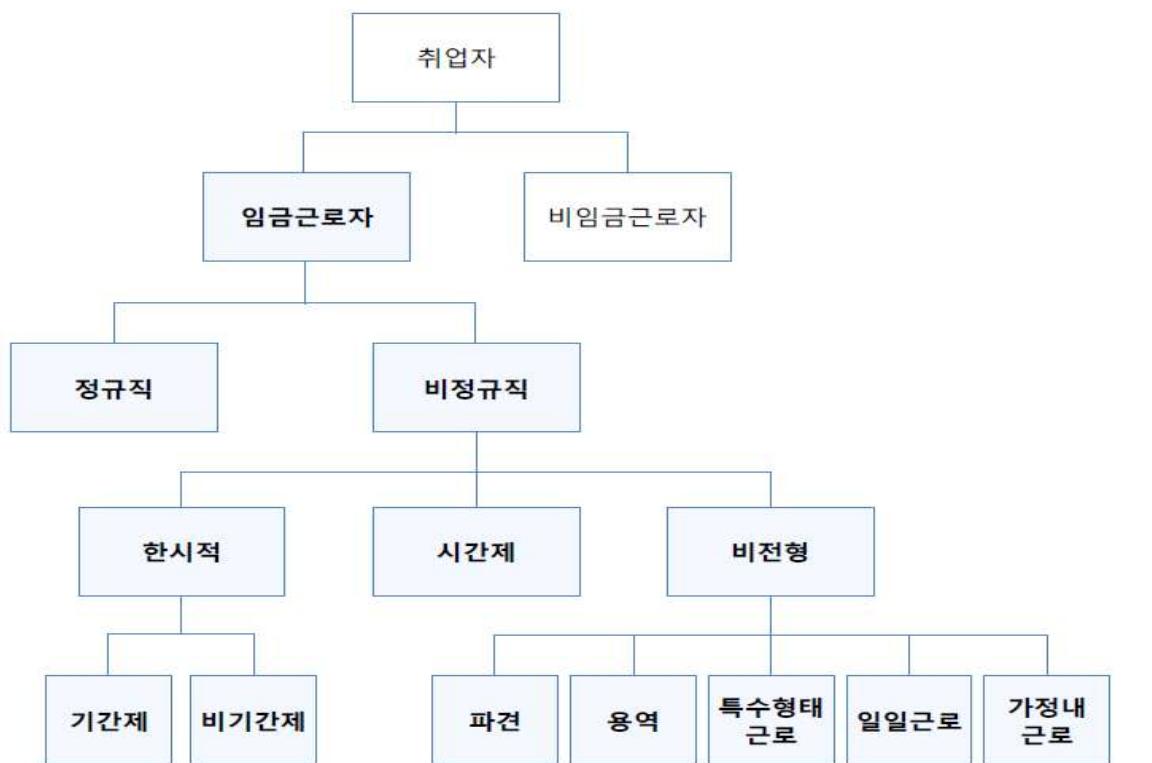
☞ 본인이 원해서 해당 고용형태를 선택한 경우

☞ 장애, 학업, 가족부양, 건강 등의 사유로 정규직 근로를 할 수 없어 본인이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

■ 2. 원하지는 않았지만 비자발적인 사유로

☞ 정규직 일자리를 원하지만 일자리의 고용조건이 맞지 않아 채용되지 않는 등 외부환경의 제한으로 비정규직 고용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참고 임금근로자 고용형태 구성



◎ 비정규직 :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한시적근로자 ②시간제근로자 ③비전형근로자로 분류

1) 한시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자
	비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간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일의 완료, 이전 근무자 복귀, 계절근무 등)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2) 시간제 근로자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3) 비전형 근로자	일일근로자 (단기근로자)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
	파견근로자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사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용역근로자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 (예 :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고 특정 사업주에 종속되어 일하되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 형태
	가정내 근로자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 작업장이 아닌 가정내에서 근무(작업)가 이루어지는 근무 형태

D26) 지난 주에 다음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까?

- ◆ D26-1) 국민연금 또는 특수직역연금
 - ↪ 111.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11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13.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 (D26-2번 응답 후 종사상 자유에 따라 0통 12. 아니오 13. 모른다)
- ◆ D26-2) 건강보험
 - ↪ 211. 직장가입자 212. 지역가입자 213. 의료수급권자 214. 직장가입피부양자
 - 22. 아니오 23. 모른다
- ◆ D26-3) 고용보험
 - ↪ 31. 예 32. 아니오 33. 모른다

☞ 임금근로자 질문 끝. (G1번으로)

사회보험 가입여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확인 - 주업·부업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조사
------------------	--

■ 국민연금**◎ 111. 직장가입자(직장이 있는 임의계속가입자 포함)**

- 국민연금에 가입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외국기관포함)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
(※ 단, 직장이 있는 임의계속가입자면 60~65세도 있을 수 있음)

◎ 112.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직장이 없는 임의계속가입자 포함)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
(※ 단, 임의계속가입자면 60~65세도 있을 수 있음)
⇒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지 반드시 확인

◎ 113.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 공무원, 군인, 교원 등의 연금제도에 가입된 자로 임금(보수) 지급 시 일반기여금으로 공제되는 경우
 - 공무원연금 : 국가 및 지방공무원, 법관, 경찰관, 교육공무원(60년 시행)
 - 군인연금 : 장기복무하사관 및 장교(63. 1. 1 시행)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74. 1. 1 시행)
 - 별정우체국법이 정하는 연금 : 별정우체국 직원(82. 7. 2 시행)

◎ 국민연금 또는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는 “12. 아니오”에 해당됨**참고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음

▶ 임의계속가입자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 도달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음

■ 건강보험

◎ 211. 직장가입자

- 적용대상 사업장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직장 가입자 범위 :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 ※ 직장 가입 적용 제외자
-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
 -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 (단,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임)

◎ 212. 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포함)

-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및 의료수급권자를 제외한 자
- ※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달리 “피부양자” 개념이 없음
- 보험료는 세대주가 부담하나, 세대주와 세대원이 각각 지역가입자로서의 지위를 가짐
- 임의계속가입자 : 전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지역가입자 중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하고자 공단에 가입신청한 자

◎ 213. 의료수급권자

- 세대 또는 개인을 기준으로 소득이 없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어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및 타 법률에 의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 214. 직장가입피부양자

- 배우자 등의 『직장가입』에 따른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
- 예) 식당에 다니는 배우자가 회사 다니는 남편의 『직장가입』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

-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
 - 65세 미만 근로자는 직장에서 임금(보수) 지급 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므로 이를 확인하여 가입여부 판단 가능
 -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고용보험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 4대보험 확인 시 주의사항

- ▶ 임금(봉급, 급여) 명세서(공제내역)상에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또는 국민복지연금) 등과 같이 개별적으로 공제내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보험금”이라는 공제내역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공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 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급여명세서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하고 있는 직장(사업체)에 확인하도록 부탁하여 조사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 경우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형식적으로는 개별사업자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음)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이 사업장에서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 시 유의

D27) 귀하가 운영하는(소속된) 사업체의 주된 장소는 어디입니까?

1. 사업장(건물 등)
2. 자기 집(나의 집에서 과외 지도 등)
3. 남의 집(방문과외 등)
4. 거리(노점, 행상, 방문판매, 이동판매 등)
5. 야외 작업현장(논, 밭, 건설 및 토목공사 현장 등)
6. 운송수단(자동차, 트럭, 선박 등)
7. 기타()

☞ 무급기족종사자는 D29로

사업체의 주된 장소	비임금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체의 주된 장소를 파악하는 항목 코로나19가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
------------	---

D28) 현재 이 일자리에서 얻는 순수입은 월평균(세금공제 전) 얼마입니까?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단, 소득이 일시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평균을 내어 응답해 주세요)

1. 월평균 만원
2. 직자(손해)를 보고 있음

D28-1 정확한 월평균 소득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 | | |
|-----------------|------------------|
| 1. 50만원 미만 | 5. 200~300만원 미만 |
| 2. 50~100만원 미만 | 6. 300~500만원 미만 |
| 3. 100~150만원 미만 | 7. 500~1000만원 미만 |
| 4. 150~200만원 미만 | 8. 1,000만원 이상 |

자영업 순수입	자영업주의 순수입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
	■ 월별로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난 1년간의 소득을 12로 나누어 응답

D29) 현재 사업체(일자리)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1. 1년 이내 확장할 계획임
2. 계속 유지할 계획임
3. 향후 그만둘 계획임
 - ↳ D29-1) 언제쯤 그만 둘 계획이십니까?
 1. 6개월 이내에 그만 둘 계획
 2. 6개월~1년 이내에 그만 둘 계획
 3. 1년 이후에 그만 둘 계획
4. 잘 모르겠음

사업체(일) 유지여부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일자리) 유지 계획을 파악하는 항목
	<p>■ 비임금근로자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향후 유지 계획을 확인하여 해당 항목에 기입함</p> <p>■ 『3. 향후 그만둘 계획임』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만 두는 상태가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파악하여 1~3항목에서 선택함</p>

<p>[임금근로자만 응답]</p> <p>D30) 귀하께서 현 일자리(직장)에서 근무할 때 코로나 지속으로 인해 겪었거나, 현재 겪고 있는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p> <p>(※ 코로나 지속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항목만 응답해 주세요.)</p>	
<p>[2021년 5월 이전(5월 포함) 입사한 임금근로자만 응답]</p> <p>D31) 현재 일자리(직장)에서의 고용안정 정도는 작년 5월(1년 전)에 비해 어떠합니까?</p>	

근로일, 근로시간	1. 유급휴가(가족돌봄휴가 등), 유급휴직
	2. 무급휴가, 무급휴직
	3. 근로시간 단축
	4. 근로시간 연장
	5. 재택근무(원격근무)
근로형태	6. 유연근무(출퇴근 시간 변경 등)
	7. 비대면업무 전환(온라인 등)
업무 및 임금	8. 업무량 감소
	9. 업무량 증가
일자리 (직장) 상황 및 고용유지	10. 업무 변경
	11. 임금 삭감
그 외	12. 임금 체불
	13. 근로자 지원 축소
일자리 (직장) 상황 및 고용유지	14. 일자리(직장) 휴업
	15. 일자리(직장) 매출 고객 감소
그 외	16. 일자리(직장) 직원 감원
	17. 재계약, 계약기간 연장 등 실패
그 외	18. 퇴사 권고
	19. 기타(적을 것 :)
	20. 특별히 없었음

☞ D34로 이동

코로나19의 영향력	코로나19가 임금근로자 현 직장에서의 근로 및 고용안정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변화인지를 반드시 확인 할 것 ■ D30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겪었다가 현재 상황이 해소된 경우라도 응답

<p>[비임금근로자만 응답]</p> <p>D32) 코로나 지속으로 인해 현 사업체 운영 시 겪었거나, 겪고 있는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p> <p>(※ 코로나 지속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항목만 응답해 주세요.)</p>	<p>[2021년 5월 이전(5월 포함) 창업한 비임금근로자만 응답]</p> <p>D33) 현재 사업체 운영상황은 작년 5월(1년 전)에 비해 어떠합니까?</p>
	<p>1. 매출(소득) 감소</p> <p>2. 고객 감소</p> <p>3. 영업(근로)시간 단축(영업제한)</p> <p>4. 일시휴업 (총 휴업기간 : 1. 1개월 미만 2. □□□ 개월)</p> <p>5. 직원 감원</p> <p>6. 신규채용 제한</p> <p>7. 근무(영업)방식 변화(온라인 영업 강화 등)</p> <p>8. 기타(적을 것 :)</p> <p>9. 특별히 없었음</p>

코로나19의 영향력	코로나19가 비임금근로자 사업체 운영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변화인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해 응답 ■ D32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겪었다가 현재 상황이 해소된 경우라도 응답

[취업자 응답]

D34) 귀하는 근무할 때 마스크를 착용합니까?

1. 항상 착용함
2. 착용하기도 하고 착용하지 않기도 함
3. 착용하지 않음

D35) 귀하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입니까? 가장 최근 확진 시기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1. 있음 → 년 월 (※ 2019년 12월 0전 응답 불가)
2. 없음 → (D36으로)

[코로나 확진 경험이 있는 경우 응답]

D35-1) 귀하는 현재 코로나 증상이나 후유증으로부터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입니까?

1. 전혀 회복하지 못했음
2. 회복하지 못한 편임
3. 회복한 편임
4. 완전히 회복하였음

코로나19 확진 이후 회복 정도	코로나19 확진 경험과 회복 정도를 묻기 위한 항목
	■ 코로나19 회복 정도는 가장 최근 코로나 확진 이후 증상이나 후유증으로 부터 건강이 회복 된 정도를 묻습니다.

D36) 귀하가 주로 일하는 곳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신체적 위험뿐 아니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적 위험도 고려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위험함
2. 위험한 편임
3. 안전한 편임
4. 매우 안전함

D37) 귀하가 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관련 위험요소를 모두 선택해주세요.

1. 정적인 자세, 반복 동작, 무리한 힘의 사용 등 신체적인 활동과 관련된 위험
2. 추락, 감전, 밀폐, 미끄러짐 등 위험장소에서의 작업
3. 프레스기, 분쇄기 등 위험한 기계, 기구
4. 감정 노동, 직무 스트레스, 차별 등 정신적, 심리적 위험
5. 소음, 진동, 고온/저온 등 물리적(환경적) 위험
6. 염소, 산/알칼리류 등을 포함한 화학물질 위험
7. 바이러스, 헬액 등 생물학적 위험
8. 특별히 없음

현재 일자리 안전	주로 일하고 있는 곳에서의 안전 정도 및 위험요소를 묻는 항목
-----------	------------------------------------

D38) 귀하의 직장(일자리)에는 산업재해·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안전 설비/장비, 안전 지침/수칙, 안전 지도/교육 등)

1.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마련되어 있지 않은 편임
3. 마련되어 있는 편임
4. 잘 마련되어 있음

현재 일자리

**안전사고 대책 마련
상황 확인**

주로 일하고 있는 곳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정도 확인 항목

D39) 귀하는 현재 일자리에서 최근 1년 동안 업무 수행 시 질병이나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일주일 이상의 병가를 필요로 하는 수준의 질병이나 사고를 의미합니다.

1. 있었음
2. 없었음

**현재일자리에서의 질병
사고 경험 여부**

현재 일자리에서 질병이나 사고를 경험했는지 물기 위한 항목

D40) 귀하는 화재 등의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대피나 대응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1.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함
2. 상당한 도움이 필요함
3. 일부 도움이 필요함
4. 도움 필요 없음(혼자서도 대피하거나 대응할 수 있음) → (G1로)

1. 있음
2. 없음

D40-1) 귀하가 일하는 곳에는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대피나 대응하는 것을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1. 있음
2. 없음

☞ 취업자 질문 끝. (G1번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도움 필요 여부**

현재 일하고 있는 주된 일자리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도움이 필요한 정도와 도움줄 사람이 있는지 물기 위한 항목

E. 실업자

E1) 지난 주에 직장(일)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1. 있었음 2. 없었음 → (F6번으로)

**취업가능성
(실업자판단)**

취업가능성을 파악하는 항목

- 즉시 취업이 가능하였던 사람은 「1. 있었음」에 기입 후 다음 항목으로 이동
- 즉시 취업이 불가능했던 사람은 「2. 없었음」에 기입한 경우는 「F6. 지난주 활동상태」로 이동
 - ☞ 장애나 건강문제 등으로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는지, 또는 일이 주어졌더라도 가사나 통학에 전념해야 하는 경우
 - ☞ 졸업예정자가 졸업 후에 다닐 직장을 찾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기간에는 학업 때문에 즉시 취업에 응할 수 없는 사람

E2) 전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그 일을 그만둔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1. 년 개월
2. 없었음 → (E7번으로)

**전작유무 및
그만둔 시기**

실업자에 대해서 취업경험유무 및 그만둔 시기를 조사

- 전에 다니던 직장(일)이 있던 사람
 - ☞ 가장 마지막으로 다니던 직장(일)을 그만 둔 시기를 확인

E3) 이전 직장(일)을 그만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1.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또는 장애상태의 악화) | 10. 근무환경(장애인편의시설, 작업장환경)의 문제 |
| 2.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건강문제) | 11. 직장의 휴업, 폐업 |
| 3. 기타 개인·가족 관련 사유(결혼, 임신, 육아, 가사, 학업, 가족 병고호 등) | 12. 명예·조기퇴직, 정리해고 |
| 4. 일자리에서 정년에 도달하여 공식적으로 퇴사함(정년퇴직) | 13.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원료(계약기간 종료) |
| 5. 연로해서 그만둠 | 14.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 |
| 6. 일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움 | 15. 자속적인 근무의 어려움(휴식 필요) |
| 7. 임금이 낮아서 | 16. 장애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
| 8. 임금 이외 근로조건(복리후생, 근로시간, 승진, 장래전망)의 문제 | 17. 기타(적을 것 : _____) |
| 9. 더 좋은 일자리로 이직(창업)하기 위해 | |

그만둔 사유	실업자 가운데 아직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前 직장을 그만둔 이유를 묻는 항목
--------	--

※ 1~9번은 자발적 성격이 강하며, 10~17번은 비자발적 성격이 강함

■ 1.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또는 장애상태 악화)

☞ 정신·육체적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장애가 악화되어 직장(일)을 그만둔 경우

■ 2.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건강문제)

☞ 장애 이외 자신의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일)을 그만둔 경우

■ 3. 기타 개인·가족 관련 사유(결혼, 임신, 육아, 가사, 학업, 가족 병간호 등)

☞ 결혼, 임신, 육아 등 개인·가족 관련 사유로 인해 직장(일)을 그만둔 경우

■ 4. 정년퇴직

☞ 정년으로 인하여 직장(일)을 그만 둔 경우

■ 5. 연로

☞ 나이가 많아서 직장(일)을 계속 하기가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 6. 일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움

☞ 일 수행 자체가 힘들고 어려워 직장(일)을 그만둔 경우

■ 7. 임금이 낮아서

☞ 일의 수입·보수가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소득(수입)을 얻기 위하여 다른 일로 바꾸었거나 그만둔 경우

■ 8. 임금 이외 근로조건(복리후생, 근로시간, 승진, 장래전망)의 문제

☞ 현재 일의 임금 이외 복리후생 등 여타 근로조건에 만족하지 못해 다른 일로 바꾸었거나 그만둔 경우

■ 9. 더 좋은 일자리로 이직(창업)하기 위해

☞ 현재 직장(일) 보다 임금, 복리후생, 근로시간 등 더 좋은 일자리로 이직(창업)하기 위해 직장(일)을 그만둔 경우

■ 10. 근무환경(장애인편의시설, 작업장환경)의 문제

☞ 직장(일)에 편의설 및 환경이 장애인이 근무하기에 아주 열악한 경우

■ 11. 직장의 휴업, 폐업

☞ 고용주의 사망, 도산(부도), 휴업, 폐업 등과 같은 사유로 사업이 끝났거나 직장이 문을 닫아서 자동적으로 직장을 잃은 경우

■ 12. 명예조기퇴직, 정리해고

☞ 명예퇴직, 조기퇴직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

☞ 사업의 축소, 업무의 자동화로 인한 인력감축

☞ 사업체의 사정, 개개인의 과실, 기업체 경영권의 이전, 기업합병 등으로 인하여 해고당한 경우

■ 13. 임시적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계약기간 종료)

☞ 임시적이거나 계절적인 일의 완료 등으로 그만둔 경우(겨울 스키강사, 송이버섯 채취, 농사일의 완료)

■ 14.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

☞ 일용근로자인가 직업소개소 등에 등록하고 호출을 기다리고 있으나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 자영업을 하는 사람 중 자기가 하던 사업이 경기부진 등의 사정으로 사업경영이 잘되지 않아 업종을 바꾸었거나 그만둔 경우

※ 상용, 임시직 근로자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15. 지속적인 근무의 어려움

☞ 현재 직장(일)에 휴식 등이 필요하여 지속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

■ 16. 장애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 급여, 승진, 복리후생 등 장애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없고 작간접적으로 차별을 하거나 선입견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17. 기타()

☞ 상기 열거된 사항 이외의 사유 때문에 일을 그만둔 경우 그 사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입

[2020년 이후 퇴사자만 응답]

E3-1) 위에서 말씀하신 퇴사 사유가 코로나 지속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까?

1.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음(전혀 관련 없음)
2. 일정 정도 영향을 받음
3. 많은 영향을 받음

코로나19의 영향력

코로나19가 장애인실업자의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

E4) 이전에 어디에서 일하였습니까?

- ◆ E4-1-1) 사업체(직장)명 : _____
- ◆ E4-1-2) 사업체(직장)가 주로 하는 일 : _____□□

◆ E4-2) 다니던 직장(사업체)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1. 보호직업장, 근로사업장 등과 같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2. 공공근로 복지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과 같은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3. 공무원 교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일자리
4. 그 외 일반사업체

◆ E4-3) 다니던 직장(사업체)의 종사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 | | |
|-----------|--------------|
| 1. 1~4인 | 6. 100~299인 |
| 2. 5~9인 | 7. 300~499인 |
| 3. 10~29인 | 8. 500~999인 |
| 4. 30~49인 | 9. 1,000인 이상 |
| 5. 50~99인 | |

E5) 이전 직장(사업체)에서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 ◆ E5-1-1) 내가 한 일 : _____
- ◆ E5-1-2) 직명(직위): _____□□□

직업	조사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던 사업체에서 어떠한 종류의 일을 했었는지 또는 수행했던 임무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함
※ 「D9. 직업」(지침서 34쪽) 참조	

산업	실업자의 전직(前職) 산업 및 직업을 기입
※ 「D9. 산업 · 사업체 종류 · 종사자규모」(지침서 33-34쪽) 참조	

E6) 이전 직장(일)에서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근로자 1. 상용근로자 2. 임시근로자 3. 일용근로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임금근로자 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6. 무급기족종사자 |
|---|--|

과거 종사상 지위	◇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구분
※ 「D12. 종사상 지위」 참조	

E7) 희망하는 직장(일)의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1. 임금근로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 → (E8응답 후 E9, E10 응답)
2. 비임금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 (E8응답 후 E11번으로)

희망고용형태	실업자가 원하는 고용형태가 임금근로(상용, 임시, 일용)인지 비임금 근로(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인지 구분하기 위한 항목
※ 「D12. 종사상 지위」의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 구분 기준 참조	

E8) 희망하는 일자리(직장)의 사업 및 업무내용은 무엇입니까?

- ◆ E8-1) 희망 일자리(직장) 사업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공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
 10. 정보통신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부동산업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 교육 서비스업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 활동
 21. 국제 및 외국기관
- ◆ E8-2) 희망 일자리(직장) 업무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희망 일자리	비경제활동인구가 원하는 직장(일)의 사업 및 업무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
☞ 산업대분류 두자리까지 입력	
☞ 직업대분류 한자리까지 입력	

E9 희망하는 직장(사업체)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1.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과 같은 장애인 직업자활시설 일자리
2. 공공근로 복지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과 같은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3. 공무원, 교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일자리
4. 그 외 일반사업체

희망 일자리 종류	실업자의 향후 희망하는 일자리의 종류를 묻는 항목
※ 「D9-2. 사업체 종류」 참조	

E10) 희망하는 근무시간 형태는 무엇입니까?

1. 전일제 근로 → (E11번으로)
2. 시간제 근로

희망 근무시간 형태	실업자의 향후 희망하는 근무시간의 형태를 묻는 항목
-------------------	------------------------------

※ 「D20. 근로시간 형태」 참조

E11) 일자리에서 희망하는 월평균 소득(세금공제 전)은 최소 어느 정도 입니까?

월평균 만원

E11-1) 정확한 월평균 소득을 응답하기 어려운 경우, 대략 얼마정도 희망하십니까?

- | | |
|-----------------|-----------------|
| 1. 50만원 미만 | 4. 150~200만원 미만 |
| 2. 50~100만원 미만 | 5. 200~300만원 미만 |
| 3. 100~150만원 미만 | 6. 300만원 이상 |

희망 월평균 소득	실업자의 향후 희망하는 월평균 소득
------------------	---------------------

E12) 직장(일)을 구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얼마동안 계속 해왔습니까?

개월

E12-1) 정확한 시기가 기억나지 않는 경우,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요?

- | | | |
|-----------|--------------|----------|
| 1. 6개월 미만 | 2. 6개월~1년 미만 | 3. 1년 이상 |
|-----------|--------------|----------|

구직기간

실제로 실직상태에서 구체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기간

- 어떤 직업에 종사하면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구직기간 계산 :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기간
 - ☞ 구직활동 첫 시작일로부터 조사대상기간 마지막날(土)까지
 - ☞ 구직기간은 월단위로 계산하며 15일이상은 반올림하여 1개월로 계산
 - ☞ 최소 구직기간은 1개월이 되도록, 15일 미만도 1개월로 기입
 - ☞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구직자는 실제로 지속적인 구직활동기간인지를 반드시 재확인

참고 구직기간의 판단

- ▶ **구직알선 의뢰 후 지속적으로 결과를 확인한 경우에만 구직기간에 포함**
 - 친지에게 부탁 후 1개월이 경과하도록 확인도 하지 않은 경우 ☞ 구직활동기간으로 간주하지 않음
 - 사업상태에서 취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변경된 기간은 해당이 되지 않음
 - 사업상태에서 연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기간만 계산

예) 3개월간 구직활동 후 일거리를 찾아서 며칠간 일하고 그만 둔 후, 다시 구직활동을 시작하여 실업자가 된 경우

☞ 최근 일을 그만두고 구직활동을 다시 시작한 시점부터 계산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취업자 → 실업자

(3개월 구직) (1개월 구직) ⇒ 구직기간은 1개월로 계산

E13) 주로 어떠한 방법과 경로로 직장(일)을 구해 보았습니까? (주된 것 2개까지 선택)

- E13-1) 구직 방법은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 ()
 1. 구직등록, 구직응모(주로 공공, 민간알선기관)
 2. 시험 접수, 시험 응시
 3. 사업체 문의, 방문, 원서제출
 4. 취업(채용)박람회 참가
 5. 자영업 준비
 6. 부모(친척), 친구, 동료 등 지인에게 소개 부탁
 7. 기타(적을 것 : _____)

- E13-2) 주로 어떤 경로로 직장(일)을 알아보았습니까?(), ()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워크투게더 포함)
 2.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워크넷 포함)
 3.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 등)
 4.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5. 민간 취업알선기관(복지관 제외)
 6. 대중매체(신문, 인터넷, 광고 등)
 7. 학교, 학원
 8. 부모(친척), 친구, 동료 등 지인
 9. 기타(적을 것 : _____)

구직방법 실업자의 주요 구직방법을 파악함

- 1. 구직등록, 구직응모(주로 공공, 민간알선기관)
 - ☞ 직업알선기관 등에 등록, 응모
- 2. 시험 접수, 시험 응시
 - ☞ 구직을 위한 면접, 필기 등 시험 접수 또는 시험 응시
- 3. 사업체 문의, 방문, 원서제출
 - ☞ 취업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방문하거나 문의, 원서제출
- 4. 취업(채용)박람회 참가
 - ☞ 취업박람회 등으로 취직자리를 알아보는 경우
- 5. 자영업 준비
 - ☞ 사업계획의 확정 및 자금확보 후 사업장 물색, 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취득준비 등 물건 등을 구입하였거나 영업개시를 못하고, 허가신청 후 기다리는 경우도 포함
- 6. 부모(친척), 친구, 동료 등 지인에게 부탁
 - ☞ 부모(친척), 친구, 동료 등 지인에게 취업이나 취업 소개 부탁
- 7. 기타: 상기 구직경로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구직경로 실업자의 주요 구직경로를 파악함

- 해당기관에서 관리하는 온/오프라인 시스템을 모두 포함
-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워크투게더 포함)
 - ☞ Worktogether(워크투게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한 구직 포함
- 2.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워크넷 포함)
 - ☞ Worknet(워크넷: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을 통한 구직 포함
- 5. 민간취업알선기관
 - ☞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직업소개소 등을 통한 구직
- 6. 대중매체(신문, 인터넷, 광고 등)
 - ☞ 일간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구직
- 7. 학교, 학원
 - ☞ 학교, 학원 등의 추천, 소개, 의뢰에 의한 구직
- 8. 부모(친척), 친구, 동료 등 지인
 - ☞ 부모, 친척, 친구, 동료 등을 통한 구직
- 9. 기타: 앞에 언급한 경로 외에 다른 경로를 통한 구직(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E14)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실업상태로 있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것 2개까지 선택)

1순위		2순위	
-----	--	-----	--

1. 학력, 경력(경험), 기술 부족(자격 제한)
2. 수입이나 임금이 맞지 않아서
3. 근무환경이나 근무시간 등이 맞지 않아서
4. 구직(취업, 창업) 정보접근의 어려움
5. 취업일선기관 및 서비스 부재, 접근의 어려움
6.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7.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아서
8.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건강문제)
9. 심리적 불안감이나 초조함(자신감 결여)
10. 신체기능의 제한
11. 이동능력의 제한
12. 의사소통의 제한
13. 기타(적을 것 : _____)
14. 특별히 없었음

실업상태 지속이유

실업자가 실업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본인이 생각하는 이유를 파악함

- 1가지 이상 선택, 주된 것 2가지까지 선택
- 1순위에 “특별히 없었음” 선택 불가
- 8.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건강문제)
 - ☞ 장애가 아닌 기타 건강문제로 직장(일)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 10. 신체기능의 제한
 - ☞ 이동 및 의사소통의 제한을 제외한 신체기능 제한으로 직장(일)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 예) 한쪽 팔에 장애가 있는 자가 양손을 협용하여 조립하는 일에 취업하고자 하나 취업이 곤란한 경우
- 11. 이동능력의 제한
 - ☞ 장애로 인해 이동에 제한이 있어 직장(일)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 예) 독립적인 보행이 어려운 자체장애인의 직장(일)을 구하고자 하나 사업장까지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 12. 의사소통의 제한
 - ☞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어 직장(일)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 예) 수화나 구화가 어려운 청각장애인의 직장 내 동료들과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어 취업이 곤란한 경우

E15) 귀하는 어느 정도 수준의 근로가 가능합니까?

1. 일반적인 근로가 가능
2. 단시간 또는 단순한 근로가 가능

근로 능력

본인 판단에 따른 근로 능력을 파악함

- 본인의 취업의사, 취업방해 요인 또는 근로지원 환경 등과는 상관없이 순전히 본인의 근로능력을 확인
- 1. 일반적인 근로가 가능
 - ☞ 일자리에서 통상적인 수준의 일을 종일(하루8시간) 할 수 있는 상황
 - ☞ 일반경쟁고용과 거의 동일한 수준
- 2. 단시간 또는 단순한 근로가 가능
 - ☞ 간단한 돈벌이가 가능한 수준

E16) 코로나 지속이 귀하께서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데 있어 가장 크게 영향을 준 부분은 무엇입니까?

1. 일자리 채용 규모가 줄어들거나 채용 계획이 없어짐
2. 채용이나 입사 시험 일정이 연기됨
3. 스스로 취·창업 일정을 연기함
4. 이력서 제출, 구직 응모 등 구직활동 자체가 어려워짐
5. 취·창업에 필요한 기술습득, 학원수강, 자격증 취득 등이 어려워짐
6. 코로나 지속으로 특별히 취업이나 창업에 영향을 받은 것이 없음

E17) 향후 귀하의 취업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까?

1. 좋아질 것임
2. 변하지 않을 것임
3. 나빠질 것임

(G1번으로)

코로나19의 영향력

코로나19가 장애인 실업자의 취업 또는 창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및 전망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

E18) 귀하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입니까? 가장 최근 확진 시기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1. 있음 → 년 월 (※ 2019년 12월 0전 응답 불가)
2. 없음 → (G1번으로)

[코로나 확진 경험이 있는 경우 응답]**E18-1) 귀하는 현재 코로나 증상이나 후유증으로부터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입니까?**

1. 전혀 회복하지 못했음
2. 회복하지 못한 편임
3. 회복한 편임
4. 완전히 회복하였음

(G1번으로)

코로나19 확진 이후 회복 정도

코로나19 확진 경험과 회복 정도를 묻기 위한 항목

■ 코로나19 회복 정도는 가장 최근 코로나 확진 이후 증상이나 후유증으로 부터 건강이 회복 된 정도를 묻습니다.

F. 비경제활동인구

F1) 지난 주에 직장(일)을 원하였습니까?	F2) 지난 주에 직장(일)이 주어졌다면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1. 원하였음 → (F2번 응답 후 F3번으로) 2. 원하지 않았음 → (F2번 응답 후 F4번으로)	1. 있었음 2. 없었음

취업희망여부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구직자(구직단념자)를 판단하는 항목
잠재구직자 (구직 단념자 관련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희망여부 확인(조사대상기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을 희망한 사람 ⇒ 『1. 원하였음』에 표시 ☞ 취업을 희망하지 않은 사람 ⇒ 『2. 원하지 않았음』에 표시 ■ 일을 할 수 없는 현재의 상태(장애, 고령 등)와는 상관없이 일자리를 원하면 ‘1.원하였음’에 응답
취업가능성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구직자(구직단념자)를 판단하는 항목
잠재구직자 (구직 단념자 관련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가능성여부 확인(조사대상기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자 판단항목과 같은 맥락임 ☞ 취업이 가능했던 사람 ⇒ 『1. 있었음』 ☞ 취업이 불가능했던 사람 ⇒ 『2. 없었음』 <p>(지난주에 일이 주어졌더라도 가사나 학업에 전념 등의 이유로 즉시 취업할 수 없었던 경우)</p>

F3) 지난 4주 내에 직장(일)을 구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1.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2.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3. 근처(주변)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4.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5.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6.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7.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주가 채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8. 구직(취업·창업) 정보나 방법을 몰라서
9. 자영업을 하려고 하지만 창업할 능력, 상황이 안 되어서 | 10. 육아 또는 가사로 인해
11.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학생이어서)
12.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
13.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로(건강문제)
14. 취업/창업을 준비 중이어서
15. 일을 하게 되면 기초수급자격이 박탈될 것을 우려해
16. 취업 이외의 활동 때문에(진학, 결혼 등)
17. 기타(적을 것:) |
|---|--|

비구직사유	지난 4주내에 취업의사는 있으나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 그 사유가 구직단념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항목
-------	---

* 1~9항목 “구직단념자”에 해당

(※ 구직단념자 :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1~9까지 해당)로 지난 4주내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이내에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

■ 1.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 자신의 교육 수준, 전공분야, 알고 있는 기술,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분야에 알맞은 일이 없을 것 같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2.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 희망 임금수준이 회사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과 맞지 않거나 원하는 시간만큼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이 희망하는 시간대에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

■ 3. 근처(주변)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 자신의 거주지 주위나 출퇴근이 가능한 근거리 범위 내에 알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4.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 스스로 자신의 교육, 기술, 경험 수준이 직장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낮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5.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 6.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 과거에 구직활동을 하였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직을 포기한 경우

■ 7.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주가 채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선입견 등으로 고용주가 꺼려할 것 같아서 구직활동을 포기한 경우

■ 8. 구직(취업·창업) 정보나 방법을 몰라서

☞ 구체적인 구직활동 방법을 몰라 구직활동을 포기한 경우

■ 9. 자영업을 하려고 하지만 창업할 능력, 상황이 안되서

☞ 창업을 하고자 하나 창업할 수 있는 물질적 혹은 비물질적인 여건이 안되서 포기한 경우

■ 10. 육아 또는 가사로 인해

☞ 미취학 자녀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자기 집에서 집안 일(가사)을 하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11.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학생이어서)

☞ 공·사립학교,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어서 구직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 12.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

☞ 정신 또는 육체적 장애로 인해 구직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 산업재해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장애를 입어 구직이 힘든 경우도 포함

■ 13.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로(건강문제)

☞ 일시적인 건강상태 악화 또는 병 등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 14. 취업/창업을 준비 중이어서

☞ 취업확정 후 출근대기(1개월후) 등과 같은 사유로 취업, 출근을 대기하고 있어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 계절적 취업, 계절적 사업체 운영, 가족사업 참여 등을 위하여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 15. 일을 하게 되면 기초수급자격이 박탈될 것을 우려해

☞ 근로소득이 생기게 되면 기초수급자격이 박탈되거나 등급이 낮아질 우려가 있어 취업능력과 의사가 있지만 애초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 16. 취업 이외의 활동 때문에(진학, 결혼 등)

☞ 임신, 진학, 혼인 등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 17. 기타

☞ 상기 열거된 사항 이외의 사유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함

F3-1) 위에서 말씀하신 직장(일)을 구하지 않은 이유가 코로나 지속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까?

1.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음(전혀 관련 없음)
2. 일정 정도 영향을 받음
3. 많은 영향을 받음

(F5번으로)

코로나19의 영향력	코로나19가 비구직사유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
	<p>■ 앞서 응답한 비구직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한 상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그 영향 정도에 따라 2 또는 3에 응답</p> <p>■ 비구직 사유가 자극히 개인적인 사유이거나 코로나19의 영향이 전혀 없다면 1에 응답</p>

F4) 지난 주에 직장(일)을 원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1.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 10. 육아 또는 가사로 인해 |
| 2.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 11.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학생이어서) |
| 3. 그저 일하고 싶지 않아서 또는 일할 필요가 없어서 | 12.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 |
| 4. 교육, 기술, 경험에 부족해서 | 13.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로(건강문제) |
| 5.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생각해서 | 14. 취업/창업을 준비 중이어서 |
| 6.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 15. 일을 하게 되면 기초수급자격이 박탈될 것을 우려해 |
| 7.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때문에 | 16. 취업 이외의 활동 때문에(진학, 결혼 등) |
| 8. 일해 본 경험이 없어서(직장생활에 대한 자신감 부족) | 17. 기타(적을 것: _____) |
| 9. 자영업을 하려고 하지만 창업할 능력, 상황이 안 되어서 | |

비희망사유	지난 주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기 위한 항목
	<p>■ 가장 주된 이유를 찾아 1가지 선택</p>

F4-1) 위에서 말씀하신 직장(일)을 원하지 않은 이유가 코로나 지속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까?

1.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음(전혀 관련 없음)
2. 일정 정도 영향을 받음
3. 많은 영향을 받음

코로나19의 영향력	코로나19가 일자리 비희망 사유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
	<p>■ 앞서 응답한 비희망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한 상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그 영향 정도에 따라 2 또는 3에 응답</p> <p>■ 비희망 사유가 자극히 개인적인 사유이거나 코로나19의 영향이 전혀 없다면 1에 응답</p>

F5) 지난 1년 동안 구직활동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마지막으로 구직활동을 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1. 있었음 →

2	0	2	□
---	---	---	---

 년

□	□
---	---

 월
2. 없었음

지난 1년간 구직경험 여부 및 최근구직시기	조사대상기간으로부터 지난 1년간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가장 최근에 구직활동을 한 시기는 언제인지 파악하는 항목

- 조사대상기간으로부터 지난 1년간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 후,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구직활동을 한 시기가 언제인지 해당 연월을 기입
- 구직활동 당시의 경제활동상태(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와는 관계없이 지난 1년간의 실제 구직활동 여부를 파악

F6) 지난 주에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 | | |
|------------------------------------|---|
| 1. 육아 | 7. 진학준비 |
| 2. 가사 | 8. 연로 |
| 3. 정규교육기관 통학(온라인 등교 등) | 9. 심신장애 |
| 4. 입시학원 통학 | 10. 쉬었음 |
| 5.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 ↳ F6-1) 지난주에 쉰 이유가 코로나19 지속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까? |
| 6. 취업준비 | 1. 코로나19 지속과 관련이 있음
2. 코로나19 지속과 관련이 있음
11. 기타 (적을 것 : _____) |

활동상태 | 비경제활동인구의 지난 1주간에 주된 활동 상태를 파악하는 문항

1. 육아: 조사대상기간에 주로 미취학자녀(초등학교 입학전)를 돌보기 위하여 집에 있는 경우가 해당

☞ 미취학자녀 양육과 가사를 병행하는 경우 ⇒ 『1. 육아』 해당

2 가사: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가정에서 가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가사를 돌볼 책임이 있었다고 한 사람의 경우 여기에 해당

☞ 육체적인 노동(조리, 세탁, 청소 등)이 필수적인 것은 아님

☞ 주로 가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가사로, 그 외 나머지 사람은 실제 활동상태에 따라 연로, 쉬었음, 기타 등으로 분류

※ 단순히 가사활동을 보조적으로 조금 도운 경우는 가사로 볼 수 없음

3~5. 통학

■ 정규교육기관(온라인 등교 등), 입시학원, 고시학원 등에 통학하는 경우

■ 3. 정규교육기관 통학(온라인 등교 등) : 조사대상기간에 공사립학교 등에 다님,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등교한 것 포함

※ 졸업일자가 조사대상기간에 포함된 통학자의 처리

☞ 상급학교 진학이 분명한 경우 ⇒ 활동상태는 『3.정규교육기관 통학』

☞ 진학이 불분명한 경우 ⇒ 대상기간의 활동상태를 파악하여 기입

■ 4. 입시학원 통학 :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입시학원을 다님

■ 5.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 다님(사업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에 통학하는 것은 제외)

6. 취업준비: 학교나 학원에 가지 않고, 혼자 집이나 도서실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

7. 진학준비: 혼자 집이나 도서실 등에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공부하는 경우

8. 연 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수입 있는 일, 구직활동 등 아무일 없이 시간을 보낸 사람

※ 주의 사항

☞ 50대의 경우 연로로 분류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으며, 실제 활동상태에 따라 가사, 쉬었음, 기타 등으로 분류

9. 심신장애: 정상적인 일을 하기가 어려운 장기적인 질환, 정신육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

☞ 여기서의 장애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히 나타나는 경미한 것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

☞ 조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복이 예상되는 일시적 병 또는 마비는 제외

예) 병원에 입원은 하지 않았으나 장기적인 심한 질병 때문에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

·자기 침대에서 전혀 떠날 수 없는 사람

·정신적 장애(학업도, 일도 할 수 없는 사람)

10. 쉬었음: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사람

예) ·직장을 그만 두었거나 정년퇴직 후 쉬고 있는 경우,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는 경우

·‘쉬었음’을 응답한 경우 그 이유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할 것(F6-1)

11. 기타: 상기 1~15까지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 여기에 해당

예) ·자원봉사 : 임금이나 월급없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

·구호사업 : 임금이나 월급없이 빈민, 재해자를 돋는 사람

F7) 전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그 일을 그만둔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1.

--	--

 년

--	--

 개월

2. 없었음 → (F12번으로)

전직유무 및
그만둔 시기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해서 취업경험 유무 및 그만둔 시기를 조사

■ 전에 다니던 직장(일)이 있던 사람

☞ 가장 마지막으로 다니던 직장(일)을 그만 둔 시기를 확인

F8) 이전 직장(일)을 그만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1.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또는 장애상태의 악화)
2.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건강문제)
3. 기타 개인·가족 관련 사유(결혼, 임신, 육아, 가사, 학업, 가족 병고 등)
4. 일자리에서 정년에 도달하여 공식적으로 퇴사함(정년퇴직)
5. 연로해서 그만둠
6. 일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움
7. 임금이 낮아서
8. 임금 이외 근로조건(복리후생, 근로시간, 승진, 장래전망)의 문제
9. 더 좋은 일자리로 이직(창업)하기 위해 | 10. 근무환경(장애인편의시설, 작업장환경)의 문제
11. 직장의 휴업, 폐업
12. 명예·조기퇴직, 정리해고
13.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계약기간 종료)
14.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
15. 자속적인 근무의 어려움(휴식 필요)
16. 장애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17. 기타(적을 것 :) |
|--|--|

그만둔 사유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아직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前 직장을 그만둔 이유를 묻는 항목

■ 응답항목 1~9번은 자발적 성격이 강하며, 10~16번은 비자발적 성격이 강함

■ 『E3. 그만둔 사유』 참조

[2020년 이후 퇴사자만 응답]

F8-1) 위에서 말씀하신 퇴사 사유가 코로나 지속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까?

1.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음(전혀 관련 없음)
2. 일정 정도 영향을 받음
3. 많은 영향을 받음

코로나19의 영향력

코로나19가 장애인비경활의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

<p>F9) 이전에 어디에서 일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9-1-1) 사업체(직장)명 : _____ □□ ◆ F9-1-2) 사업체(직장)가 주로 하는 일 : _____ ◆ F9-2) 다니던 직장(사업체)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1.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과 같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2. 공공근로 복지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과 같은 정부자정지원 일자리 3. 공무원, 교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일자리 4. 그 외 일반사업체 ◆ F9-3) 다니던 직장(사업체)의 종사자수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1. 1~4인 2. 5~9인 3. 10~29인 4. 30~49인 5. 50~99인 6. 100~299인 7. 300~499인 8. 500~999인 9. 1,000인 이상 	<p>F10) 이전 직장(사업체)에서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10-1-1) 내가 한 일 : _____ ◆ F10-1-2) 직명(직위) : _____ □□□
---	---

과거 일자리 특성	과거 일자리 특성 및 직종
<p>■ D9, D10 참조</p>	

<p>F11) 이전 직장(일)에서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근로자 1. 상용근로자 2. 임시근로자 3. 일용근로자 ◆ 비임금근로자 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6. 무급가족종사자 	
---	--

과거 종사상 지위	◇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구분
<p>■ 「D.12 종사상 지위」 참조</p>	

<p>F12) 향후 1년 이내 일자리(직장)를 가질 의향이 있습니까?</p> <p>1. 예 → (F14번으로) 2. 아니오</p>	<p>F13) 향후 1년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일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p> <p>1. 예 2. 아니오 → (F18번으로)</p>
---	---

향후 일자리 희망여부	향후 1년 이내 또는 향후 1년은 아니더라도 직장(일)이 주어진다면 일을 할 의향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항목

F14) 희망하는 직장(일)의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1. 임금근로(상용, 임시, 일용근로자) → (F15번으로)
2. 비임금근로(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F14-1) 비임금근로를 희망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가족 사업에 참여하거나 물려 받아서
2. 더 많은 소득이 가능해서
3. 임금근로자 취업을 원했으나 취업하기가 어려워서
4. 유연한 근로시간
5. 재택근무가 가능해서
6.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
7. 내 장애 상황에 부합해서
8. 기타(직을 것:) → (F15번 응답 후 F18번으로)

희망고용형태

비경제활동인구가 원하는 고용형태가 임금근로인지 비임금근로인지 구분하기 위한 항목

■ 「D.12 종사상 지위」의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 구분 기준 참조

☞ 비임금근로 희망 : 그 사유를 파악

F15) 희망하는 일자리(직장)의 사업 및 업무내용은 무엇입니까?

◆ F15-1) 희망 일자리(직장) 사업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
10. 정보통신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부동산업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 교육 서비스업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 활동
21. 국제 및 외국기관

◆ F15-2) 희망 일자리(직장) 업무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 (비임금근로 희망자는 F18번으로)

희망 일자리

비경제활동인구가 원하는 직장(일)의 사업 및 업무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

☞ 산업대분류 두자리까지 입력

☞ 직업대분류 한자리까지 입력

F16) 희망하는 직장(사업체)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1. 보호직업장, 근로사업장 등과 같은 장애인 작업자활시설 일자리
2. 공공근로, 복지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과 같은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3. 공무원, 교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일자리
4. 그 외 일반사업체

희망 일자리 종류

실업자의 향후 희망하는 일자리의 종류를 묻는 항목

■ 「D9-2. 사업체 종류」 참조

F17) 희망하는 근무시간 형태는 무엇입니까?

1. 전일제 근로
2. 시간제 근로

희망 근무시간 형태

실업자의 향후 희망하는 근무시간의 형태를 묻는 항목

■ 「D19. 근로시간 형태」 참조

F18) 귀하는 일자리 희망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수준의 근로가 가능합니까?

1. 일반적인 근로가 가능
2. 단시간 또는 단순한 근로가 가능
3. 집안 일 정도만 가능
4. 집안 일도 하기 어려움

☞ (G1번으로)

근로 능력

본인 판단에 따른 근로 능력을 파악함

■ 본인의 취업의사, 취업방해 요인 또는 근로지원 환경 등과는 상관없이 순전히 본인의 근로능력을 확인

■ 1. 일반적인 근로가 가능

- ☞ 일자리에서 통상적인 수준의 일을 종일(하루8시간) 할 수 있는 상황
 ☞ 일반경쟁고용과 거의 동일한 수준

■ 2. 단시간 또는 단순한 근로가 가능

- ☞ 간단한 돈벌이가 가능한 수준

F19) 귀하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입니까? 가장 최근 확진 시기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1. 있음 → 년 월 (※ 2019년 12월 0전 응답 불가)
2. 없음 → (G1번으로)

[코로나 확진 경험이 있는 경우 응답]

F19-1) 귀하는 현재 코로나 증상이나 후유증으로부터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입니까?

1. 전혀 회복하지 못했음
2. 회복하지 못한 편임
3. 회복한 편임
4. 완전히 회복하였음

☞ (G1번으로)

코로나19 확진 이후 회복 정도	코로나19 확진 경험과 회복 정도를 묻기 위한 항목
	■ 코로나19 회복 정도는 코로나 확진 이후 증상이나 후유증으로 부터 건강이 회복된 정도를 묻습니다.

G. 고용서비스 욕구

G1) 취업을 하기 위해(또는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합니까? 원하는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1. 취업알선, 일자리 정보 제공, 장애인 특별채용 등 취업지원 → (G1-1번으로)
 2. 취업 후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근로지원, 근무환경 개선, 작업보조기기 지원 등) → (G1-2번으로)
 3. 직업능력개발훈련 → (G1-3번으로)
 4.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 작업장 근로
 5. 금전적 지원(임금보조, 세제 지원 등)
 6. 창업 지원(창업컨설팅, 창업정보 제공, 창업자금 융자 등)
 7. 차별금지, 인식개선 등 고용여건 조성
 8. 기타(적을 것 : _____)
 9. 특별히 없음
- (H1번으로)

고용서비스 욕구

조사대상자의 고용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는 문항

■ 1. 취업알선, 일자리 정보 제공, 장애인 특별채용 등 취업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방노동관서, 시군구 등 공공 및 민간기관을 통한 취업알선, 취업상담, 취업평가 포함

■ 2. 취업 후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근로지원, 근무환경 개선, 작업보조기기 지원 등)

: 취업자의 직장생활 유지를 위해 업무수행 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근로지원인을 제공하거나 장애인 편의시설, 작업보조기를 지원하고, 취업알선, 훈련 등을 실시한 기관에서 사후지도를 실시하는 것

■ 3. 직업능력개발훈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폴리텍대학 등 공공 및 민간기관을 통한 직업훈련프로그램 참가

■ 4.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 작업장 근로

: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자립작업장 등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위한 별도 작업장에서 근로

■ 5. 금전적 지원(임금보조, 세제 지원 등)

: 임금을 보조하거나 세제 지원(근로장려세제 등)

■ 6. 창업 지원(창업컨설팅, 창업정보 제공, 창업자금 융자 등)

: 창업을 위한 융자, 컨설팅 등 지원

■ 7. 차별금지, 인식개선 등 고용여건 조성

: 장애인 고용에 대한 차별금지,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실시

■ 8. 기타

: 상기 열거된 사항 이외에 다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함

■ 9. 특별히 없음

: 상기 열거된 사항 이외에 특별히 취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이 없는 경우

G1-1) “취업알선, 일자리 정보 제공, 장애인 특별채용 등 취업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합니까? 원하는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1. 취업알선(취업성공패키지 등 포함)
2. 진로지도, 직업능력평가 등 구직(직업) 상담
3. 일자리 정보 제공
4. 현장실습, 인턴, 연수 등
5. 장애인 구분모집/특별채용
6. 채용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
7. 대인관계 향상 및 직장 적응 프로그램 제공
8. 이어서 작성, 면접기술 등의 구직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9. 기타(적을 것 : _____)

G1-1-1) 만약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3개월 이내에 즉시 참여하겠습니까?

1. 예 2. 아니오

☞ (G1번 응답 결과에 따라 이동)

취업지원 서비스 욕구

구체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욕구 및 즉시 참여 가능성을 파악하는 문항

☞ “취업알선, 일자리 정보 제공, 장애인 특별 채용 등 취업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G의 1번) 경우

- G1-1: 구체적 지원이 어떤 것인지 파악
- G1-1-1: 취업지원 서비스 기회 제공 시 즉시 참여 가능성 파악

G1-2) “취업 후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합니까? 원하는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1. 수행업무에 대한 타인의 도움(근로 지원)
2. 직무적응을 위한 지원(작업지도원)
3. 근무환경(장애인 편의시설, 작업장 환경 등) 개선 지원
4. 작업보조기기 지원(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확대독서기, 특수키보드 등)
5. 근무시간 및 직무 조정
6. 직업생활 및 고충처리 상담 등
7. 출퇴근 지원
8. 기타(적을 것: _____)

☞ (G1번 응답 결과에 따라 이동)

**고용유지 지원
서비스 욕구**

고용유지 지원 서비스 욕구 및 즉시 참여 가능성을 파악하는 문항

☞ “취업 후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G1의 2번) 경우

- G1-2: 구체적 지원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자 함

G1-3) 만약 취업 연계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가 제공된다면 3개월 이내에 즉시 참여하겠습니까?

1. 예 2. 아니오

☞ (H1번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욕구**

직업능력개발훈련 즉시 참여 가능성 및 추가 지원 사항을 파악하는 문항

☞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G1의 3번) 경우

-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 제공 시 즉시 참여 가능성 파악(G1-3)

H. 가구 정보

H1) 귀댁의 가구주는 누구입니까?		H2) 귀댁의 총 가구원수는 몇 명입니까?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자녀의 배우자 5. 아버지 6. 어머니	7. 형제자매 8. 조부모 9. 손자녀 10. 배우자의 부모 11. 배우자의 형제자매 12. 기타(적을 것 :) 13. 사설에 거주함 → (H3번으로)	◆본인을 포함한 총 가구원수 ()명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가구원수(본인 포함) ()명

가구주	조사대상자와 가구주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항목
-----	--------------------------

- 12. 동거인은 기타에 해당됨
- 가구주의 정의
 - ☞ 한 가구 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상의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생계책임자
 - ☞ 생계책임자 : 단순히 가구원 중에서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
 - ☞ 호주나 세대주가 소득이 없어 단순히 타 가구원의 소득을 수령하여 지출하는 경우
 - 가구주로 처리하면 안됨
 - ☞ 가구원 중 소득이 없어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로부터 용돈을 지원받아 생활하는 경우
 -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를 가구주로 처리하면 안됨
 - (예. 노부부가 소득이 없어 결혼한 자녀가 보내주는 용돈으로 생활하는 경우 : 가구주는 부부 중에서 가계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며, 자녀가 가구주가 될 수 없음)

가구원 수	조사기준일 현재 조사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가구에 상주하는 0세 이상 모든 사람
-------	--

- 총가구원에 포함되는 자
 - ☞ 선박승무원, 항공기탑승원, 병원에 입원중인 자, 영외거주 직업군인, 공익근무요원, 친척방문출장 사업상 여행 등으로 출타중인 자, 비혈연 동거인, 가계조사 대상가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포함
- 총가구원에서 제외되는 자
 - ☞ 외국인(단,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조사), 현역군인(영외거주군인은 총가구원에 포함됨), 해외상주 취업(학)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
-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가구원수
 - ☞ '일시휴직'이나 '경영 적자'로 인해 현재 일시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취업 상태이면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가구원에 포함하여 기입
 - ☞ 응답자가 앞서 취업자이면(임금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원수에 포함
 - (※ 단, 무급가족종사자는 근로소득 발생 가구원수에 해당하지 않음)

H3) 귀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입니까?

1. 예 → (H3-1로)

2. 아니오 → (H4로)

H3-1) 받고 계신 급여 종류를 모두 말씀해 주세요.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여부

조사대상자가 속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인지를 파악하는 항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 1) **생계급여**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
- 2)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무료 혹은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 3) **주거급여** :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 지원,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 4) **교육급여** : 초·중고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고등학생), 교과서대(부교재비 포함)(고등학생), 부교재비(초,중학생) 및 학용품비(중,고등학생) 등 지원

**H4) 귀 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세금공제 이전 금액)은 얼마입니까?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월평균 만원

H4-1) 정확한 금액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요?

- | | |
|-----------------|-------------------|
| 1. 50만원 미만 | 7. 400~500만원 미만 |
| 2. 50~100만원 미만 | 8. 500~600만원 미만 |
| 3. 100~150만원 미만 | 9. 600~700만원 미만 |
| 4. 150~200만원 미만 | 10. 700~1000만원 미만 |
| 5. 200~300만원 미만 | 11. 1000만원 이상 |
| 6. 300~400만원 미만 | |

가구소득

조사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총 가구소득을 파악하는 문항

■ 가구소득= 가구원 전체 근로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 재산소득: 은행이자, 주식 배당금, 임대료나 월세 수입
- 공적이전소득: 장애인연금(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근로장려세제 등 정부나 공공 기관에서 받은 현금 지원
- 사적이전소득: 가구원이 아닌 가족, 친지, 이웃, 복지관 등에서 받은 현금 지원

- ☞ 응답자가 '장애인연금(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장애연금(수당)을 반드시 가구소득에 포함
- ☞ 응답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H3=1번)'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가구소득에 포함
(생계/주거/교육/장제/해산급여 등. 단, 의료급여는 현불이므로 제외)
- ☞ 응답자가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가구소득에 포함

※ 가구소득은 최대한 '캐어문기(probing)'하여 정확한 금액을 받고

정확한 금액을 모를 경우, H4-1에서 선택지에서 해당하는 범위를 선택할 것

가구소득 응답 자체를 거부할 경우, H4-1에 있는 <거절> 버튼 입력

참고 장애인연금/장애인(아동)수당

1. 장애인 연금

- 대상자: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매월 20일 지급)
-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된다.

(1) 기초급여 (만18~64세)

- ① 목적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입니다.**
 - 모든 장애인 연금 수급자 매월 최고 307,500원
- ② 대상 : 만 18~64세 (만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는 미지급)
- ③ 기타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20%를 감액한 **48만원(1인당 24만원)** 지급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최소화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이면 초과분 감액)

(2) 부가급여 (만18세 이상)

- ① 목적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입니다.**
- ② 대상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차상위 초과자

구 분	18~64세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생활수급자(재가)	30.75만 원	8만 원	38.75만 원	기초연금 으로 전환	38.75만 원*	38.75만 원
차상위	30.75만 원	7만 원	37.75만 원		7만 원	7만 원
차상위 초과	30.75만 원	2만 원	32.75만 원		4만 원	4만 원

2.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제외)

구분	대상자	급여액
장애인수당	기초 및 차상위 장애인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 4만원 1인당 월 2만원

3. 장애아동수당: 만18세미만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구분	대상자	급여액
장애인아동수당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증 경증 1인당 월 22만원 1인당 월 11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경증 1인당 월 17만원 1인당 월 11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중증 경증 1인당 월 9만원 1인당 월 3만원

3. 조사관련 용어개념 및 정의

■ 가구주

가족관계증명서이나 주민등록상의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생계책임자를 말함

■ 가사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가정에서 가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가사를 돌볼 책임이 있었다고 한 사람의 경우 해당됨

■ 경제활동(Economic activity)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수입이 있는 일을 행함을 뜻함

☞ 수입이 있더라도 다음의 활동은 경제활동으로 보지 않음

- ① 법률에 위배되는 비생산적인 활동(예 : 도박, 매춘 등)
- ② 법률에 의한 강제노역 및 봉사활동
- ③ 경마, 경륜, 증권, 선물 등 투자활동

■ 경제활동인구(Economic active population)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함

■ 경제활동참가율(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cdot \text{경제활동참가율}(\%) = \frac{\text{경제활동인구}}{\text{15세이상인구}} \times 100$$

■ 15세 이상 인구(Population 15 years & over)

조사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자

■ 고용률(Employment-population ratio)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cdot \text{고용률}(\%) = \frac{\text{취업자}}{\text{15세이상인구}} \times 100$$

■ 고용주(Employer)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임금을 주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 가 해당

☞ 직위가 ‘사장’이라 하더라도 개인기업이면 고용주 또는 자영자이나 법인사업체의 대표인 경우는 임금근로자로 분류함

■ 교육정도

학력, 계열, 수학여부로 구분되며, 학력은 정규교육을 이수하였거나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재학 또는 휴학중인 사람이 해당됨. 계열은 학력이 고등학교 이상인 경우에만 표시하며 수학여부는 졸업, 재학, 중퇴 등의 해당여부를 알기 위한 것임

■ 구직경로

한 사람이 구직활동을 한 경로를 의미함

■ 구직기간

실질적으로 실업상태에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기간을 말함. 따라서 어떤 직업에 종사하면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구직단념자(Discouraged workers)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아래의 사유(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 4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

- ① 적당한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전공경력임금수준근로조건, 주변)
- ② 지난 4주간 이전에 구직하여 보았지만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
- ③ 자격이 부족하여(교육기술 경험 부족,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 ☞ 향후 노동시장에 유입될 가능성 있는 잠재인력이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EDI 구직단념자 :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별도 정의함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아래의 사유(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 4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 ① 통계청 기준 노동시장적 사유
- ②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주가 채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 ③ 구직(취업창업) 정보나 방법을 몰라서
- ④ 자영업을 하려고 하지만 창업할 능력, 상황이 안돼서

■ 구직활동(job-searching)

조사대상기간에 일자리를 찾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의미함. 단순히 구직광고를 보는 등의 소극적인 활동이 아니라, 전화, 방문, 구인광고 응모, 원서접수 등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는 경우를 구직활동으로 보며,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

■ 구호사업

임금이나 급료를 받지 않고 빈민, 재해자를 돋는 일을 말함

■ 농가

가구주의 생업(또는 주된 일)이 농업인 가구를 말하며 산업분류A(01, 02)에 해당되면 농가에 해당됨

- ☞ 가구주가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비농가 처리함

■ 만 15세 이상 인구

조사대상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자 중 제외자(현역군인, 재소자 등)를 제외한 인구를 노동가능인구로 봄

■ 무급가족종사자(Unpaid family workers)

동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

- ☞ 비혈연가구원의 일을 돋거나, 가구를 달리하는 가족일을 돋는 것은 해당되지 않음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시간에 따라 취업자 여부 판단

- 18시간이상 : 취업자
- 18시간미만 : 실제 활동상태에 따라 구분

■ 미혼

혼인한 경험이 없는 사람을 말함. 사실혼 관계는 기혼으로 판단함

■ 비경제활동인구(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은 주된 활동상태에 따라 가사, 육아, 취업준비, 통학, 연로 등으로 구분됨

■ 비구직이유

취업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사대상기간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 그 사유가 구직단념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것임

■ 비임금근로자(Unpaid workers)

자기가 직접 사업체를 경영하는 개인기업의 경영주나 또는 자기 혼자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동일가구 내 자기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무보수로 18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사람이 속함(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 비자발적실업(involuntary unemployment)

일할 능력도 있고 현재의 근로조건에서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함

■ 사별

혼인을 한 사람으로서 배우자의 한쪽이 사망하여 현재 독신으로 있는 경우를 말함. 사망신고 여부를 불문하고 해방전 또는 한국동란 당시 배우자가 납치, 실종된 사람은 사망으로 간주함

■ 사업부진

본인의 사업체 및 직장이 경기부진, 주문감소 등으로 일을 적게 한 경우나 기계고장, 공장의 수리 및 개축 등으로 인한 회사 사정으로 조업이 중단되어 일을 적게 한 경우를 말함

■ 사업체 방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건설현장, 공장, 점포 또는 기타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취직자리를 부탁하거나 알아본 경우를 말함

■ 사업체명

조사대상자가 조사대상기간에 취업했던 산업 또는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전직산업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 자영자 또는 고용주는 점포명이나 사업체명을 기입하며 점포명이나 사업체명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사업’ 또는 ‘가족사업’이라고 기입함. 지사 등에 근무하는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직장의 본사명이 아닌 자신이 속한 사업장의 사업체명을 기입함

■ 사업체의 종사자 규모

임금근로자는 자기가 다니는(던) 직장의 모든 종사자수를 파악하고, 고용주는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 사업체내의 전 종사자수를 자영자는 무급가족종사자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종사자수를 말함. 파견용역근로자의 경우 실제 함께 파견용역 나온 직원수를 종사자수로 파악함

예) 우리환경이라는 청소용역업체 직원 10명이 시청에 용역을 나간 경우, 시청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우리환경 소속직원 10명이 종사자수임

■ 사업체의 주된 활동

사업체내에서 조사대상자의 활동이 아니라 소속된 사업체가 무엇을 하는 곳인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업체의 주된 산업활동을 말함

■ 산업(Industry)

취업자 또는 전직자가 속한 사업체의 주된 경제활동 내용을 말함

산업분류는 2017년 개정된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름

■ 상용근로자(Permanent employes)

- 고용계약 설정자는 고용계약 설정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고용계약 미설자 중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임

■ 생계책임자

단순히 가구원 중에서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함

■ 생년월일

생년월일에는 양력, 음력이 있고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생년월일이 각각 다른 경우가 있으나, 본조사에서는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입함

■ 생업

원칙적으로 수입을 기준으로 하며 수입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의 투입량, 설비 등의 순으로 결정함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Time-related underemployment)

조사대상기간에 실제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사람 중에서 추가취업을 원하고, 추가 취업가능성이 있는 사람

■ 신규실업자

과거에 취업한 경험이 없었던 실업자

■ 실업자(Unemployed person)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함

☞ 구직활동 여부 파악 시 대상기간을 4주간으로 적용

■ 실업률(Unemployment rate)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cdot \text{실업률}(\%) = \frac{\text{실업자}}{\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 심신장애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어떠한 종류의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 해당됨. 정상적인 일을 하기가 어려운 장기적 질환도 포함됨

■ 연로

조사대상기간에 나이가 너무 많아서 수입있는 일, 구직활동, 가사도 하지 않고 경제활동도 없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해당됨

■ 유배우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사실혼 관계 및 배우자가 2명 이상인 경우도 해당함

■ 유연근무제

근로자와 사업자가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선택조정하여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육아

조사대상기간에 주로 미취학자녀(초등학교 입학 전)를 돌보기 위하여 집에 있는 경우가 해당되며, 미취학자녀 양육과 가사 일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육아로 분류함

■ 이혼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현재 독신으로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재결합이 예상되지 않는 별거도 이혼으로 간주함

■ 일시휴직(Temporary absence from work)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기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전혀 일하지 못한 경우

일시휴직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복귀 가능하여야 함

☞ 무급휴직이라 하더라도 복귀확실하면 취업자

무급이면서 복귀가 불투명한 장기(6개월 이상) 휴직인 경우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판단

■ 일용근로자

임금근로자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임

☞ 일일단위로 고용되어 근로대가를 일급으로 받는 경우(가사도우미 등)

사업체에서 제공한 원료 및 반제품을 받아다가 가정에서 하청작업하는 형태

※ 원료 자체를 직접 구입하여 가정에서 작업하면 자영자로 분류

■ 일의 종류

조사대상의 직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직명, 직위와는 다르며, 직무(job) 또는 직업(occupation)을 의미함

■ 일하였음

임금이나 이윤을 목적으로 일한 사람과 가족(동일 가구내에 거주하는 혈연, 혼인 또는 양자에 의한 혈연관계)이 경영하는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한 경우도 포함됨

■ 임금근로자(Wages & Salary workers)

개인, 가구 또는 사업체와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급여, 봉급, 일당, 현물 등을 받는 근로자(상용, 임시, 일용근로자)

■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 설정자는 고용계약 설정기간이 1개월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고용계약 미설정자 중 일정한 사업(완료 1년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

■ 자기사업장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자기 영업소를 유지하고 있거나, 상당한 가치를 가진 기계장비를 가진 경우에 자기 사업장으로 보며, 소득이 없더라도 개별활동을 하는 경우(작가, 화가, 배우 등)가 해당됨

■ 자발적 실업(voluntary unemployment)

- 일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의 근로조건에서 일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를 말함
- ☞ 직업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것
 -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으면서 당분간 실업상태에 있는 것

■ 자영업 준비

실업자의 구직경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점포 또는 사업장을 물색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자재구입, 사업장 준비 등을 위한 각종 준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막연한 사업构상, 자금준비 등은 구직활동 아님

■ 자영업자(Self-employed worker)

고용주 및 단독 자영업자를 합한 개념임

■ 자원봉사

임금이나 급료없이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함.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되나 실비이상의 일당을 받으면서 명목만 자원봉사인 경우는 취업자로 판단

■ 적극적 구직활동

단순히 구직광고를 보는 등의 소극적인 활동이 아니라, 전화, 방문, 구인광고 응모, 원서접수 등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는 경우를 구직활동으로 보면,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

■ 전직자

전직실업자, 전직비경제활동인구를 말하며, 전직실업자는 과거에 취업한 경험이 있었던 실업자이고 전직비경제활동인구는 현재 비경제활동인구이나 과거에 취업경험이 있었던 자임

■ 종사상의 지위(Employment Status)

고용주, 단독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등과 같이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내지 지위상태를 말함

■ 주업

주된 직업(일), 본업을 의미하며, 매일 일하는 장소와 고용주가 바뀌는 경우는 모든 일을 포함하여 주된 일 한가지만 하는 것으로 봄. 또한 사업체를 2개 이상 경영하는 등 비임금근로 일만으로 2가지이상 하는 경우도 주업만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주업과 부업의 판단

조사대상 주간의 취업시간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일한 것을 주업으로 판단

·주업(Main job, 主業) : 주된 직업(일), 본업

 ☞ 매일 일하는 장소와 고용주가 바뀌는 경우는 모든 일을 포함하여 주된 일 한 가지만 하는 것으로 봄

·부업(Secondary jobs, 副業) : 본업 외에 따로 가지는 직업(일)

 ☞ 두 가지 이상의 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

■ 직업(Occupation)

취업자 또는 전직자가 종사한 일의 기능별 종류를 말함

직업분류는 2017년 개정된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를 따름

■ 직업소개소 등록

구직경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공공 또는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에 등록하고 직업알선을 의뢰한 경우를 말함

■ 총가구원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기준일 현재 조사대상가구에 상주하는 0세이상 모든 사람을 말함. 혈연관계가 없는 동거인이라도 생활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가구원에 포함함

■ 추가취업희망자

현재의 일에 새로운 일을 추가적으로 더 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말함

■ 취업률

취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cdot \text{취업률}(\%) = \frac{\text{취업자}}{\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 취업시간

조사대상기간 중 실제 일한 시간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 여기서 실제 일한 시간이란 자기 직분을 다하기 위하여 보낸 시간으로 점심시간이나 사적인 용무로 일에서 떠난 시간 등은 제외함

■ 취업자(Employed person)

조사대상기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를 말함

- 18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 :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 ☞ 일시휴직자도 취업자에 포함

■ 취직시험

조사대상기간에 취직시험에 응시한 경우 또는 원서를 접수하거나 원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한 경우임

■ 친구·친지 소개

조사대상기간에 친구 또는 친지에게 취업알선을 의뢰한 경우를 말하며 본인은 물론 본인을 대신하여 부모 형제가 부탁한 경우를 말함

■ 통학

조사대상기간에 공사립학교, 학원 및 직업훈련학원(사업체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제외)에서 주로 교육받고 있는 사람이 해당됨. 중고등학생이 방학 중에 있거나 일시적인 병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함

■ 폐업, 해고

사업이 끝났거나 직장이 문을 닫아서 자동적으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와 사업체의 사정 또는 개인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해고당한 경우가 해당됨

■ 학교, 학원추천

재학 중인 혹은 졸업한 학교, 취직(업)을 위해 다니던 학원에 추천을 의뢰하거나 이력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함

■ 혼인상태

연령과 관련이 높으므로 연령과 비교하여 확인하도록 하며, 호주 또는 주민등록과는 관계없는 사실상의 현재 배우관계를 말함.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등이 있음

■ 18시간미만 취업자 중 추가취업희망자

18시간미만 취업자 중 경제적 이유(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로 18시간미만 일하였으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자

IV

TAPI 사용방법

1. TAPI용 태블릿PC 구성 및 이용방법

1) TAPI 시스템 구성

- 태블릿PC는 반드시 함께 지급된 태블릿PC용 가방에 넣어 지참해야 한다. 태블릿PC 전용 가방은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외관을 이유로 혹은 크기나 부피를 이유로 자급된 가방이 아닌 자신의 핸드백이나 배낭, 쇼핑백 등에 넣고 다녀서는 안 된다. 반드시 지정된 가방을 이용하도록 한다.
- 조사를 마치고 반납할 때에는 최초에 함께 제공되었던 태블릿PC, 전원 케이블을 태블릿PC 전용 가방에 넣어 반납해야 한다.
- 태블릿PC와 전원케이블, 태블릿PC 가방에는 관리용 번호가 기입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2) 전원 케이블 연결하기

- 충전 필요 시 전원 케이블은 각 태블릿PC에 위치한 전원 케이블 연결부에 연결해서 쓰면 된다.

3) 배터리 충전방법

- 면접이 시작되기 전에 면접원은 태블릿PC를 꺼내고 면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 태블릿PC 사용 시 배터리의 잔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배터리 충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100% 충전 후 태블릿PC를 사용해야 한다.
 - 태블릿PC 본체에 전원 케이블을 연결해두면 배터리가 자동충전 된다.
 - 1개당 충전시간은 2-3시간 정도 걸린다.

4) 태블릿PC 사용 중 배터리 남은 시간 확인하기

- 전원선이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배터리의 남은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태블릿PC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배터리 이미지를 확인하면 된다. 항상 배터리 남은 시간을 확인하고 남은 시간이 5분 이내로 나타날 때에는 배터리를 교체 또는 충전한다.
-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PC를 종료시켜 놓는다.

5) 태블릿PC 전원 켜고 끄기

- 태블릿PC을 켜려면 좌측 또는 우측 상단에 있는 “시작/종료”버튼을 약 2초간 꾹 누른다.
- 태블릿PC을 끄려면 좌측 또는 우측 상단에 있는 “시작/종료”버튼을 누른 후, ‘시스템 종료’ 화면이 뜨면 가운데 “끄기”를 누르면 된다.

6) 인터넷 연결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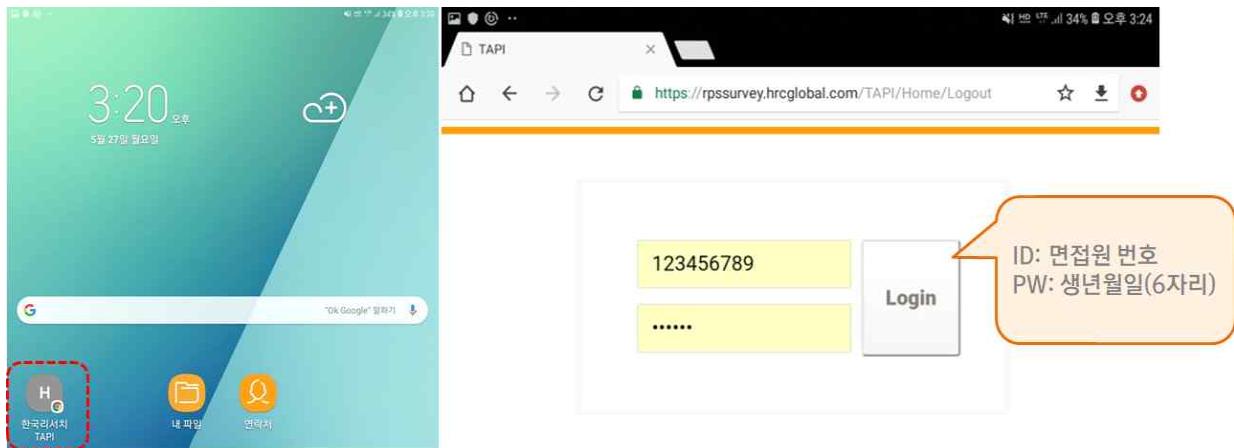
- 한국리서치에서 배부된 태블릿 PC는 LTE DATA 지원이 되기 때문에 Wifi 환경에서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 Wi-fi 버튼이 눌리지지 않도록 항상 체크하고, 자료를 전송한다.
- 한국리서치 TAPI는 크롬 브라우저, 세로방향에서 최적화되기 때문에 항상 세로방향에서 태블릿 PC 이용하여 조사를 진행 할 것 (단, 필요시 가로로 회전하여 사용 가능)
- 크롬 브라우저 외 브라우저에서 인터뷰어 및 설문 프로그램 접속은 지양하도록 한다.



2. TAPI 조사의 진행

1) TAPI Interviewer 로그인 하기

- 태블릿PC 바탕화면에 “한국리서치 TAPI”에 로그인한다.
- 로그인 화면이 뜨면 사용자 설문번호, 면접원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한다.
- TAPI Interviewer에서 2022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클릭하여 접속한다.



- TAPI Interviewer에 로그인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뜬다.
- <배부표>에는 배부 받은 대상자 정보와 사전전화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 배부 받은 대상자 중 <발달장애 대상>의 대상 여부와, <방문약속>의 전화조사 희망자를 반드시 확인한다.
- ‘긴급 방문’ 대상자인 경우 노란색으로 색상이 변경되고, ‘주소 수정’ 시 하늘색으로 색상 변경된다.
- <진행 중>에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응답자 정보가 뜨고, <완료>에는 조사가 완료된 응답자 정보가 뜬다.
- 화면 상단에서 배부, 진행 및 완료 응답자 수를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													진행상황	
진행 상태	PID	원표본 구분	응답자	진행하기	장애인형	장애인급	성별	연령	선택전화번호	전택 전화번호 관계	핸드폰 번호	집전화번호	시설전화번호	배부 45 대면 0% 완료 0%
진행 중	10	원	원오길	입력	06.지적장애	2급	남	50	044-555-6666	보호자	010-0000-0000	031-000-0000		
				입력	06.지적장애	2급	남	49	010-0000-0002	누나	010-0000-0001	031-000-0001		
				입력	06.지적장애	2급	남	17	063-258-0000	본인	010-0000-0002	031-000-0002		
				입력	06.지적장애	2급	남	18	010-0000-0004	할머니	010-0000-0003	031-000-0003	042-538-1177	
진행 중	13	대체	윤일팔	입력	07.자폐성장애	2급	남	19	010-0000-0005	이웃	010-0000-0004			
				입력	07.자폐성장애	2급	남	18	010-0000-0006	본인	010-0000-0005			
				입력	07.자폐성장애	2급	남	49	010-0000-0007	본인	010-0000-0006			
				입력	07.자폐성장애	2급	남	48	010-0000-0008	본인	010-0000-0007		051-864-232C	
진행 중	23	대체	이사팔	입력	01.지체장애	5급	여	15	032-1111-5555	시설관계자	010-0000-0008			
				입력	04.청각장애	5급	남	86			010-0000-0009			
				입력	01.지체장애	3급	여	32			010-0000-0010		051-864-238E	
				입력	01.지체장애	5급	남	78	010-1234-5678	시설관계자	010-0000-0011			
진행 중	33	대체	박칠팔	입력										

2) TAPI Interviewer 기본정보 확인하기

- 조사자를 진행하려는 리스트의 <입력>을 클릭하면 기본 정보 입력창이 뜬다.
- 장애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는 조사 시작 전 동사무소에서 DB 구축이 완료된 지역은 세부주소와 전화번호 정보까지 입력이 되어 있으니 확인하고 변경된 사항은 변경정보에 입력한다.
- 주소 확인, 컨택 연락처 확인을 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다.
- 새 주소나 새 컨택연락처를 입력해야하는 경우 '틀림' 체크 후 정확히 입력한다.

진행 상태	PID	원표본 구분	응답자	진행하기	장애인유형
	9039982	대체	김한례		06.지적장애

→ [조사 협조] [비성공 사유] [닫기]

PID	11
응답자 성명	박사구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2 ① 주소 확인 1. 주소 맞음 2. 주소 틀림
주소검색	주소검색 ◀ 주소검색버튼을 클릭하세요. 도로명주소 (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70
세부주소 (동, 호수 등)	분세주소 예) 105동 123호
핸드폰 번호	010-0000-0001
집 전화 번호	031-0000-0001
컨택 연락처	010-0000-0002
시설 전화번호	
② 컨택 연락처 확인 1. 컨택연락처 맞음 2. 컨택연락처 틀림	
컨택 연락처	
컨택 연락처 관계	1. 본인 2. 보호자 3. 시설관계자

- ① 주소 확인 : 리스트 상의 주소 맞는지 확인 후에 틀린 경우 '틀림'에 체크 후 새로 기입
- ② 컨택 연락처 확인 : 리스트 상의 컨택연락처 확인 후에 틀린 경우 '틀림'에 체크 후 새로 기입

* 추후 한국리서치 본사로부터 조사원이 실제로 조사를 진행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귀하에게 전화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컨택 연락처는 응답자와 통화가 가능한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계속하기] [닫기]

- 응답 대상 장애인의 대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장애인 대리여부에 “예”라고 체크되어 있는 경우 대리인의 기본 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둘 다 없을 경우 조사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응답받아야 하나, 개인정보 유출의 이유로 응답자가 강력 거절할 경우 000-0000으로 기입하고 넘어간다.

대리응답 여부	<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대리응답자 성명	
전화번호	컨택 연락처와 동일
대리 응답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1. 심한 장애로 의사소통 어려움 <input type="radio"/> 2. 건강 악화로 의사소통 어려움 <input type="radio"/> 3. 대인 기피로 의사소통 어려움 <input type="radio"/> 4. 기타 <input type="text"/>
응답자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1. 부모 <input type="radio"/> 2. 배우자 <input type="radio"/> 3. 자녀 <input type="radio"/> 4. 형제자매 <input type="radio"/> 5.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input type="radio"/> 6. 친인척 <input type="radio"/> 7. 손자녀 <input type="radio"/> 8. 시설관계자 <input type="radio"/> 9. 활동보조인 <input type="radio"/> 10. 요양보호사 <input type="radio"/> 11. 기타 <input type="text"/>

1. 대리응답 여부 체크

2. 대리응답인 경우,
대리응답자 성명,
연락처와 하기 항목 작성
(‘컨택연락처와 동일’
체크 시, 자동으로 앞선
컨택 연락처를 가져오게
됩니다.)

[설문시작]

[닫기]

3) 설문 비성공 사유 및 접촉 일지 작성

- <비성공 사유>을 클릭하면 비성공 사유를 입력하는 창이 뜨고, 사유를 체크하면 된다.
- 방문 횟수와 방문일자를 입력하면 그 정보가 누적된다.
- 접촉일지를 작성할 때는 해당 리스트를 접촉할 때마다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조사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집에 가서 입력할 때는 접촉한 당시의 방문 일자와 방문 시간으로 수정하여 기록한다.

진행 상태	PID	원표본 구분	응답자	진행하기	장애유형
<input type="button" value="▼"/>	9039982	대체	김한례	<input type="button" value="입력"/> ④	06.지적장애

→ 조사 협조 비성공 사유 닫기

PID 9039982	
이름 김한례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동리 100-1	
방문 횟수	방문 일자
1회	05 월 26 일
방문 시간 오전 11시~ 오후 12시 이	

No data to display

① ② ③

④ 비성공 사유

- 1. 조사협조
- 2. 단순거절
- 3. 고소, 고발 등 협박수준으로 거절
- 4. 외출로 인한 부재
- 5. 조사기간 내 해외에 있음(유학, 해외출장, 이민)
- 6. 살거주지 다름, 변경 주소 알려줌(영등, 시설 포함)
- 7. 살거주지 다름, 변경 주소 알리지 않음(영등, 시설 포함)
- 8. 주택불가(전화번호, 주소 모두 틀림)
- 9. 접근차차가 불가능한 시설(교도소, 중환자실)
- 10. 사람 및 실물
- 11. 장애통증자가 아닌
- 12. 의사소통가능 구수증 및 후변인 걸음·작작장애)
- 13. (시설입소자)통급장·통식 대화용답 불가

⑤ 세부 사유 : 세부 사유에 대해 세부사유를 한번 더 입력하고 저장

⑥ 이관 : 다른 지역 거주가 확인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관할 경우 선택

⑦ 대체요청 :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조사 진행이 불가능 할 때 대체를 하기 위해 선택

⑧ 저장 후 종료

- ① 방문횟수 : 응답자를 방문하여 조사를 시도한 횟수를 기재
- ② 방문일자 : 조사를 위해 응답자를 방문했던 날짜를 달력에서 선택
- ③ 방문시간 : 방문했던 시간 대를 선택
- ④ 비성공 사유 : 조사를 성공하지 못한 사유를 선택하여 입력 후 저장
- ⑤ 세부 사유 : 비성공 사유에 대해 세부사유를 한번 더 입력하고 저장
- ⑥ 이관 : 다른 지역 거주가 확인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관할 경우 선택
- ⑦ 대체요청 :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조사 진행이 불가능 할 때 대체를 하기 위해 선택
- ⑧ 저장 후 종료 : 비성공 사유를 저장 후 종료

■ 대체

-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조사 진행이 불가능 할 때에는 <대체 요청>을 클릭한다.
- 대체 요청을 선택할 경우에는 세부 사유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 단, ‘단순거절, ‘3회 이하의 외출로 인한 부재 ‘살거주지 다름, 연락처 및 사주소 기르침’의 경우 대체 요청이 불가능하다.

① 대체요청 저장 후 종료

PID 903998	
이름 김한례	
주소 경기도	
방문 횟수	방문 일자
1회	05 월 26 일
방문 시간 오전 11시~ 오후 12시 이	

'고소, 고발 등 협박수준으로 거절'과 일치합니까?

② 확인 취소

① 대체요청 :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조사 진행이 불가능 할 때 대체를 하기 위해 선택
 ② 대체확인 : 대체요청이 가능한 사유인지, 대체요청 사유에 대한 세부사유를 작성하였는지를 확인 하는 확인 창임

 <주의사항>
 2. 단순거절
 4. 3회 이하의 외출로 인한 부재
 6. 살거주지 다름, 변경 주소 알려줌(영원, 시설 포함)

 위 경우는 대체 요청 불가능하며, 나머지 사유는 대체 요청 후 승인과정을 거침.

■ 이관

- 리스트에 있는 주소와 실제 살고 있는 곳이 다를 경우, 응답자가 현재 거주하는 주소 및 연락처를 가르쳐 준 경우에 <이관>을 클릭하면 된다.
- 이관을 클릭하면 실 거주지의 주소를 입력할 수 있도록 주소 검색창이 뜬다.
- 새 주소와 연락처를 기입한 후 <이관요청>을 클릭하면 수퍼바이저가 담당 면접원에게 자배부하게 된다.

※ 세부주소를 입력하셔야 이관이 가능합니다
응답자가 세부주소 거절 시, 「7. 실거주지 다름, 변경 주소 거절(병원, 시설 포함)」선택 후 대체요청
세부주소를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하면 세부주소에 방문시 연락'이라고 입력

① 이관 : 다른 지역 거주가 확인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관할 경우 선택
② 이관요청 : 이관은 선택하면 이관요청 창이 뜨며 새롭게 이관 될 주소와 연락처를 기록하게 됨. 기록 후 이관요청을 클릭하고 저장 후 종료를 클릭

*세부주소를 입력하지 않으면 이관이 불가능함
*세부주소를 응답자가 알려주길 거부하면, 「7. 실거주지 다름, 변경주소 거절(병원, 시설 포함)」을 선택하고 대체요청을 해야 함
*응답자가 실거주지를 만나기 전에 알려주겠다고 하면, 세부주소에 "방문할 때 알려줌"으로 입력

4) TAPI 설문 시작하기

- 기본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설문시작>을 누르면 기본정보는 자동으로 저장이 된다.
- 설문이 시작되면 2022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첫 화면이 뜨고 <(다음으로)>버튼이나 <엔터 키>를 누르면 첫 문항으로 이동한다.

대리응답 여부	<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1. 대리응답 여부 체크
대리응답자 성명		2. 대리응답인 경우, 대리응답자 성명, 연락처와 하기 항목 작성 ('컨택연락처와 동일' 체크 시, 자동으로 앞선 컨택 연락처를 가져오게 됩니다.)
전화번호	컨택 연락처와 동일	
대리 응답 이유	<input type="radio"/> 1. 심한 장애로 의사소통 어려움 <input type="radio"/> 2. 건강 악화로 의사소통 어려움 <input type="radio"/> 3. 대인 기피로 의사소통 어려움 <input type="radio"/> 4. 기타	
응답자와의 관계	<input type="radio"/> 1. 부모 <input type="radio"/> 2. 배우자 <input type="radio"/> 3. 자녀 <input type="radio"/> 4. 형제자매 <input type="radio"/> 5.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input type="radio"/> 6. 친인척 <input type="radio"/> 7. 손자녀 <input type="radio"/> 8. 시설관계자 <input type="radio"/> 9. 활동보조인 <input type="radio"/> 10. 요양보호사 <input type="radio"/> 11. 기타	

설문시작 **닫기**

5) 조사 진행상황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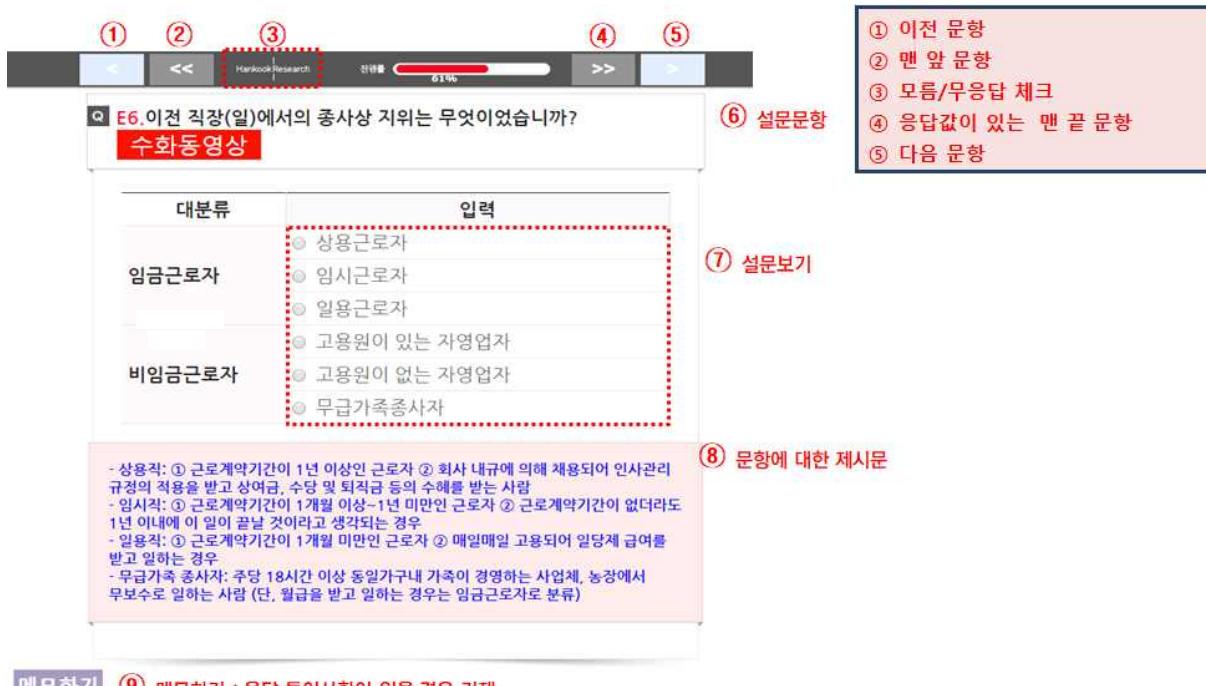
- TAPI Interviewer 화면의 <진행 상태> 열을 통해 응답자의 설문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													진행상황		
긴급 방문		리스트 주요 정보											배부 45 진행 6 완료 0		
주소 수정		(노란색)긴급 방문 : 6월 이내 방문 조사 (하늘색)주소 수정 : 조사대상자가 연구부로 주소 수정 요청한 경우											대면 0% 전화 0% 완료 0%		
진행 상태	PID	원표본 구분	응답자	진행하기	장애유형	장애등급	성별	연령	컨택전화번호	컨택 전화번호 관계	핸드폰번호	집전화번호	시설전화번호		
진행 중	10	원	원오십	입력	06.지적장애	2급	남	50	044-555-6666	보호자	010-0000-0000	031-000-0000			
	11	대체	박사구	입력	06.지적장애	2급	남	49	010-0000-0002	누나	010-0000-0001	031-000-0001			
진행 중	12	대체	최십칠	입력	06.지적장애	2급	남	17	063-258-0000	본인	010-0000-0002	031-000-0002			
	13	대체	윤일팔	입력	06.지적장애	2급	남	18	010-0000-0004	할머니	010-0000-0003	031-000-0003	042-538-1177		
	14	대체	김일구	입력	07.자폐성장애	2급	남	19	010-0000-0005	이웃	010-0000-0004				
	15	대체	박원팔	입력	07.자폐성장애	2급	남	18	010-0000-0006	본인	010-0000-0005				
	16	대체	조사구	입력	07.자폐성장애	2급	남	49	010-0000-0007	본인	010-0000-0006				
진행 중	17	대체	이사람	입력	07.자폐성장애	2급	남	48	010-0000-0008	본인	010-0000-0007	051-864-2320			
대체요청	18	조사 시작 버튼		입력	01.지체장애	5급	여	15	032-1111-5555	시설관계자	010-0000-0008				
	19	대체	이팔육	입력	04.청각장애	5급	남	86			010-0000-0009				
	20	대체	신삼이	입력	01.지체장애	3급	여	32			010-0000-0010	051-864-2388			
진행 중	21	대체	박칠팔	입력	01.지체장애	5급	남	78	010-1234-5678	시설관계자	010-0000-0011				

3. TAPI 설문프로그램의 기본기능

1) TAPI 설문프로그램 화면 구성

- 본 설문 진행 시 화면 구성과 기본 기능버튼은 다음과 같다.



- ① **이전문항** : 이전 문항으로 이동할 수 있다.
- ② **맨 앞 문항** : 맨 앞 문항으로 이동할 수 있다.
- ③ **모름/무응답** : 한국리서치 로고를 클릭하면 모름/무응답 처리가 가능하다.
- ④ **응답값이 있는 맨 끝 문항** : 맨 끝 문항으로 이동할 수 있다.
- ⑤ **다음 문항** : 다음 문항으로 이동할 수 있다.
- ⑥ **메모창** : 특이사항을 메모할 수 있다.
- ⑦ **설문보기** : 보기를 클릭하여 응답한다.
- ⑧ **지시문** : 문항과 관련된 지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 TAPI 설문프로그램 기본 기능

① 경고창

- 응답자가 논리적으로 비일관적인 응답을 하거나 면접원이 실수로 잘못된 값을 입력한 경우 경고창이 뜬다.
- 연관된 앞의 문항이 틀릴 경우 그 설문으로 돌아가서 수정해야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 수 있다.

② 확인창

-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가는 응답일 경우 다시 한 번 응답자에게 확인을 하고 설문을 진행한다.
- 만약 입력을 잘못 했거나 응답을 잘못 한 경우 다시 수정하고, 응답 내용이 맞으면, 확인창에 내용이 맞다고 체크하고 그 이유에 대해 적는다.
- 내용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넘어가지 않는다.

경고창 예시

A4. 정미영 님께서 마지막으로 다녔던 학교의 졸업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 현재 연령: 만 17 세

● 졸업 *goto q290
● 재학 *goto q310
● 중퇴 *goto q310
● 유학 *goto q310
● 수료 *goto q310
● 검정고시 자격 취득 *goto q310

rpssurvey.hrcglobal.com 내용:

응답하신 최종학교와 비교해 응답 불가능한 졸업여부를 응답하셨습니다. 최종학교와 졸업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수정해 주세요.

확인

확인창 예시

E6. 이전 직장(일)에서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수화동영상

대분류	입력
임금근로자	<input checked="" type="radio"/> 상용근로자 <input type="radio"/> 임시근로자 <input type="radio"/> 일용근로자
비임금근로자	<input type="radio"/>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input checked="" type="radio"/>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rpssurvey.hrcglobal.com 내용:

- 상용직: 일하고 계신 사업장의 종사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응답하셨는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맞는지요?
맞으면 '예' 틀리면 '아니오'를 응답해주세요.

- 임시직
- 일용직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최소 확인

③ 수화 보기

- 〈수화 보기〉를 클릭하면 해당 문항에 대한 설명을 수화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 수화동영상은 문항 → 지침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문항에만 삽입되어 있다.

E15. 귀하는 어느 정도 수준의 근로가 가능합니까?

수화동영상

일반적인 근로가 가능
 단시간 또는 단순한 근로가 가능

메모하기

보기1번은 취업의사, 다른 취업방해 요인과는 상관없이 순수한 본인의 근로능력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되,
일반적인 근로가 가능한 정도는 일터에서
종일 근무(주간 8시간정도)가 가능한 수준이며

④ 오픈문항/순위 입력 문항

- 응답란 클릭 후 키보드를 이용하여 기입한다.
- 순위 문항은 보기 터치 순서에 따라 1순위와 2순위가 표시되어 있다.

E4-1-1. 이전에 어디에서 일하였습니까?

사업체(직장)명 **한국리서치**

사업체(직장)명을 출여서 쓰지 말고 최하단위까지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세요.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점포명이나 사업체명을 기입해주세요.

메모하기

E14.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실업상태로 있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것 2개까지 선택)

학력, 경력(경험), 기술 부족(자격 제한)
 수입이나 임금이 맞지 않아서
 근무환경이나 근무시간 등이 맞지 않아서
 구직(취업, 창업) 정보접근의 어려움
 취업알선기관 및 서비스 부재, 접근의 어려움 **1 순위**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아서 **2 순위**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건강문제)
 심리적 불안감이나 초조함(자신감 결여)
 신체기능의 제한
 이동능력의 제한
 의사소통의 제한
 기타
 특별히 없었음

메모하기

⑤ 중복 응답

- 중복응답 문항의 경우 사각형의 응답선택 창이 보여지고, 보기를 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다.(단일응답 문항의 경우 원형의 응답선택 창이 보여짐)

D32.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현 사업체 운영 시 겪었거나, 겪고 있는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매출(소득) 감소
- 고객 감소
- 영업(근로)시간 단축
- 일시휴업
- 직원 감원
- 신규채용 제한
- 근무(영업)방식 변화(온라인 영업 강화 등)
- 기타
- 특별히 없었음

⑥ 숫자 입력하기

- 출생년도나 연령 등 숫자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문항의 경우, 응답값 입력창에 커서를 놓고, 키보드로 숫자를 입력하면 된다.
- 입력 후 해당 응답의 한글 변환값을 확인할 수 있다.

D28B. 현재 이 일자리에서 얻는 순수입은 월평균(세금공제 전) 얼마입니까?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단, 소득이 일시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평균을 내어 응답해 주세요.)

월평균 만원(삼백만원)

※ 월별로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난 1년간의 소득을 12로 나누어 응답해주세요.

⑦ 응답값 재확인

- 주요 문항에 대하여 응답내용을 한번 더 확인하는 기능이다.
- 입력한 응답내용이 맞으면 다음 문항으로 이동하고, 입력한 응답내용에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이전 문항으로 이동하여 응답값을 수정해야 한다.

D4-RAW 최종 응답값 확인

무급으로 한가구원의 일	지난주 17 시간
수입있는일1	지난주 시간
수입있는일2	지난주 시간
수입있는일3	지난주 시간
총계	지난주 17 시간

V

조사 사례별 판단

1

조사대상

Q1. 조사대상자가 가숙시설이나 양로원, 고아원 등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 조사대상 포함 여부는?

A1. 접근이 가능한 수용소 및 요양원에 거주하고 있다면 조사 실시, 그렇지 않은 경우 제외

Q2. 병원(요양원 제외) 입원 등으로 장기간 집을 떠나 있을 경우 조사대상 포함 여부?

A2. 병원에 입원 중인 자는 장기간 집을 떠나있다 할지라도 상주개념에 관계없이 조사

Q3. 대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부모 물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어머니에게 물어 보면 통학이라고 답변하고, 아들에게 물어보면 가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답변하나 아들은 만나기가 어려워 주로 어머니에게 물어봄으로써 아들의 취업상태가 제대로 조사 안 되는 경우?

A3.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아들을 통해 직접 조사하도록 하고 다만, 계속해서 못 만날 경우에는 어머니로부터 조사하고 어머니가 응답한 사실 및 사유를 기입

Q4. 지역 내 세집을 얹어 놓고 가끔 공휴일마다 들리며 실제 생활은 다른 지역의 다른 집에 입주하여 어린아이를 봐주는 경우 조사대상 포함여부?

A4. 취업이 되어 지역을 벗어난 경우이므로 해당 지역 조사대상에서는 제외하나, 타 지역에서 조사를 실시함. 다만 일을 그만두고 돌아오거나 아이를 데려다 집에서 돌볼 경우는 해당 지역 조사원이 조사를 실시해야 함

Q5. 해외로 어학연수, 해외 출장 등을 갔을 경우 조사대상 포함여부는?

A5. 돌아오는 시기를 고려하여 조사대상에 포함

※ 조사대상 기간 내에 돌아오는 경우 계속 조사하고, 조사기간 이후에 돌아오는 경우는 제외처리

Q6. 조사대상자가 무단 기출하여 행방을 알 수 없을 경우 조사대상 포함여부는?

A6. 기출한 상황을 고려하여 1개월이 지났으면 조사에서 제외함

2

교육정도

Q1. 육군 · 해군 · 공군사관학교의 계열 구분은?

A1. 사관학교의 주된 목적은 직업군인 양성이지만,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계열구분이 되어 있으므로 대상자가 전공한 계열을 질문하여 조사

Q2. 육군 3사관학교 졸업자의 교육정도는?

A2. 3사관학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교육이수 후 장교로 임용함. 그러므로 3사관학교 이수자는 대학교 졸업으로 처리

※ 단, 과거 80년대 초까지 3사관학교의 전신인 2사관학교 이수자는 전문대학 졸업으로 처리 ⇒ 고졸자를 대상으로 모집했었음), 계열은 병과를 기준으로 판단(예 : 경리병과 → 인문사회계열)

Q3.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이 되지 않아 다시 전문대학(2년제 대학)을 다니는 경우에 교육정도는?

A4.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조사해야 하므로 전문대 재학으로 조사

Q4. 대학원 학기를 마치고 논문작성을 하지 않은 사람의 교육정도는?

A5. 학기를 마치고 논문작성을 위한 등록도 하지 않고 있으면 대학원 중퇴, 논문작성을 위한 등록을 하고 현재 논문작성 중이면 대학원 수료로 조사

Q5.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 졸업한 사람이 대학원에서 통계학을 전공하고 있을 때 교육정도는?

A6.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조사해야 하므로 대학원 전공계열에 따라 대학원 자연계열 또는 경상계열 재학으로 조사

3 혼인상태

Q1. 남자 혼자 살다가(현재 미혼) 과거 동거했을 때 낳은 딸이 있을 때 혼인상태는?

A1. 사실혼에 입각하여 남자는 '이혼'으로 조사

Q2.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가 아이를 입양했을 때 혼인상태는?

A2. 혼인상태는 사실대로 '미혼'으로 조사

※ 미혼모가 아이를 낳았을 경우도 혼인상태는 미혼으로 처리

4 활동상태

Q1. 본인은 회사에 취업이 확정되어 발령대기 상태라고 응답하고 부모는 자녀가 취업한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 계속 직장을 구한다고 응답하는 경우 경제활동상태는?

A1. 원칙적으로 본인의 응답이 우선이므로 발령대기 상태가 30일 이내면 실업자, 30일이상이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Q2. 백화점으로 발령은 났지만 개점할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의 경제활동상태는?

A2. 다른 지점에서 근무하다가 신축 백화점 개점 시까지 대기하고 있는 것이므로 30일 이내에 근무가 가능하면 일시 휴직으로 처리하고, 30일 이상 걸릴 경우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고 보수를 받을 경우는 취업자로 분류

※ 신규입사인 경우는 발령대기가 30일 이내이면 실업자

Q3. 서울기동대에 다니는 사무직 상용근로자로서 출산 후 1년간 휴직을 한 경우에 경제활동상태는?

A3. 유급휴직인 경우는 일시휴직(취업)으로, 무급인 경우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조사, 활동상태는 육아임

Q4. 평소에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선거철에만 선거 사무실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의 경제활동상태는?

A4. 생업인 부동산중개업을 일시중지하고 선거철에만 무보수로 일하는 것이므로 일시휴직으로 조사

Q5. 시법고시 2차 시험을 치르고 계속 공부중인 사람의 경제활동상태는?

A5. 계속 공부만 하고 별다른 활동이 없다면 비경제활동인구로 조사

Q6. 벽돌공장에서 일하는 남편을 따라 같이 일을 돋는 경우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는(남편의 종사상 지위는 임시이며 수입은 남편만 있음)?

A6. 단순히 임금근로자인 남편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조사

※ 처가 남편의 일을 도와준다고 하여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하지 않도록 유의

- 남편이 자영업자인 경우 처의 활동상태는 무급가족종사자로 되어 18시간 이상 일을 돋는 경우는 취업자로 분류

- 남편이 임금근로자인 경우 처의 활동상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Q7. 아시아나 항공의 직업훈련생으로 점심 및 교통비 명목으로 매월 30만원의 훈련비를 받고 있으나 교육수료 후 아시아나 항공에의 취업여부는 알 수 없을 경우의 경제활동상태는?

A7. 사업체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 후 그 사업체에 취업이 보장되면 구직활동으로 간주하여 실업자로 분류하고, 취업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외 활동상태로 분류하는데 훈련이외에 별다른 활동이 없었다면 비경제활동인구(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로 분류

※ 취업을 위해 사업체가 아닌 공사립 직업훈련기관이나 학원을 다니는 것은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으로 보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됨에 유의

Q8. SBS, MBC 등 방송사 부설 연수원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의 경제활동상태는?(등록비는 본인이 부담하며 수료 후 관련 방송사에 취업하는 것은 아님)

A8. 등록비를 본인이 부담하며 수료 후 취업여부도 알 수 없다면 학원에 다니는 것과 같은 경우로 간주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조사

Q9. 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졸업반으로 간호사 자격증은 없으며 취업하고자 하는 병원에서 수습을 받고 있는 경우의 경제활동상태는?(수습기간 중 정기적인 보수는 없으나, 식사는 제공받으며 수습 후 발령 가능)

A9. 점심만을 제공받는 경우는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대상기간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령이 가능하면 실업자로 분류하고, 발령대기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 점심식사 외에 일한 대가로 얼마간의 보수가 지급될 경우에는 취업자로 조사

Q10. 레코드 회사에 음반을 취입하려고 출근하고 있는데 수입은 전혀 없고 자출이 많은 경우 경제활동상태는?

A10. 레코드 취입을 위하여 출근하는 경우는 일자리를 구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자로 조사

※ 가수로 데뷔하기 위하여 가요학원에 다니는 것은 통학 중인 비경제활동인구로 조사

Q11. 불도저로 사업하는 사람이 새로운 불도저 구입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동안의 경제활동상태는?

A11. 불도저를 새로 구입하여 전과 같은 일을 계속할 것이 확실시되면 일시휴직(조업중단)으로 조사

Q12. 여자가 자기 집에서 노름하는 사람들한테 방을 빌려주고 가끔 간식거리를 제공하는 경우의 경제활동상태는?

A12. 노름하는 사람들한테 방을 빌려주고 간식거리를 제공, 담배 심부름 등으로 수입을 얻는 경우는 비생산적인(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되어 경제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경제활동인구로 조사

Q13. 70대 할머니가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는 다른 노인들에게 커피를 타주고 판돈 중 일부를 수고비 (하루 3000원 정도)로 받을 경우의 경제활동상태는?

A13. 비생산활동에 해당되어 경제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경제활동인구로 조사

Q14. 학교에서 급식담당을 하는 주부가 겨울방학 또는 여름방학 전까지 일하고 방학동안에는 일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으나 개학하면 다시 복귀가 가능한 경우 방학기간 중 경제활동상태는?

A14.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이 확실하고, 방학 중에만 일을 하지 않으므로 일시휴직으로 조사

Q15. 정기적으로 월초나 월말에만 일을 하는 사람으로 조사대상기간에는 항상 집에서 쉬는 경우 경제활동상태 처리는?

A15. 정기적으로 조사대상기간 이외에 일을 하는 경우는 취업의 계속성이 있는 것이므로 일시 휴직자로 조사

Q16. 신이 내린 가정주부가 '점'을 보기 위해 제단을 설치하는 등 개업준비 중인 경우 경제활동상태는?

A16. 점을 보기 위해 준비 중인 경우는 그 활동을 구직활동(자영업 준비)으로 보아 실업자로 분류

※ 단, 깃발을 달고 제단설치 등이 완료되어 손님 맞을 준비가 끝났을 경우는 취업자로 분류

Q17. 연립주택 운영회장으로 선출되어 봉사자이라고 하나, 매월 운영회로부터 15만원을 받을 경우 경제활동상태는?

A17. 봉사라는 명목이더라도 15만원을 고정적으로 수령하므로 통장, 이장과 동일한 성격으로 취업자로 조사

Q18. 대학 졸업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가 음식점을 하는 자기 집 일을 도와준 경우 경제활동상태는?

A18. 통상적으로 실업보다는 취업이 우선하므로 구직활동을 하면서 자기 집의 음식점 일을 도운 경우 도와준 시간이 조사 대상 주간 중에 18시간 이상이면 취업자, 18시간 미만이면 실업자로 조사

Q19. 개인택시 운전기사로 사고를 내서 면허정지가 되어 집에서 쉬고 있을 때의 경제활동상태는?

A19. 사고로 인해 면허정지가 된 경우는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있으면 일시휴직으로 조사

※ 단, 수입없이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실제 활동상태에 따라 구분

Q20.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등 졸업예정자가 취업을 위해 졸업하기 전에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경제활동상태 분류는?

A20.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학업 때문에 바로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조사하나 취직시험 등에 응시하여 취업이 확정되었으나 발령대기 시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는 실업자로 조사, 발령대기 기간이 30일이 넘을 경우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조사

※ 취직시험에 합격하여 취업이 확정되었으나 발령대기 시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는 실업자로 조사, 발령대기 기간이 30일이 넘을 경우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조사

Q21. 취직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의 조사방법

A21. ①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여부를 기다리는 경우 : 대상기간에 시험에 응시한 경우는 시험응시행위를 구직활동으로

보고 실업자로 처리

- ② 불합격하여 다음시험에 대비하는 경우 : 다른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계속 직장(일)을 찾고 있는 경우는 실업자, 일정 기간 후에 예정되어 있는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시험공부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처리
- ③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발령을 기다리는 경우 : 대기기간이 30일 이상이거나 단순히 기다리는 경우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처리
- ④ 발령통지를 받았으나 출근시까지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 출근시까지 대기기간이 30일 이내이면 실업자로, 30일 이상인 경우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처리

Q22. 대학 재학 중인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일을 찾는 경우의 경제활동상태는?

A22. 본인이 찾는 일에 즉시 취업할 수 있으면 실업자로 조사

Q23. 직장에 다니다가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집에서 3개월 쉬고 난 후 현재 다시 취업하기 위하여 직장을 찾고 있는 경우의 경제활동상태는?

A23. 명예퇴직으로 별다른 일이 없이 집에서 쉬고 있다면 비경제활동인구로, 3개월 쉬고 나서 다시 취업하기 위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면 실업자로 조사

Q24. 부모가 조사지역 외 지역에서 분식점을 하고 있는데 조사지역 내에 사는 딸이 매일 분식점 일을 도와주고 있는 경우의 경제활동상태는?

A24. 통상적으로 혈연가족이라 할지라도 따로 살고 있으면서 일을 주고 댓가로는 돈을 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취업자로 조사하나 전혀 아무것도 받지 않고 있을 때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조사
※ 단순히 부모님을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하여 무급가족종사자로 조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Q25.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운동 중인 경우의 경제활동상태는?

A25. 선거운동을 한 것은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경제활동인구(기타)로 분류

Q26. 학생이 방학동안에 일을 하여 취업자로 분류될 경우 조사표「C1」란 기입 시 「일하였음」과 「통학」의 구분방법은?

A26. 통상적으로 학생이 방학을 하여 학교에 가지 않아도 활동상태는 「정규교육기관 통학」으로 분류하나, 취업을 하였을 경우는 「일하였음」에 해당

※ 학기 중 일 때

-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일을 할 경우 C1항은 「정규교육기관 통학」, C2항은 「있었음」에 기입함(취업자)
-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교를 다닐 때 C1항은 「일하였음」에 기입함

Q27. 박사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 연구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월 70~80만원을 받는 경우의 경제활동상태는?

A27. 취업자로 조사

Q28. 의회의원이 활동비를 50만원 받은 경우 경제활동상태는?

A28. 의회의원이 주업이면 상용으로 처리하고, 다른 일도 겸하고 있어 다른 일의 취업시간이 더 많으면 그 일의 특성에 따라 처리

Q29. 출산으로 1년 휴직한 교사의 활동상태는?

A29. 육아휴직으로서 직장에 복귀가 확실하며, 휴직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일시휴직으로 간주함

Q30. 농업종사자가 농한기에 자기집을 짓는 경우 경제활동상태는?

A30. 농업종사자가 자기집을 짓는 경우는 취업자로 분류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 목수가 자기 집을 짓는 경우는 비록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고유기능인 본업을 살려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취업자로 조사하며, 취업시간은 조사대상기간의 일한 시간을, 종사상 지위는 자영자로 조사함

Q31. 한달에 스웨터 1벌을 짜는데 '8만원'받은 경우 경제활동상태는?

A31.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주부가 삼삼뜰이 정도로 하는 여가 활용 측면으로서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했다고 볼 수 없음)

※ 다만, 수입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경우는 취업자로 분류

Q32. 남편이 A, B 두개의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두 사업체 모두 다 관리할 수 없어 A는 본인(남편)이 경영하고, B사업체는 삼촌이 경영(소유는 남편)하고 있는 상태임. 부인이 B사업체에서 주당 36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 부인의 경제활동상태는?

A32. 취업자로 분류함, 종사상지위는 보수를 받고 일한 경우는 임금근로자로, 보수없이 일한 경우는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

Q33. 개인택시기사가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운전기사를 고용해서 택시운전을 하고 수입을 나눠 갖는 경우 경제활동상태는?

A33. 일시적으로 아파서 다른 운전기사를 고용한 경우는 취업자(일시휴직자)로 분류

※ 장기간 일을 할 수 없어 고용한 경우는 개인택시를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Q34. ○○○씨가 교복을 만드는 곳에서 미싱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의 양에 따라 임금(실적급)을 받는 일용으로 일하고 있으나, 최근 조사대상기간에는 작업량이 많아 부인과 함께 그 일을 했을 경우 부인(일당은 모두 남편이 받고 있음)의 경제활동상태와 지위는?

A34. 부인은 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남편을 도운 것이므로 취업자로 분류될 수 없음. 남편의 일을 도운 것 이외에 실제 활동상태에 따라 분류

Q35. 조사대상기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대학 진학예정자인 경우는?

A35. 상급학교 진학이 분명하며, 다른 일을 안 할 경우는 '6. 정규교육기관 통학'으로 처리하여 교육정도는 고졸로 함

※ 진학준비, 쉬었음 등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

※ 상급학교 진학이 불분명한 경우는 대상주간 동안 실제 활동상태에 따라 처리

Q36. 노사분규로 인해 봉급도 받지 못하고 6개월 이상 계속 회사로 가서 시위만 하고, 부인의 수입으로 생활할 경우 경제활동상태는?

A36. 다른 활동이 없으므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Q37. 채취한 조개를 운반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개인용달로 운반해 주는 일을 하고 그러나 최근에는 조개 채취 부진으로 일한 적이 없으며, 집에서 TV만 보고 소일할 경우 경제활동상태는?

A37. 그 이외 별다른 활동이 없으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Q38. 생계를 함께 하는 딸이 친정어머니에게 애를 맡기고 월 6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친정어머니의 경제활동상태는?

A38. 손녀를 돌봐주고 보수를 받는 형태에 해당되므로 취업자로 분류

Q39. 남의 밭을 100평 빌려서 농사를 짓는 가구로 수확물을 자식들에게 주는 등 자급자족을 하면서 일부는 판매하고 있음. 조사대상기간 중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경제활동상태는?

A39. 수확물의 일부만을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판매행위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취업자로 분류

Q40. 주식회사 이사로 출자한 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받고 있으나, 고용계약기간도 없고, 출근하지도 않으며 하루 1시간씩 전화로만 확인할 경우 경제활동상태는?

A40. 취업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출자한 자금에 대한 배당금은 일한 대가로 볼 수 없음)

Q41. 자원봉사자가 교통비 5천원을 받았을 경우 경제활동상태는?

A41. 목적이 자원봉사이므로 비경제활동으로 분류. 만약, 일당을 받으면서 명목만 자원봉사인 경우는 목적이 수입을 위해 일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취업자로 분류

Q42. 온라인 상에서 게임을 통해 돈을 버는 경우 경제활동상태는?

A42. 수입을 위해 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업자로 분류하지 않음

※ 프로게이머의 경우는 취업자로 봄

Q43. 일용직으로 일하는 목공근로자가 몸이 아파서 한 달 쉬고 나서 일을 다시 시작할 거라고 하는 경우 쉬는 동안의 활동상태는?

A43.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명확히 복귀할 직장이 있을 경우는 일시휴직(취업자)으로 분류. 단, 복귀할 직장도 없고,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으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Q44. 딸이 어머니 자본으로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매월 40~50만원정도 적금을 붓고, 엄마는 학원생들 급식할 때 음식 만드는 것을 도울 경우?

A44. 급식 만드는 일을 무급으로 돋는 경우이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단, 무급으로 도운 시간이 조사대상기간에 18시간 이상 될 경우에는 무급가족종사자(취업자)로 분류

Q45. 일용근로자로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으나, 특별한 사정으로 일정기간 일을 하지 못한 경우 경제활동상태는?

A45. 일시휴직으로 분류(단, 계속성과 확실성을 유지되어야 함)

Q46. 학생이 방학 중 아르바이트하는 경우에 활동상태(7번 항목)와 취업여부(8번 항목)는?

A46. Part time으로 일하는 경우는 C1(활동상태)를 「6. 정규교육기관 통학」, C2(취업여부)에서 「1. 있었음」으로 처리
Full time으로 일하는 경우는 C1(활동상태)를 「1. 일하였음」으로 처리

Q47. A대 부속병원 의사가 정년퇴직 후 한달에 세너번씩 제자들에게 임상교육을 해주고, '50만원'정도의 수고비를 받는 경우 경제활동상태는?

A47. 취업자로 분류

Q48. 부부 공동명의의 회사이나 실제로 부인은 회사일에 전혀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부인의 경제활동상태는?

A48.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Q49. 관세업무를 하는 프리랜서로 이전에는 몇 개 회사의 업무를 맡아서 일을 하였으나 현재는 불경기라 일감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일감을 알아보는 경우 경제활동상태는?

A49. 관세업무를 수탁, 종사할 때는 자영자로 분류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로 분류

Q50. A대 간호학과 졸업생이 A대부속병원에서 무보수로 점심만 제공받고 실습함(자격증 미취득상태로, A대병원에 취업이 보장된 것도 아님)

A50. 취업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자격증도 없는 상태로 무보수로 실습하기 때문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취업자로 분류할 수 없음

Q51. 대우조선에 다니다 다쳐 산재에서 급여가 나오고 회사에서는 월10만원씩 나옴. 5월에 회사로 복귀할 경우 경제활동상태는?

A51. 산업재해로 일을 못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복귀가 확실하다면 일시휴직으로 처리

※ 만약, 산업재해로 장애인 판정 등을 받아서, 다시 복귀가 불가능하다면 활동상태에 따라 분류

Q52. 증권투자하는 사람으로 거의 매일 증권회사에 가서 사고팔면서 주식투자로 수익을 올릴 경우 경제활동상태는?

A52. 취업자로 볼 수 없으며, 주식투자이외의 다른 활동상태에 따라 분류함 별다른 활동없이 주식투자만 한다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Q53. 전산학원에 등록해서 3~6개월 다닐 경우 활동상태는?

A53. 반나절이상이면 통학, 1~2시간 정도 되면 통학이외에 활동상태에 따라 분류

Q54. 가구를 달리하는 어머니가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점심을 제공받으며 일을 도와주고 있는 경우 활동상태는?

A54. 가구를 달리하는 딸의 사업장에서 도와주고 점심을 제공받는 것은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로 처리

Q55. 회사(풀무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만 외판원으로 일할 수 있는데, 이웃에 알고 지내는 사람이 교육을 받으면 시제품도 받고 선물도 받을 수 있으니 교육을 받아보라고 강하게 권하여 교육을 받고 있음. 본인은 외판원 일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함. 경제활동상태는?

A55. 취업의사가 없으며,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로 처리

Q56.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1개월)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교육기간 중 1만5천원의 수당을 받고 있음. 본인에 의하면,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본인은 설계사로 일하지 않겠다고 함. 경제활동상태는?

A56. 취업의사가 없으며,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로 처리

Q57.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는 주인으로 방학동안 하숙생들이 귀향하기 위해 모두 나가고 없을 경우 하숙집 주인의 경제활동상태는?

A57. 방학이 끝나면 학생들이 다시 입주하여 하숙집을 운영할 것이 확실하므로 취업자(일시휴직)로 분류

Q58. 여행가이드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 전문대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데 수당을 10만원 받음. 활동상태는?

A58. 단순히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교통비, 식대 등 실비위주의 훈련수당이 지급되므로 '비경제활동인구'로 처리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Q59. 자격증을 얻기 위해 미용학원에 다니면서 실습을 위해 미장원에서 일하면서 월 10만원을 받는 경우 경제활동상태는?
A59.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경제활동인구'로 처리

Q60. 집 또는 일을 떠난 업체에서 실내장식인테리어 설계 일을 하며 경우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실내장식
감독일도 하기도 하는데 현재는 일이 끝나 다른 사람 2~3인과 함께 동업식으로 일(인테리어 설계)을 수주하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고 있을 경우 취업활동과 구직활동 중 어느 것으로 분류해야 하는가?

A60. 인테리어 설계일을 수주하기 위한 영업활동으로 간주하여 취업자로 분류

Q61. 63세 된 할머니가 남양알로에(건강식품, 화장품 등 취급)에 근무하는 팀장의 권유를 받고 마지 못해 교육장에
참석하여 10일 정도 교육을 받았으나, 참석 교육비는 없었을 경우 활동상태는?

A61.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교육을 받는 장소에만 참석하였고, 별도로 받는 수당도 없었으므로)

Q62. 건축사 사무소를 개업준비 중인 경우로 6월 10일 사무실을 임대계약하고 사무실 집기 등을 들여 놓고, 6월 14
일부터 사무실에서 부인이 허가서류를 워드문서로 작성, 제출하였으며, 현재 직원도 없는 상태임. 경제활동상태는?

A62. 남편은 사업자, 부인은 자영업을 준비하는 남편을 도운 것에 불과하므로 다른 실제 활동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별다른 활동 상황이 없으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 만약, 부인 아닌 직원을 채용하여 개업을 위한 허가서류를 작성(준비)한 경우→남편은 사업자, 직원은 취업자로 분류

Q63. 현재는 실제로 구직하여 취업할 의사가 없으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다만, 사업체를 방문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행정적 입증서류 (행정적 절차)를 제출(노동부)한 경우에 활동상태는?

A63. 실제 일할 의사가 없고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Q64. 손자, 손녀를 돌봐 주고 50만원씩 보수를 받을 경우 경제활동상태는?

A64. 손자, 손녀를 돌봐주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형태에 해당되므로 취업자로 분류함. 단, 용돈조로 받았을 경우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Q65. 영세민 취로사업(공공근로사업)이 A, B, C 3개조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10일 정도씩 교대로 참여할 경우 경제활동상태는?

A65. 조사대상기간에 취로사업에 참여하여 일한 경우는 취업자, 30일 이내에 다시 일할 것이 정해져 있으면 사업자,
그 외는 실제 활동상태에 따라 분류

Q66. 연금을 수급하여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일요일에 200평 정도 되는 논에서 일하고 수확물을 자가 소비하거나
아들에게만 줄 경우 경제활동상태는?

A66.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함

Q67. 사업체에서 사고를 당해 산재보험료를 받고 있고, 몸이 완쾌되면 직장에 복귀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경제활동상태는?

A67. 일시휴직

Q68.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주부가 육아와 가사를 공통으로 하는 경우 활동상태분류는?

A68. 육아와 가사 병행 시는 육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육아'로 분류

※ 육아는 주로 미취학자녀(초등학교 입학전)를 돌보기 위해 집에 있는 경우가 해당됨

5 구직기간 및 전직여부

Q1. 3개월 간 구직활동을 한 이후 취업에 성공하였으나 1개월정도 근무한 후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다시 이 달에 구직활동을 할 경우 구직기간은?

- A1. 1개월 최근 일자리를 그만 두고 구직활동을 다시 시작한 시점부터 계산
(취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한 것을 산입시키지 않음)

Q2 전직군인인 경우에 전직여부의 조사는?

- A2. 군인으로서의 전직은 없는 것으로 함

Q3 농업 자영자(취업자)로 농한기 때 쉬었을 경우 전직여부의 조사는?

- A3. 현재 비경제활동 상태이므로 농사철에 농사일을 한 것은 전직으로 함

Q4. 이전 직장이 해외취업인 경우 전직여부는?

- A4. 전직이 없는 것으로 함
※ 국내에서 해외로 파견되어 근무하였던 경우는 전직이 있는 것으로 처리

6 임금 등

Q1.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소득'은?

- A1. 기준에 받았던 평균 임금으로 조사(차후 받을 예정 임금을 기준으로 조사)

Q2. 3개월 평균 급여로 각종 수당, 성과급, 특별보너스의 포함 여부?

- A2. 각종 수당, 성과급, 특별 보너스 등을 포함하여 조사

Q3.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로 일시휴직 상태인 사람의 월평균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A3. 휴직 전 평소 근무 시 직장에서 받은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조사

Q4. 직장을 옮긴 경우 월평균 임금은?

- A4. 조사대상기간에 직장을 옮긴 상태면 옮긴 직장을 기준으로 받기로 되어 있는 임금을 조사

Q5 신규 취업자, 신규 자영업자 소득은?

- A5. 신규 취업자는 정상적으로 받게 될 급여액을 기준으로 조사. 신규 자영업자(개업후 1개월 미만 경과)는 개업 후 수익을 1개월 분으로 환산하여 조사

Q6. 동일직장(사업체)에서 근무 후 일이 끝나서 1년(1개월) 쉬다가 다시 입사한 경우 계약 반복·갱신여부는?

- A6. 첫 취업으로 봄(41번 항목관련으로 계약반복·갱신된 것이 아님)

Q7. 일당제로 조사대상기간에 단 하루 8시간만 일한 경우 전일제·시간제 근로여부는?

A7. 시간제로 조사하고, 평소 1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기입

Q8. 국내선 비행사로 일주에 2~3번 비행하기 때문에 총 비행시간 및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 전일제·시간제 근로 여부는?

A8. 직업의 특성상 정규근로시간이 짧은 경우도 전일제 근로로 조사

Q9. 집에서 부업하는 가정주부의 경우 전일제·시간제 근로여부 및 계약 근로시간은?

A9. 계약시간을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는 시간제 근로로 조사하고 계약 근로시간은 대상주간에 실제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조사. 카드모집인도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

Q10. 보험회사 설계사의 전일제·시간제 근로여부는?

A10. 전일제 근로로 분류

Q11. 공무원의 경우 '계속근로 가능여부'의 이유는 무엇인가?

A11. 공무원 임용(계약직은 제외)이 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묵시적인 고용관행에 의해 정년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음

Q12. 용역업체에서 파견된 아파트 경비원의 종사자 규모는?

A12. 현재 일하는 아파트에 파견된 같은 용역업체 직원수가 4명일 경우는 4명, 10명일 경우는 10명을 종사자규모로 함.
아파트관리소 직원수 또는 용역업체 전체 직원수로 피악하면 안됨

7

산업

Q1.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기공, 한국전력기술, 한전산업개발, 한전정보네트워크, 두산중공업 본사의 산업분류는?

A1. - 한국전력 : 수력, 화력, 원자력 등의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전기업(351)으로 분류
- 한전기공 : 한국전력에 발전, 송·배전, 전기설비에 관한 전문기술을 제공하여 발전설비가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유지 정비하는 업체임. 그러므로 72129(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로 분류
- 한국전력기술 : 발전소 설비를 설계하고 감리하는 업체임. 발전설비의 설계·감리는 전기, 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포함 되므로 72129(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로 분류
- 한전산업개발 : 폐발전소 부지 등 한국전력 소유의 부동산을 재개발 및 매각처분 등 한전의 부동산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자회사임. 그러므로 68212(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에 해당. 다만, 전력 검침을 위한 검침사업단 산하의 지사(소)는 73904(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추출업)로 분류하고 검침·계량 대리(대행)는 75999(그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로 분류
- 한전정보네트워크 : 한국전력의 통신망 구성을 및 관리를 전담하는 전기통신회사이므로 612(전기통신업)으로 분류
- 두산중공업(前 한국중공업) : 각종 발전·전기관련 내연기관 및 플랜트 설비를 제작하여 시공하는 회사임. 발전용 내연기관 플랜트 설비의 제작부분은 2911(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로 분류하고, 시공부분은 41225(산업플랜트 건설업)로 분류.

※ 한국전력외에도 포항제철(포스코)과 같이 포스틸(포철 철강제품 판매회사), 포스코켐(화학물 제조업) 등의 자회사가

있음. 또한 일반기업체의 자회사도 모기업의 산업활동을 지원하여 주기 위해 설립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기업인지 자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서 해당되는 산업으로 분류해야 함

Q2 건설, 자동차, 전자 및 중공업 등의 여러 가지 산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A그룹 본사의 산업 분류는?

A2. A그룹 본사에 근무할지라도 대부분이 각각 소속된 업체가 있으므로 해당업체로 분류함. 다만, 어느 특정업체 소속이 아닌 그룹의 소속에 해당될 경우는 매출비중이 큰 주력기업의 산업으로 분류 예) A그룹 기획조정실(구조조정본부), 홍보실소속이면 매출비중이 큰 주력기업은 A자동차이므로 3012(자동차 제조업)로 분류

Q3 가라오케와 노래방의 산업분류는?

A3. 가라오케는 56211(일반유흥 주점업), 노래방은 91223(노래연습장 운영업)으로 분류

Q4 가구에서 자녀 백일, 돌 및 부모님의 회갑 등을 치를 때 음식을 조달해 주는 출장부페의 산업분류는?

A4. 특정 장소에 출장하여 고객이 주문한 음식물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은 56131(출장음식 서비스업)으로 분류

Q5 낚시대 부품을 기계 조작하여 완성품을 만드는 사업체의 산업분류는?

A5. 낚시대를 만드는 일을 하므로 33303(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Q6 백화점내의 예식장, 상록회관내의 수영장, 호텔내의 오락실 등의 산업분류는?

A6. 백화점, 상록회관 또는 호텔내에 설치된 예식장, 수영장, 오락실이라 할지라도 이들 사업체가 별도 계정이 있으면 본 업체에서 분리된 개별사업체로 구분하여 각각의 해당 산업분류를 부여함. 그러나 전체를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경우 또는 계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는 본부 소속으로 분류
예) 상록회관에서 수영장, 예식장 및 연금매장 등 회관 전체를 관리하는 경우는 상록회관의 주된 업무인 6530(연금 및 공제업)으로 분류

Q7. 중장비를 도매하는 사업체 대닐 경우와 중고 중장비를 중간 매매하는 사업체에 대닐 경우 산업 분류는?

A7. 신품 및 중고에 관계없이 자동차, 앰뷸런스·마이크로버스 등의 특수 승용자동차, 지프·농공업용 경자동차 등의 특수차량용 자동차, 화물차량과 트레일러의 도·소매 활동은 451(자동차 판매업)으로 분류
※ 농업용 기계장비,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장비, 전기용 기계장비 등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은 4653으로 분류
※ 컴퓨터 및 관련 소프트웨어, 사무용 기계장비, 항행 및 통신장비, 의료 및 과학기기, 수송용 기계장비,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등은 4659로 분류

Q8. 결혼상담소 및 웨딩랜드 등 결혼식 관련업무 대행업의 산업분류는?

A8. 결혼상담소는 96994(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결혼식 관련업무 대행업은 75092(전시 및 행사대행업)로 분류

Q9. 외환은행의 신규직원 교육을 위한 합숙소의 산업분류?

A9. 합숙소의 주된 사용목적이 교육용으로 교육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시설에 해당된다면 8564(직원 훈련기관)로 분류, 은행 직원의 거주를 위한 합숙소로 사용되며 의식주를 여기에서 해결하고 있다면 55901(기숙사 운영업)로 분류

Q10. 삼성생명과 삼성생명서비스주식회사의 산업분류는?

A10. 삼성생명의 주된 활동은 보험 계약 등 생명보험업무를 수행하므로 65110(생명보험업)로 분류, SIS 주식회사(구. 삼성생명서비스주식회사, 2000년 SIS(주)로 사명변경)는 보험계약, claim심사, 리서치 &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662(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로 분류

Q11. 교차로, 상가로 및 벼룩시장 등 종합 생활정보지를 발간하는 사업체의 산업분류는?

- A11. 교차로 등 종합 생활정보지는 수수료를 받고 개인 및 업체의 광고물을 게재해 주는 산업활동으로 다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으며 모두 58123(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으로 분류
- 광고물을 수주하여 다른 인쇄업체에서 인쇄 후 배포하는 형태
 - 광고물을 수주하여 해당 업체에서 직접 인쇄 후 배포하는 형태

Q12. 이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산업분류는?

- A12. 이삿짐센터와 포장이사 모두 6031(화물자동차 운송업)으로 분류, 단 5톤 이상은 4931(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5톤 미만 및 개별화물차는 49312(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로 분류

Q13. 가전제품, 가구 등의 재활용품을 구입하여 약간의 수선을 거쳐 다시 팔는 사람의 산업분류는?

- A13. 중고품을 구입하여 활용 가능한 제품으로 수리하여 판매하는 활동은 고물상의 산업활동과 유사하므로 46791(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로 분류
- ※ 재생타이어 제조는 22112(타이어 재생업), 재생펄프 제조는 17110(펄프제조업), 재생플라스틱수지 제조는 20303(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 원료 생산업)으로 분류

Q14. 전당포, 일수놀이를 하는 사체업자의 산업분류는?

- A14. 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증가하는 산업활동의 일종이므로 64919(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로 분류

Q15. 손목밴드, 머리밴드 등의 용도로 고무밴드가 들어간 형광 제조를 하는 사업체의 산업분류는?

- A15. 33(기타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Q16. 아파트 관리 업무를 용역회사에서 하는 경우의 산업분류는?

- A16. 용역회사는 남의 일을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운영하는 사업체이므로
-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전반적으로 대리하여 관리할 경우 : 6821(부동산 관리업)
 - 건물 청소, 경비 및 기타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부분적으로 관리할 경우 : 753(경비, 경호 및 탐정업), 74211(건축물 일반 청소업)
 - 임시적인 인력을 공급할 경우 : 75120(인력공급업)

Q17. 조명기계에서 건설현장에 전기등을 판매하고 설치까지 해 주는 경우의 산업분류는?

- A17. 건설현장 등으로 납품하는 경우는 도매업에 해당되므로 46432(전구 램프 및 조명장치 도매업)으로 분류
- ※ 주된 산업활동에 수반되어 수행되는 부수적인 일의 산업분류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소매업체가 제품을 판매하면서 부수적으로 설치까지 해줄 경우를 전문건설업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분류임, 설치·시공전문회사가 제품을 구매하여 시공하는 경우는 전문건설업에 해당됨

Q18. 화물차, 컨테이너(10여대) 등의 세금업무, 사고보험료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산업분류는?

- A18. 712(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로 분류

Q19. 부산교통공단(지하철 운행)의 산업분류는?

- A19. 49211(도시철도 운송업)로 분류

Q20.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여성회관의 산업분류는?

A20. 872(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로 분류

Q21. 건축단열재(스티로폼)를 생산하는 사업체에 대니고 있을 경우 산업분류는?

A21. 22250(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Q22. 학교급식업체의 산업분류는?

A22. 56120(기관구내식당업)으로 분류

Q23. 중장비 제조하는 사업체의 산업분류는?

A23. 2929(기타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으로 분류

Q24. 빙수, 봉어빵, 호떡, 김밥 등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 산업분류는?(단, 점객시설은 없음)

A24. 561(음식점업)로 분류

- 고구마 또는 밤을 구입하여 구워서(즉시 먹을 수 있는 상태로 조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56(음식점 및 주점업)으로 분류
- 같은 맥락에서 커피, 냉차를 제조(조리)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점객시설이 없어도 56(음식점 및 주점업)으로 분류
※ 컵라면과 같이 단순히 따뜻한 물만 부어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472(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로 분류

Q25. 족발집, 피자집 등 점객시설 없이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경우 산업분류는?

A25. 즉시 먹을 수 있는 상태로 조리하여 배달하면 561(음식점업)로 분류하고, 단순히 데워서 주문 배달할 경우에는 472(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로 분류

Q26. 관리사무소가 없는 연립주택에서 그 연립주택에 사는 할아버지가 연립주택 주위를 청소하기로 하고 주민들이 돈을 모아 매달 지급하는 경우의 산업분류는?

A26. 969(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로 분류

Q27. 본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여 주는 사람의 산업분류는?

A27. 75911(문서작성업)로 분류

Q28. 빈병을 수집하여 다 부수어서 다시 병제조 회사에 판매할 경우의 산업분류는?

A28. 46791(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로 분류

Q29. 놀이방, 어린이집의 산업분류는?

A29. 교육비중이 높으면 85110(유아교육기관)으로 분류 위탁보육의 비중이 높으면 87210(보육시설 운영업)으로 분류
※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선교원도 위의 기준에 따라 분류

Q30. 영세민으로서 복지관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어린이집 급식일 등 생계보상지원(4시간/일) 업무를 할 경우에 산업분류 및 종사자 규모는 ?

A30. 산업은 842(사회 및 산업정책행정)으로 분류하고 종사자규모는 가서 일하는 곳의 종사자수로 피악함

8 직업

Q1. 고정된 장소 없이 돌아 다니면서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의 직업분류는?

A1. 53220(노점 및 이동판매원)으로 분류 예) 극장 앞에서 오징어, 땅콩 등을 판매하는 경우 시장 노점에서 과일이나 야채 등을 판매하는 경우 트럭으로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생선, 야채, 과일 등을 판매하는 경우

Q2. 구몬수학, 재능영어, 눈높이 수학, 웅진 곱돌이 등 학습용 교재를 판매하는 사람의 직업분류는?

A2. 정기적으로 가구를 방문하여 아동에게 학습지의 내용을 가르치고 판매하는 경우는 2545(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 학습지도는 안 해주고 판매, 기입 권유만 하는 경우는 53210(방문판매원), 사무실에서 학습용 교재 및 테이프에 대해 문의가 있을 때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는 선전원은 5323(홍보 도우미 및 판촉원), 학습지를 각 가구에 배달만 하는 경우는 922(배달원)으로 분류

Q3. 파출부, 가정부의 직업분류는?

A3. 95110(가사 도우미)로 분류

Q4. 차량을 도장하는 사람의 직업분류는?

A4. 승용차, 버스, 트럭 등의 도장인 경우는 75105(자동차 도장 정비원)으로 분류

Q5. 건물을 도장하는 사람의 직업분류는?

A5. 78361(건물 도장공)로 분류

Q6. 중장비(덤프트럭) 소유자가 직접 운전도 하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직업분류는?

A6. 8733(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으로 분류

Q7. 메이크업 강사(화장품 판촉 때)의 직업분류는?

A7. 42241(메이크업 아티스트)로 분류

Q8. 컴퓨터 마싱사(수작업이 거의 무)의 직업분류는?

Q8. 821(섬유 제조 및 가공기계 조작원)

Q9. 운전하여 제조업체 물품을 도매업체, 소매업체, 슈퍼 등으로 배달하는 경우의 직업분류는?

A9. 873(자동차 운전원)으로 분류

Q10. 파출소장 직업분류는?

A10. 1211(정부행정 관리자)로 분류

9 종사상 지위

Q1. 부부 공동명의로 회사소유가 되어 있는 경우의 종사상 지위는?

A1. 부부 모두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경우

- (법인) 부부 모두 상용 (비법인) 종업원 유무에 따라 고용주 또는 자영자로 조사

부부 공동으로 회사를 소유하지만 실제 전혀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 이름만 걸어놓고 실제 일은 하지 않았다면 비경제활동인구로 조사

Q2.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에 "리본집기" 주2회 출강하면서 학교로부터 임금지급은 전혀 없고 학생들로부터 재료비 등 수강료를 직접 받는 경우 종사상 지위는?

A2. 과외지도와 같은 성격으로 보아 자영자로 분류

Q3 개인택시기사가 처와 같이 일일교대로 운전하는 경우 처의 종사상 지위는?

A3. 처의 수입 구분이 없이 남편의 수입으로 일괄 처리되는 경우는 처의 종사상 지위를 무급가족종사자로 조사

※ 택시 2대를 회사 명의로 빌려서 사업하는 경우 사업주는 고용주로 봄(고용된 운전사는 '40,000원'만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본인 일당)

Q4. 남의 밭에 비닐하우스조립 일을 하는 사람으로 업체소속은 아니고, 밭주인이 요청하면 밭에 가서 비닐하우스조립을 하는 사람의 종사상의 지위?(보수는 하우스 건당 계산함,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일주일에 2~3일 정도만 일하였음)

A4. 비닐하우스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작업하면 자영으로 단순히 노동력만 제공한다면 일용근로자로 판단

Q5. 다단계판매 회사에서 자본금(1구좌 550만원, 2구좌)을 넣고, 판매실적이 없어도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 받으면서 판매시에는 실적급을 받을 경우 종사상 지위는?

A5. 임시로 분류

Q6. 여행사에서 필요시 부르면 통역 일을 해주는 사람의 종사상 지위?

A6. 일정한 사업체를 갖출 때는 고용주 또는 자영자로 분류,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경우는 일용으로 분류

Q7. 야구심판 계임수당을 받는 경우(프로야구심판) 종사상 지위는?

A7. 한국야구위원회(2002.3월 현재 33명 등록) 회원으로 연봉제로 계약하였고 계약기간은 2/1 ~ 11/30 연봉액을 10개월로 나누어서 지급시한다면 임시근로자로 분류

※ 프로야구이외에 아마추어 야구 등 경기가 있을 때만 가서 심판을 보고 계임수당을 받는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분류하고 이 경우에도 별도로 계약이 있으면 계약내용에 따라 분류

Q8. 농·수·축협의 연봉제 직원의 종사상 지위는?

A8. 연봉제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상용으로 분류, 연봉제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임시직

Q9. 식당주방장으로서 2년 계약(구두계약도 인정)한 경우 종사상 지위는?

A9. 상용으로 분류

Q10. 교회전도사로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퇴직금 수령은 불투명이나 성과급 정도만 받고 있는 경우 종사상 지위는?

A10. 임시로 분류

※ 교회가 비영리단체이므로 개척교회 목사의 경우는 소규모로서 혼자서 꾸려나간다고 해도 상용으로 분류(스님도 상용으로 분류)

Q11. 주식지분을 가지고 3명이 주식회사를 설립(법인체)한 동업자로서 사장은 아니지만 자속적으로 회사에 다닐 수 있는 경우(퇴직금 수혜여부는 불투명함) 종사상 지위는?

A11. 상용으로 분류

Q12. 회계사들이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경리를 1명 두고 운영하는 경우 종사상 지위는?

A12. 상용으로 분류

Q13. 유선생 영어 등 학습지 교사의 종사상 지위는?

A13. 고용형태가 다양하므로 계약기간이 있으면 계약기간에 우선하고 계약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서 실적급만 받으면 임시로 분류

Q14. 대형 할인마트에 일시적인 물건의 상·하차, 설치를 위하여 용달차 5대를 불러서 일정한 금액을 주어서 분배하였을 경우 종사상 지위는?

A14. 동업의 개념이 아니므로 종사자수는 용달차 주인 5명을 합친 5명이 아닌 1명으로 하고, 종사상지위는 자영자 또는 고용주로 처리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Q15. 주부가 기계를 하나 얻어서 의류에 리밸만 부착(임가공)하며 원재료는 모두 의류회사에서 받아오고 하청한 만큼은 수수료로 받는 경우, 혼자 하기에 물량이 많을 때는 사람을 고용하고 물량이 없을 때는 혼자서 일하는 경우 종사상 지위는?

A15. 하청수수료를 받고 가정에서 일하는 경우 일용이나, 별도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자영자임 다만, 혼자서 하지 않고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이며 만약,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이 조사대상인 경우는 일용으로 분류하고, 자신의 집에서 하청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경우 모두가 일용근로자임

Q16. 배우자, 자녀는 조사지역내 거주하고 남편은 조사지역외에 거주하며 음식점 경영하고 배우자는 음식점 일을 돋는 경우 종사상 지위는?

A16. 배우자의 종사상지위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처리

※ 배우자가 매일 식당에 가서 일하는 경우는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영자로 분류

Q17. 조사지역 외 지역에 있는 남편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부인이 보수를 받고 일정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활동상태는?

A17. 매일 일정금액을 받고 일을 하므로 취업자로 분류

Q18. 10명이 동업하면서 40명을 고용할 경우 종사상 지위는?

A18. 동업자는 고용주

Q19 직장 퇴근 후 부업을 하는 며느리의 일을 돋는 시어머니의 종사상 지위(활동상태)는?

A19. 부업이 일용인 경우 시어머니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고, 부업이 자영업인 경우 무급가족종사자로 처리

Q20. 특별한 시설없이 돌아다니면서 재봉틀을 수리하는 사람의 종사상 지위는?

A20. 사업장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므로 일용근로자로 분류

Q21. 집에서 본인의 컴퓨터로 여러 회사의 상품을 선전해 주고 판매실적에 따라 돈을 받는 경우 종사상 지위는?

A21. 자영자로 분류

Q22. 무용학원에 1년 계약으로 1주일에 2번 나갈 경우 종사상지위는?

A22. 1년간 계약했으므로 상용으로 분류

Q23. 지입제 트럭으로 빵을 소매업체에 운반해주고 실적대로 받음. 부인은 같이 동행하면서 상하자를 돋는 경우 아들의 종사상지위는?

A23. 남편은 자영자, 부인은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

Q24. 공동으로 삼성생명 대리점을 개설하여 1명을 대표자로 하고, 다른 사람들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무실 관리비 등 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고 실적은 자가수입으로 할 경우 종사상 지위는?

A24. 동업자 모두 자영자(고용주)로 함

Q25. 건축장에서 10명이 공사를 하고 천만원을 받아, 90만원씩 나누고 100만원은 공동으로 비축한 경우에 그 사람들의 종사상 지위는?

A25. 모두 동일하게 나눠가지므로 심장여부에 상관하지 않고 일용으로 처리

※ 심장의 관리로 건설인부를 모집하고 공사대금 등을 지불하는 형태인 경우는 심장을 고용주로 처리

Q26. 주주가 가족으로만 구성된 법인사업체로서 가족을 종업원으로 등재하여 명목상으로는 급여가 책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회사대표가 수입을 전부 총괄하는 경우 회사대표의 종사상 지위는?

A26.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으므로 상용으로 조사

Q27.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과외지도를 할 경우 종사상 지위는?

A27. 가정에 입주하여 학생을 가르치면서 숙식을 제공받고 있는 경우는 임시로 조사, 입주하지 않고 일정한 날 및 시간을 정하여 과외지도를 하는 경우는 가르치는 장소가 자기집이나 남의 집 등 일정한 장소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것이므로 자영자로 조사

Q28. 매월 일정금액의 선도금을 택시회사에 주고 그 회사의 택시를 운전하여 수익금은 본인이 기질 경우 종사상지위는?
(택시에 관련된 제반비용 및 관리 모두 회사에서 하며 해당 운전자의 연금, 세금, 의료보험 등에 관한 서류상의 내용도 모두 회사에서 관리함)

A28. 매월 선도금을 회사에 주었다 할지라도 이를 자신의 투자로는 볼 수 없고, 회사에서 차량 및 제반 관련사항을 관리한다면 종사상지위는 상용으로 분류

반면, 본인소유의 택시로 회사명의를 빌려서 사업(지입차주)을 하고 일정금액을 그 회사에 주는 경우는 자영자로 분류

※ 지입차량의 운영은 자영자 1인이 사업체로 간주하므로 종사자수는 지입차 소속사업체의 종사자수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1~4인 이하로 처리함

10 취업시기

Q1. 일용직으로 처음 근무하기 시작하여 1년 정도 근무한 후 2001년 1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취업시기는?

A1. 근무시작시기 :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기(종사상 지위가 변경된 시기를 기준).

고용계약형태 : 전환된 종사상 지위(상태)를 기준으로

Q2. 처음 입사 시 임시, 일용직 등으로 입사한 후 시험 등을 통하여 정식직원이 된 경우 일을 시작한 시기는?

A2. 정식직원으로 변동된 시기를 기준으로 조사함

Q3. 일용 건설노무자인 경우 근무시작 시기는?

A3. 일용 건설 노무자로 그 공사현장에 취업하여 근무를 시작한 시기로 조사

※ 업체소속으로 계속 일하면서 현장이 바뀌는 경우는 그 업체에 처음으로 근무한 시기로 조사

Q4. 사립학교 교사로서 여러 학교를 옮기면서 종사한 경우에 취업시기는?

A4. 현 학교 기준으로 근무를 시작한 시기를 조사

※ 동일한 재단인 경우는 처음 시작한 시기를 조사

Q5.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휴직(4년)후 복직했을 경우에 취업시기는?

A5. 휴직전에 처음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시기를 기준으로 조사

Q6. 해고 당한 후 다시 그 직장에 복귀할 경우?

A6. 이직 후 재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직장에 복귀한 시기를 취업시기로 조사

Q7. 1년 단위로 고용 재계약시 근무시작 시기는?

A7. 처음 입사한 시기를 기준으로 조사

Q8. 인구주택총조사 심사요원으로 일하다 전월밀에 종료되었고, 조사기간에는 통장일을 볼 경우 취업시기는?

A8. 현 직장(일)을 기준으로 취업시기를 조사. 즉 통장일을 처음 시작한 때를 취업시기로 조사

Q9. LG전자에서 회사가 분리되어 LG필립스 소속으로 변경되어 분리되면서 회사성격(일의 내용 등이 바뀜)이 바뀐 경우의 취업시점은?

A9. 회사가 분리, 소속이 변경된 시기를 취업시기로 조사

Q10. 동화기업(합판제조업)에서 청소일을 하는데 청소용역업체와 계약하여 소속이 바뀐 경우?(퇴직금 등 정산)

A10. 전직으로 간주하여 소속업체가 변경된 시기(새로운 청소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시기)를 취업시기로 조사

Q11. 제일제당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였는데 구조 조정하여 생산라인을 다른 기업체(성산기업)에 양도하여 근무처가 바뀐 경우는?

A11. 전직으로 간주하여 다른 기업체에 양도, 변경된 시기를 취업시기로 조사

Q12. 경기은행이 한미은행으로 통합되었지만, 경기은행 파산본부에서 임시직으로 계속 근무할 경우?

A12. 전직이 아닌 것(같은 장소에서 업종 전환시 전직이 아님)으로 간주하여 경기은행에 처음 입사한 시기를 취업시기로 조사

※ 단, 파산 종료 후 소속이 한미은행으로 변경된 경우는 그 변경된 시기를 취업시기로 조사

Q13. 겨울에는 호떡판매, 여름에는 옥수수, 고구마를 째서 판매할 경우 취업시기는?

A13. 일을 처음 시작한 때를 취업시기로 조사

Q14. 목사가 근무하는 교회를 옮긴 경우에 취업시기는?

A14. 현재 소속된 교회에 근무하기 시작한 때를 취업시기로 함

※ 감리교는 발령받아 근무 교회가 변동되나 다른 교파는 그만두고 새로 취업하는 형태를 취함

11 취업시간 및 근로기간

Q1. 학원(사무실)을 개원했으나 수강생이 없어 강의는 하지 않았을 경우 취업시간은?

A1. 학원에 출근하여 전화 받는 등 학원에서 보낸 시간을 취업시간으로 조사

Q2. 병원 의사로 근무 중에 타자에 가서 출장파견근무(1~2개월)를 했을 경우 취업시간은?

A2. 일종의 출장으로 간주하여 조사. 취업시간 등 세부적인 내용 파악이 가능하면 실제대로 조사하고, 불가능시에는 평소근무 시간을 취업시간으로 조사

Q3. 인력시장 등에 나가서 일거리가 생기면 가서 며칠 또는 하루씩 일하는 경우 근로기간 설정여부는?

A3. 『근로기간 정하지 않았음』으로 간주

Q4. 직업소개소, 인력소개업소 등에 등록해 놓고 연락이 오면 가서 며칠 또는 하루씩 일하는 경우 근로기간 설정여부는?

A4. 『근로기간 정하지 않았음』으로 간주

12 가구주

Q1.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가 일시적으로 바뀌는 경우 가구주는?

A1. 일시적으로 가구주의 활동상태가 변경되는 경우는 가구주를 변경하지 않음
※ 가구주 선정기준은 생계를 책임지고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함

Q2. 아버지가 무직이면서 퇴직연금으로 생계를 거의 책임지고 장남의 급여는 개인저축 및 용돈으로 사용되고 소액만을 생활비로 줄 경우 가구주는?

A2.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가계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아버지를 가구주로 조사

Q3. 가구주가 본처, 후처와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었으나 가구주가 병이 들어 완쾌가 힘들어 생계책임이 불가능할 경우의 가구주는?

A3. 본처를 가구주로 조사하고, 후처는 기타 친인척으로 처리

Q4. 무급가족종사자가 가구주가 될 수 있는지? 또한 직장을 다니던 가구주가 자영업을 하기 위해 퇴직하여 쉬는 동안 식당을 하는 배우자의 일을 무급으로 도와줄 경우의 가구주는?

A4. 연금생활자가 배우자의 일을 18시간이상 도와주고 있는 경우는 무급가족종사자에 해당되며 또한 가구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으면 가구주로 처리, 가구주의 무급가족종사자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가구주를 배우자로 교체하고, 3개월 이내에 자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면 계속 가구주로 조사

부록1**직산업 분류표****표준 산업분류****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01 농업****011 작물 재배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기타 작물 재배업
시설작물 재배업

012 축산업

소 사육업
양돈업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기타 축산업

013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014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5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02 임업****020 임업**

영림업
벌목업
임산물 채취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03 어업**031 어로 어업****032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B. 광업(05~08)****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051 석탄 광업****052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06 금속 광업****061 철 광업****062 비철금속 광업****07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071 토사석 광업**

석회석 및 점토 광업
석재, 쇄석 및 모래, 자갈 채취업

072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화학용 및 비료원료용 광물 광업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080 광업 지원 서비스업****C. 제조업(10~34)****10 식료품 제조업****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도축업**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4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105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106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곡물 가공품 제조업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7 기타 식품 제조업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설탕 제조업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8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11 음료 제조업****111 알코올음료 제조업**

발효주 제조업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12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12 담배 제조업****120 담배 제조업****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131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132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직물 직조업

직물제품 제조업

133 편조 원단 제조업**134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9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끈, 로프, 망 및 끈 가공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1 봉제의복 제조업**

겉옷 제조업

속옷 및 잠옷 제조업

한복 제조업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42 모피제품 제조업**143 편조의복 제조업****144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51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모피 및 가죽 제조업
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152 신발 및 신발 부분품 제조업
신발 제조업
신발 부분품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61 제재 및 목재 가공업
162 나무제품 제조업
박판, 합판 및 강화 목제품 제조업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목재 상자, 드럼 및 적재판 제조업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163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1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펄프 제조업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2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골판지 및 골판지 가공제품 제조업
종이포대, 판지상자 및 종이용기 제조업
17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1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인쇄업
인쇄관련 산업
182 기록매체 복제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1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192 석유 정제품 제조업
원유 정제처리업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01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기초 유기 화학 물질 제조업
기초 무기 화학 물질 제조업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202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3 비료, 농약 및 살균·살충제 제조업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살균·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5 화학섬유 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1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 의약품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한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1 고무제품 제조업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생산업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2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 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판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산업용 유리 제조업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232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비내화 일반 도자기 제조업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23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석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 차 금속 제조업
241 1 차 철강 제조업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철강관 제조업
기타 1 차 철강 제조업
242 1 차 비철금속 제조업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기타 1 차 비철금속 제조업
243 금속 주조업
철강 주조업
비철금속 주조업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5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산업용 난방 보일러, 금속탱크 및 유사 용기 제조업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252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9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 야금 제품 제조업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 철물 제조업
금속파스너, 스프링 및 금속선 가공제품
그 외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262 전자부품 제조업

표시장치 제조업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3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제조업
컴퓨터 제조업
기억 장치 및 주변 기기 제조업
264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5 영상 및 음향 기기 제조업
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 기기 제조업
266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1 의료용 기기 제조업
방사선 장치 및 전기식 진단기기 제조업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2 측정 시험 향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측정, 시험, 향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273 사진장비 및 광학 기기 제조업
274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전기 공급 및 제어 장치 제조업
282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83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4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조명장치 제조업
285 가정용 기기 제조업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289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유압기기 제조업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텨,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포함
베어링,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 취급장비
냉각, 공기 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제조업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산업용 로봇 제조업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30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및 전기장치 제조업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304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2 철도장비 제조업
313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319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전투용 차량 제조업
모터사이클 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20 가구 제조업
침대 및 내장가구 제조업
목재가구 제조업
기타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331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332 악기 제조업
333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4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39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가발, 장식용품 및 전시용 모형 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제품 제조업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40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일반 기계류 수리업
전기·전자 및 정밀 기기 수리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1 전기업
발전업
송전 및 배전업
전기 판매업
352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3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36 수도업
360 수도업

생활용수 공급업
산업용수 공급업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7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하수 및 폐수 처리업
분뇨 처리업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2 폐기물 처리업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지정 폐기물 처리업
건설 폐기물 처리업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383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F. 건설업(41~42)
41 종합 건설업
411 건물 건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412 토목 건설업
지반조성 건설업
토목시설물 건설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421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422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423 전기 및 통신 공사업
전기 공사업
통신 공사업
424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
유리 및 창호 공사업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425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426 건설장비 운영업
G. 도매 및 소매업(45~47)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51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신제품 판매업
중고 자동차 판매업
452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신제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453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61 상품 중개업

46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
463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가공식품 도매업
음료 및 담배 도매업
464 생활용품 도매업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신발 도매업
생활용 가구, 조명기구 및 비전기식 생활용 기기 도매업
의약품, 의료용품 및 화장품 도매업
생활용 포장·위생용품, 문구용품 및 출판 인쇄물 도매업
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가방, 시계, 안경 및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465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가전제품,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466 건축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일반 건축자재 도매업
냉·난방장치 및 철물, 수공구 도매업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467 기타 전문 도매업
연료, 연료용 광물 및 관련제품 도매업
1 차 금속제품 및 금속광물 도매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방직용 섬유, 실 및 직물 도매업
종이 원지, 판지, 종이상자 도매업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468 상품 종합 도매업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471 종합 소매업
대형 종합 소매업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면세점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472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식료품 소매업
음료 및 담배 소매업
473 가전제품 및 정보 통신장비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기 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47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신발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475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철물, 공구,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업
가구 소매업
그 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476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서적 및 문구용품 소매업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운동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477 연료 소매업

운송장비용 연료 소매업

가정용 연료 소매업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사무용 기기, 안경, 사진장비 및 정밀기기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예술품, 기념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중고 상품 소매업

479 무점포 소매업

통신 판매업

노점 및 유사 이동 소매업

기타 무점포 소매업

H. 운수 및 창고업(49~52)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1 철도 운송업

492 육상 여객 운송업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493 도로 화물 운송업

494 소화물 전문 운송업

495 파이프라인 운송업

50 수상 운송업

501 해상 운송업

외항 운송업

내항 운송업

기타 해상 운송업

502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51 항공 운송업

511 항공 여객 운송업

512 항공 화물 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21 보관 및 창고업

529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화물 취급업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55 숙박업

551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9 기타 숙박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561 음식점업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관 구내식당업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562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주점업

비알코올 음료점업

J. 정보통신업(58~63)

58 출판업

58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서적 출판업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91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592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60 방송업

601 라디오 방송업

602 텔레비전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1 우편 및 통신업

611 공영 우편업

612 전기 통신업

유선 통신업

무선 및 위성 통신업

기타 전기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3 정보서비스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뉴스 제공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64~66)

64 금융업

641 은행 및 저축기관

중앙은행

일반은행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642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649 기타 금융업

여신 금융업

그 외 기타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51 보험업

생명보험업

순해 및 보증보험업

사회보장보험업

652 재보험업
653 연금 및 공제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661 금융 지원 서비스업
금융시장 관리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662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업(68)
68 부동산업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682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70 연구개발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공학 연구개발업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 전문서비스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3 광고업
광고 대행업
기타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 회사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회사본부
경영 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716 기타 전문 서비스업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721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측량, 지질조사 및 지도 제작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2 전문디자인업
733 사진 촬영 및 처리업
739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2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743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고용 알선업
인력 공급업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무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761 운송장비 임대업
자동차 임대업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762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763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764 무형재산권 임대업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84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1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일반 공공 행정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842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노동 및 산업 진흥 행정
843 외무 및 국방 행정
외무 행정
국방 행정
844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845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85)
85 교육 서비스업
851 초등 교육기관
유아 교육기관
초등학교
852 중등 교육기관
일반 중등 교육기관
특성화 고등학교
853 고등 교육기관
854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및 대안학교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대안학교
855 일반 교습학원
856 기타 교육기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사회교육시설
직원 훈련기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그 외 기타 교육기관
857 교육 지원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86 보건업
861 병원
862 의원
863 공중 보건 의료업
869 기타 보건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심신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보육시설 운영업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0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자영 예술가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기타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911 스포츠 서비스업
경기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94 협회 및 단체
941 산업 및 전문가 단체
산업 단체
전문가 단체
942 노동조합
949 기타 협회 및 단체
종교 단체
정치 단체
시민운동 단체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951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통신장비 수리업
952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953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미용 및 미용업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969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세탁업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재화 및 서비스 생산 활동(97~98)
97 가구 내 고용활동
970 가구 내 고용활동
98 자가 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 활동
981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982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99)
99 국제 및 외국기관
990 국제 및 외국기관

표준 직업분류

1. 관리자	
11	공공 기관 및 기업 고위직
111	의회 의원 · 고위 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
112	기업 고위 임원
12	행정 · 경영 지원 및 마케팅 관리직
121	행정 및 경영 지원 관리자 정부행정 관리자 경영 지원 관리자
122	마케팅 및 광고 · 홍보 관리자
13	전문 서비스 관리직
131	연구 · 교육 및 법률 관련 관리자 연구 관리자 교육 관리자 법률 · 경찰 · 소방 및 교도 관리자
132	보험 및 금융 관리자
133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보건 의료 관련 관리자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134	문화 · 예술 관련 관리자
135	정보 통신 관련 관리자
139	기타 전문 서비스 관리자
14	건설 · 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141	건설 · 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 전기 · 가스 및 수도 관련 관리자 제품 생산 관련 관리자
149	기타 건설 · 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15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
151	판매 및 운송 관리자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 운송 관련 관리자
152	고객 서비스 관리자 숙박 · 여행 · 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 음식 서비스 관련 관리자
153	환경 ·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159	기타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211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전문가 생명과학 연구원 자연과학 연구원
212	인문 및 사회과학 전문가 인문과학 연구원 사회과학 연구원
213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시험원 생명과학 시험원 농림 · 어업 관련 시험원 자연과학 시험원

22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22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및 연구원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22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컴퓨터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웹 개발자 기타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223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 데이터 전문가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정보 보안 전문가 기타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
224	정보 시스템 및 웹 운영자 정보 시스템 운영자 웹 운영자
225	통신 및 방송 송출 장비 기사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31	건축 · 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건축가 건축공학 기술자 토목공학 기술자 조경 기술자 도시 및 교통 관련 전문가 측량 및 지리 정보 전문가 건설자재 시험원
232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화학공학 시험원
233	금속 · 재료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금속 · 재료 공학 연구원 및 기술자 금속 및 재료 공학 시험원
234	전기 · 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전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 및 전자공학 시험원
235	기계 · 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기계 및 로봇공학 시험원
236	소방 · 방재 기술자 및 안전 관리원 방재 기술자 및 연구원 소방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소방공학 시험원 산업 안전 및 위험 관리원 보건 위생 및 환경 검사원 비파괴 검사원
237	환경공학 · 가스 · 에너지 기술자 및 시험원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가스 · 에너지 기술자 및 연구원 환경공학 시험원 가스 및 에너지 시험원
238	항공기 · 선박 기관사 및 관제사 항공기 조종사 선장 · 항해사 및 도선사 관제사
239	기타 공학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섬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식품공학 시험원 섬유공학 시험원 제도사 기타 공학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24	보건 ·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41	의료 진료 전문가 전문 의사 일반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242	약사 및 한약사
243	간호사
244	영양사
245	치료 · 재활사 및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재활공학 기사 물리 및 작업 치료사 임상심리사 기타 치료 · 재활사 및 의료기사
246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 응급 구조사 위생사 안경사 의무 기록사 간호조무사 안마사
247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직업상담사 상담 전문가 청소년 지도사 시민 단체 활동가 기타 사회복지 관련 종사원
248	종교 관련 종사자 성직자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251	대학교수 및 강사 대학교수 대학 시간강사
252	학교 교사 중 · 고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 특수교육 교사
253	유치원 교사
254	문리 · 기술 및 예능 강사 문리 및 어학 강사 컴퓨터 강사 기술 및 기능계 강사 예능 강사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 기타 문리 · 기술 및 예능 강사
259	기타 교육 전문가 장학관 · 연구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대학 교육 조교 기타 교사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261	법률 전문가 판사 및 검사 변호사 법무사 및 집행관 변리사 기타 법률 전문가
262	행정 전문가 정부 및 공공 행정 전문가
27	경영 · 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271	인사 및 경영 전문가 인사 및 노사 관련 전문가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경영 및 진단 전문가
272	금융 및 보험 전문가 투자 및 신용 분석가 자산 운용가 보험 및 금융 상품 개발자 증권 및 외환 딜러 손해 사정사 기타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273	상품 기획 · 홍보 및 조사 전문가 상품 기획 전문가 여행 상품 개발자 광고 및 홍보 전문가 조사 전문가 행사 기획자
274	감정 · 기술 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감정 관련 전문가

	해외 영업원
	기술 영업원
	상품 중개인 및 경매사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사
	기타 기술 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원
28	문화 · 예술 · 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281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작가 출판물 전문가 기자 및 언론 관련 전문가 번역가 및 통역가
282	학예사 · 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 학예사 및 문화재 보존원 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
283	연극 · 영화 및 영상 전문가 감독 및 기술 감독 배우 및 모델 아나운서 및 리포터 촬영기사 음향 및 녹음 기사 영상 · 녹화 및 편집 기사 조명기사 및 영사기사 기타 연극 · 영화 및 영상 관련 종사원
284	시각 및 공연 예술가 화가 및 조각가 사진기자 및 사진가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 국악 및 전통 예능인 지휘자 · 작곡가 및 연주가 가수 및 성악가 무용가 및 안무가 기타 시각 및 공연 예술가
285	디자이너 제품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실내장식 디자이너 시각 디자이너 미디어 콘텐츠 디자이너
28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스포츠 감독 및 코치 직업 운동선수 경기 심판 및 경기 기록원 기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287	식문화 관련 전문가 주방장 및 요리 연구가
288	문화 · 예술 관련 기획자 및 매니저 공연 · 영화 및 음반 기획자 연예인 및 스포츠 매니저
	3. 사무 종사자
3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11	행정 사무원
	조세행정 사무원 관세행정 사무원 병무행정 사무원 국가 및 지방 행정 사무원 공공행정 사무원
312	경영 관련 사무원 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 인사 및 교육 · 훈련 사무원 자재 관리 사무원 생산 및 품질 관리 사무원 무역 사무원 운송 사무원 총무 사무원 및 대학 행정조교
313	회계 및 경리 사무원 회계 사무원 경리 사무원
314	비서 및 사무 보조원 비서 전산 자료 입력원 및 사무 보조원
32	금융 사무직
320	금융 사무 종사자 출납 창구 사무원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 은행 사무원 증권 사무원 수금원 및 신용 추심원 기타 금융 사무원
33	법률 및 감사 사무직
330	법률 및 감사 사무 종사자 법률 관련 사무원 감사 사무원
39	상담 · 안내 · 통계 및 기타 사무직
391	통계 관련 사무원
392	여행 · 안내 및 접수 사무원 여행 사무원 안내 · 접수원 및 전화교환원
399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 고객 상담 및 모니터 요원 기타 사무원
	4. 서비스 종사자
41	경찰 · 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411	경찰 · 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경찰관 및 수사관 소방관 소년원 학교 교사 및 교도관
412	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자 경호원 청원경찰 시설 및 특수 경비원 기타 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원
42	돌봄 · 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421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돌봄 서비스 종사원
	보육 및 교사 보조 서비스 종사원
	기타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원
422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이용사
	미용사
	피부 및 체형 관리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및 분장사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원
423	혼례 및 장례 종사자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혼례 종사원
	장례 상담원 및 장례 지도사
429	기타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 종사자
	반려동물 미용 및 관리 종사원
	점술가 및 민속신앙 종사원
	개인 생활 서비스 종사원
43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431	운송 서비스 종사자
	항공기 객실 승무원
	선박 및 열차 객실 승무원
432	여가 서비스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원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
	오락시설 서비스 종사원
	기타 여가 서비스 종사원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441	조리사
	한식 조리사
	중식 조리사
	양식 조리사
	일식 조리사
	음료 조리사
	기타 조리사
442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바텐더
	웨이터
	기타 음식 서비스 종사원
5. 판매 종사자	
51	영업직
510	영업 종사자
	자동차 영업원
	제품 및 광고 영업원
	보험 모집인 및 투자 권유 대행인
	대출 및 신용카드 모집인
52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521	매장 판매 종사자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원
	상점 판매원
	매표원 및 복권 판매원

522	매장 계산원 및 요금 정산원
	상품 대여 종사자
	상품 대여원
53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531	통신 관련 판매직
	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판매원
	온라인 쇼핑 판매원
	텔레마케터
532	방문 및 노점 판매 관련직
	방문 판매원
	노점 및 이동 판매원
	홍보 도우미 및 판촉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61	농·축산 숙련직
611	작물 재배 종사자
	곡식작물 재배원
	채소 및 특용작물 재배원
	과수작물 재배원
612	원예 및 조경 종사자
	원예작물 재배원
	조경원
613	축산 및 사육 관련 종사자
	낙농업 관련 종사원
	가축 사육 종사원
	기타 사육 관련 종사원
62	임업 숙련직
620	임업 관련 종사자
	조림·산림경영인 및 벌목원
	임산물 채취 및 기타 임업 관련 종사원
63	어업 숙련직
630	어업 관련 종사자
	양식원
	어부 및 해녀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1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710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제빵사 및 제과원
	떡 제조원
	정육가공원 및 도축원
	식품 및 담배 등급원
	김치 및 밑반찬 제조 종사원
	기타 식품가공 관련 종사원
72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721	섬유 및 가죽 관련 기능 종사자
	패턴사
	재단사
	재봉사
	제화원
	기타 섬유 및 가죽 관련 기능 종사원
722	의복 제조 관련 기능 종사자
	한복 제조원

	양장 및 양복 제조원
	모피 및 가죽 의복 제조원
	의복 · 가죽 및 모피 수선원
	기타 의복 제조 관련 기능 종사원
73	목재 · 가구 · 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730	목재 · 가구 · 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 종사자
	목제품 제조 관련 종사원
	가구 제조 및 수리원
	악기 제조 및 조율사
	간판 제작 및 설치원
74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741	금형 · 주조 및 단조원
	금형원
	주조원
	단조원
742	제관원 및 판금원
	제관원
	판금원
743	용접원
75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751	자동차 정비원
752	운송장비 정비원
	항공기 정비원
	선박 정비원
	철도 기관차 및 전동차 정비원
	기타 운송장비 정비원
753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승강기 설치 및 정비원
	물품 이동 장비 설치 및 정비원
	냉동 · 냉장 · 공조기 설치 및 정비원
	보일러 설치 및 정비원
	건설 · 광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농업용 · 기타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7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761	전기 ·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사무용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기타 전기 ·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762	전기공
	산업 전기공
	내선 전기공
	외선 전기공
77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771	정보 통신기기 설치 및 수리원
	컴퓨터 설치 및 수리원
	이동전화기 수리원
	기타 정보 통신기기 설치 및 수리원
772	방송 · 통신장비 관련 설치 및 수리원
	방송 관련 장비 설치 및 수리원
	통신 관련 장비 설치 및 수리원

	통신 · 방송 · 인터넷케이블 설치 및 수리원
78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781	건설구조 관련 기능 종사자
	강구조물 가공원 및 건립원
	경량 철골공
782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
	철근공
	콘크리트공
	건축 석공
	건축 목공
	조적공 및 석재 부설원
	기타 건설 관련 기능 종사원
783	건축 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미장공
	방수공
	단열공
	바닥재 시공원
	도배공 및 유리 부착원
	건축 도장공
	새시 조립 및 설치원
	기타 건축 마감 관련 기능 종사원
784	채굴 및 토목 관련 기능 종사자
	광원 · 채석원 및 석재 절단원
	철로 설치 및 보수원
	기타 채굴 및 토목 관련 종사원
79	기타 기능 관련직
791	공예 및 귀금속 세공원
	공예원
	귀금속 및 보석 세공원
792	배관공
	건설 배관공
	공업 배관공
	기타 배관공
799	기타 기능 관련 종사자
	배관 세정원 및 방역원
	기타 기능 관련 종사원
	8. 장치 ·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81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811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
	제분 및 도정 관련 기계 조작원
	곡물가공 제품 기계 조작원
	육류 · 어패류 및 낙농품 가공 기계 조작원
	과실 및 채소 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
812	음료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819	기타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
82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821	섬유 제조 및 가공기계 조작원
	섬유 제조 기계 조작원
	표백 및 염색 관련 기계 조작원
822	직물 · 신발 관련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직조기 및 편직기 조작원

	신발 제조기 조작원 및 조립원	철도운송 관련 종사원
	기타 직물·신발 관련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23	세탁 관련 기계 조작원	873 자동차 운전원
83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택시 운전원 버스 운전원
831	석유 및 화학물 가공 장치 조작원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
	석유 및 천연가스 제조 관련 제어 장치 조작원	기타 자동차 운전원
	화학물 가공 장치 조작원	874 물품 이동 장비 조작원
	기타 석유 및 화학물 가공 장치 조작원	87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832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876 선박 승무원 및 관련 종사자
	화학제품 생산기 조작원	선박 승무원 및 관련 종사원
	타이어 및 고무제품 생산기 조작원	88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플라스틱제품 생산기 조작원	881 상하수도 처리 장치 조작원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조립원	882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조작원
8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89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841	주조 및 금속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	891 목재 및 종이 관련 기계 조작원
	주조기 조작원	목재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
	단조기 조작원	가구 조립원
	용접기 조작원	펄프 및 종이 제조 장치 조작원
	금속가공 관련 제어 장치 조작원	종이제품 생산기 조작원
	금속가공 기계 조작원	기타 목재 및 종이 관련 기계 조작원
	제관기 조작원	892 인쇄 및 사진 현상 관련 기계 조작원
	판금기 조작원	인쇄기 조작원
842	도장 및 도금기 조작원	사진 인화 및 현상기 조작원
	도장기 조작원	899 기타 기계 조작원
	도금 및 금속 분무기 조작원	9. 단순 노무 종사자
843	비금속제품 생산기 조작원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유리 제조 및 가공기 조작원	91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점토제품 생산기 조작원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시멘트 및 광물제품 제조기 조작원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광석 및 석제제품 가공기 조작원	921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기타 비금속제품 관련 생산기 조작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85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922 배달원
851	금속 공작 기계 조작원	우편집배원 택배원
852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음식 배달원
853	자동 조립라인 및 산업용로봇 조작원	기타 배달원
854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자동차 조립원	930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자동차 부품 조립원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운송장비 조립원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일반기계 조립원	941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855	금속기계 부품 조립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8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942 건물 관리원 및 검표원
861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건물 관리원 검표원
862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863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장치 조작원	951 가사 및 육아 도우미
	전기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가사 도우미 육아 도우미
	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952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864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8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871	철도 및 전동차 기관사	
872	철도운송 관련 종사자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방 보조원

953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주유원

기타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991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원

992 계기·자판기 및 주차 관리 종사자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자동판매기 관리원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

999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구두 미화원

세탁원 및 다림질원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10. 군인

부록2

조사표



2022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ID

제383004호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의 면접원 ○○○입니다.

저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의뢰로 ‘2022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정부승인 통계조사이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해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다음의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모든 응답은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될 뿐 개인 정보가 외부로 알려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조사결과는 향후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 성장을 뒷받침하는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주 관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 031-728-7151

e-mail: survey@kead.or.kr

http://www.kead.or.kr

[대 행 기 관]

한국리서치

☎ 02-3014-1056

담당 연구원 e-mail: kimbm@hrc.co.kr

http://www.hrc.co.kr

통계법 33조 (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응답자 성명				전화번호	()	-		
				휴대폰 번호	()	-		
응답자 주소	시(도)	구(시/군)	동(읍/면)	구주소	번지	호 (아파트)	동	호 (아파트)
				신주소	,	동	호 (동)	
대리 응답자 성명				응답자와의 관계				
대리 응답 이유	<input type="checkbox"/> 1)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input type="checkbox"/> 2) 기타(적을 것 : _____)							
답례품 수령 확인	(인)							

A. 인적사항

A1)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자 2. 여자

A2)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십니까? (※주민등록 기준)

 년 월 일

A3) 최종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1. 무학 → A5)로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A3-1) 최종 학교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일반학교 일반학급
2. 일반학교 특수학급
3. 특수학교

5. 3년제 이하 대학
6. 4년제 이상 대학
7. 대학원(석사)
8. 대학원(박사)

A3-2) 대학의 전공계열은 무엇입니까?
 1. 교육 - 유아교육과, 교육학과, 국어교육학과, 특수교육과, 체육교육과, 미술교육과 등
2. 예술 - 미술학과, 공예학과, 음악학과, 무용학과, 영상학과, 연극영화과 등
3. 인문학 및 어문학 - 국문학과, 영문학과, 시학과, 철학과, 윤리학과, 신학과 등
4. 사회과학, 언론 및 정보학 - 경제학과, 정치학과, 심리학과, 사회학과, 문화정보학과 등
5. 경영, 행정 및 법학 - 경영학과, 행정학과, 범죄학과 등
6.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 - 수학과, 생물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천문학과, 통계학과 등
7. 정보통신기술 - 멀티미디어학과, 정보과학과, IT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보안학과 등
8. 공학, 제조 및 건설 - 전기공학과, 환경공학과, 재료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건축학과, 물리공학 등
9. 농림어업 및 수의학 - 농업학과, 수산공학과, 축산학과, 원예경학과, 수의학과 등
10. 보건 - 의예과, 한의예과, 약학과, 간호학과 등
11. 복지 - 보육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학과 등
12. 서비스 - 가정학과, 미용학과, 호텔관광학과, 외식학과, 스포츠학과, 국방학과 등

A4) 마지막으로 다녔던 학교의 졸업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1. 졸업 : _____년도 A4-1) 졸업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2. 재학
3. 중퇴
4. 휴학
5. 수료
1. 2012년 이전 졸업
2. 2013년
3. 2014년
4. 2015년
5. 2016년
6. 2017년
7. 2018년
8. 2019년
9. 2020년
10. 2021년
11. 2022년

6. 검정고시 자격 취득

A5) 결혼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1. 미혼 2. 유배우(결혼/동거) 3. 사별/이혼/별거

B. 장애정보

B1)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장애유형은 어떻게 됩니까?

주된 장애 : 번 중복 장애 : 번

- | | | |
|-----------|-----------|-------------|
| 01. 지체장애 | 06. 지적장애 | 11. 흐름기장애 |
| 02. 뇌병변장애 | 07. 자폐성장애 | 12. 간장애 |
| 03. 시각장애 | 08. 정신장애 | 13. 안면장애 |
| 04. 청각장애 | 09. 신장장애 | 14. 장루·요루장애 |
| 05. 언어장애 | 10. 심장장애 | 15. 뇌전증장애 |

B2) 주된 장애는 몇 살 때 발생하였습니까?

1. 출생 전(선천적) 2. 출생 시 3. 출생 후 : 만 _____세

B2-1) 정확한 발생시기를 모를 경우, 대략 언제쯤 장애가 발생하였는지 응답

- | | |
|----------------|-------------|
| 1. 출생 후 ~ 만 3세 | 6. 만 30~39세 |
| 2. 만 4~6세 | 7. 만 40~49세 |
| 3. 만 7~14세 | 8. 만 50~59세 |
| 4. 만 15~19세 | 9. 만 60세 이상 |
| 5. 만 20~29세 | |

B3) 그럼 이 장애가 발생한 가장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1. 질환
2. 교통사고
3. 사고(교통사고 외)
4. 산업재해
5. 국가유공(전상)
6. 원인불명

C. 경제활동상태 판별

■ 본 조사에서 지난 주는 2022. 5. 15.(일)~5. 21.(토)까지, 지난 4주는 2022. 4. 24.(일)~5. 21.(토)까지를 말함

C1) 지난 주에 본인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습니까?	C2) 지난 주에, 함께 사는 가족의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1시간 이상 일하였습니까?
1. 예 → (D1번으로) 2. 아니오	1. 예 → (D2번으로) 2. 아니오
C3) 지난 주에 일을 하자는 않았지만 직장(일)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지난 주 일시휴직 상태였는지를 의미)	C4) 지난 4주내에 직장(일)을 구해 보았습니까? (1개월 이내 취업예정자는 '구해 보았음'에 해당됩니다)
◆ 1. 있었음 ↳ C3-1) 왜 지난 주에 일하지 않았습니까? 1. 일시적 병, 사고 2. 휴가·연가 3. 교육·훈련 4. 육아 5. 가족적 이유 6. 노사분규 7. 사업부진·조업중단 8. 기타(적을 것 : _____) → (C4번으로)	1. 구해 보았음 → (E1번으로) 2. 구해 보지 않았음 → (F1번으로)

D. 취업자

D1) 지난 주에 주된 일 이외에 다른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D2) 평소 1주 동안 총 몇 시간 일합니까? 주된 일과 그 외 일들을 포함해서 응답해 주세요.
1. 있었음 2. 없었음	1. 36시간 미만 2. 36~52시간 → (D4번으로) 3. 52시간 초과 → (D4번으로)
D3) 평소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D4) 지난 주에 실제 몇 시간 일하였습니까?
1. 정규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 2. 장애관련 이유 3. 장애 이외 건강문제 4. 육아 5. 가사 6. 통학(온라인 등교 등) 7. 본인이 원해서 8.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 9. 기타(적을 것 : _____)	1. 주된 일 : <input type="text"/> 시간 2. 다른 일 : <input type="text"/> 시간 3. 총 계 : <input type="text"/> 시간 ↳ D4-1) <input type="checkbox"/> 1. 1~17시간 무급가족종사자 → (C3번으로) <input type="checkbox"/> 2. 36시간 미만 → (D5번으로) <input type="checkbox"/> 3. 36~52시간 → (D6번으로) <input type="checkbox"/> 4. 52시간 초과 → (D6번으로)
D5) 지난 주에 36시간 미만 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D6) 지난 주에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원하였습니까? 또는 다른 일을 더하거나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다른 일(직장)으로 바꾸기 원하였습니까?
1. 평소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함 2. 장애 이외 일시적 병, 사고 3. 장애 관련 이유 4. 날씨가 좋지 않아서 5. 휴가 · 연가 · 공휴일 6. 교육 · 훈련 7. 육아 8. 가족적 이유 9. 노사분규 10.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어서 11. 사업부진, 조업중단 12. 기타(적을 것 : _____)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음 2. 현재 하고 있는 일 이외에 다른 일도 하고 싶음 → (D7번으로) 3.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일(직장)로 바꾸고 싶음 4.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 5.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시간을 줄이고 싶음 → (D9번으로)
D7) 지난 주에, 일이 더 주어졌거나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다른 일(직장)이 주어졌다면 할 수 있었습니까?	D8) 지난 4주 동안, 더 많은 시간 일하기 위해 현재 하는 일을 더 찾아보거나 다른 일(직장)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1. 있었음 2. 없었음

■ D9)에서 D33)까지는 '주된 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D9) 지난 주에 어디에서 일하였습니까?

- ◆ D9-1-1) 사업체(직장)명 : _____
- ◆ D9-1-2) 사업체(직장)이 주로 하는일 : _____ □□

◆ D9-2) 지난 주의 직장(사업체)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1.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과 같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2. 공공근로, 복지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과 같은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3. 공무원, 교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일자리
4. 그 외 일반사업체

◆ D9-3) 지난 주의 직장(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 | | |
|-----------|--------------|
| 1. 1~4인 | 6. 100~299인 |
| 2. 5~9인 | 7. 300~499인 |
| 3. 10~29인 | 8. 500~999인 |
| 4. 30~49인 | 9. 1,000인 이상 |
| 5. 50~99인 | |

D10) 지난 주에 직장(사업체)에서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 ◆ D10-1-1) 내가 한 일 : _____
- ◆ D10-1-2) 직명(직위) : _____ □□□

D11) 지난 주의 직장(일)은 언제부터 시작하였습니까?

_____ 년 _____ 월 (모를 시 범주형으로 응답)

◆ 정확한 연도를 모를 경우, 대략 언제쯤인지 응답

- | | |
|---------------|---------------|
| 1. ~2002년 | 5. 2013~2015년 |
| 2. 2003~2006년 | 6. 2016~2018년 |
| 3. 2007~2009년 | 7. 2019~2021년 |
| 4. 2010~2012년 | |

◆ 정확한 월을 모를 경우, 대략 언제쯤인지 응답

- | | |
|--------------|---------------|
| 1. 봄(3월~5월) | 3. 가을(9월~11월) |
| 2. 여름(6월~8월) | 4. 겨울(12월~2월) |

D12) 지난 주 직장(일)에서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 임금근로자

1. 상용근로자
2. 임시근로자
3. 일용근로자

→ (D13번으로)

◆ 비임금근로자

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6. 무급가족종사자

→ (D26번으로)

D13) 지난 주의 직장(일)에 취업할 때 이 직장(일)을 어떤 경로로 알아보았습니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워크투게더 포함)
2.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워크넷 포함)
3.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 등)
4.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5. 민간 취업알선기관(복지관 제외)
6. 대중매체(신문, 인터넷, 광고 등)
7. 학교, 학원
8. 부모(친척), 친구, 동료 등 지인
9. 기타(적을 것:)

D14) 지난 주의 직장(일)에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였습니다?

◆ 1. 정했음

↳ D14-1) 고용계약기간은 얼마입니까?

1. 1개월 미만
2. 1개월 이상~1년 미만
3. 1년
4. 1년 초과~2년 이하
5. 2년 초과~3년 이하
6. 3년 초과

◆ 2. 정하지 않았음(※ 정년은 '정하지 않았음'에 해당됨) → (D16번으로)

→ (D15번으로)

D15) (근로기간을 정했다면) 지난 주 일자리의 현재 계약(기간)은 반복·갱신된 것입니까?

1. 예
2. 아니오(최초 계약기간 내인 경우만 해당)

D16)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지난주 일자는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주씩 일하는 형태입니까?

(예 : 건설일용근로자,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1. 예 → (D20번으로)
2. 아니오

D17) 회사가 아주 어려워져서 폐업 또는 고용조정을 하거나 귀하가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원하는 한 계속 그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까?

◆ 1. 예

↳ D17-1) “예”(계속 다닐 수 있음)로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하였으므로
2.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고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3. 둑시적인 고용관행(정년)에 의해

◆ 2. 아니오

→ (D20번으로)

D18) 지난 주의 직장(일)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1. 1년 이하(□□ 개월)
2. 1년 초과~2년 이하(□□년 □□ 개월)
3. 2년 초과

D19) 그렇게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2. 둑시적·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3. 사업주가 그만두라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임시직 등)으로 채용되었으므로
4. 현재 하는 업무(프로젝트)가 끝나기 때문에
5. 현재의 일자리에서 전에 일하던 사람이 복귀하기 때문에
6. 특정 계절동안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7. 적성·근로조건·능력 등의 이유로 다른 일자리를 찾을 예정이므로
8. 규정·관행상 퇴직하는 연령에 도달하기 때문에
9. 장애 때문에 일하기가 힘들어져서
10. 학업·가족부양·건강 등의 이유로
11. 직장의 경영상 이유 때문에
12. 기타(적을 것 : _____)

D20) 지난 주의 주된 직장(일)의 취업형태는 어떤 형태로 정해진 것입니까?

1. 전일제 근로 → (D20-3으로)
2. 시간제 근로

◆ D20-1) 그렇다면 시간제 근로를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임금 등 다른 근로조건에 만족해서
2. 전일제 일자리를 원해도 구할 수 없어서
3. 가사로 인해
4. 육아, 자녀/가족 돌봄으로 인해
5. 장애로 인해 오랜 시간 근무할 수 없어서
6. 장애 이외의 건강문제로 오랜 시간 근무할 수 없어서
7. 직장경험, 경력 등을 쌓아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8. 학업, 취업준비, 직업훈련 등과 병행하기 위해
9. 다른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를 같이 하려고
10. 용돈벌이, 소일거리 정도를 찾아서
11. 기타(적을 것: _____)

◆ D20-2) 전일제로 전환되길 원하십니까?

1. 원함
2. 원하지 않음

◆ D20-3) 그 직장(일)에서 1주 평균 며칠, 몇 시간 일하십니까? 초과근로 등을 포함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1주일 평균 근로일수 □ 일

1주일 평균 근로시간 □□□ 시간

☞ (D20번 2.시간제 근로는 D21번으로)

◆ D20-4) 그 직장(일)에서 근로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근로시간단축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단역적 근무제, 자택 및 원격근무제 등)

1. 직장(일)에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활용하고 있음 → (D21번으로)
2. 직장(일)에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활용하지 않음
3. 직장(일)에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지 않음

◆ D20-5) 향후 직장(일)에서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면 활용하기를 원합니까? (근로시간단축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단역적 근무제, 자택 및 원격근무제 등)

1. 활용하기를 원함
2. 활용하기를 원하지 않음

D21) 임금(급여)을 어느 곳에서 받았습니까?

1. 지난 주 일한 곳
2. 파견업체
3. 용역업체

**D22) 주된 직장(일)에서 받은 월평균 임금(세금공제 전이며, 기본금, 성과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 포함)은 얼마였습니까?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월평균 만원

D22-1) 정확한 월평균 소득이 기억나지 않으신 경우, 대략 얼마 정도 되는 지요?

- | | |
|-----------------|------------------|
| 1. 50만원 미만 | 5. 200~300만원 미만 |
| 2. 50~100만원 미만 | 6. 300~500만원 미만 |
| 3. 100~150만원 미만 | 7. 500~1000만원 미만 |
| 4. 150~200만원 미만 | 8. 1,000만원 이상 |

D23) 지난 주에 다니던 직장(일)은 개인적으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형태에 해당됩니까? (예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배달기사, 골프장 보조원,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1. 예
2. 아니오

D24) 지난 주에 주로 어떤 장소에서 일하였습니까?

1. 가정에서 (※ 가사도우미, 입주보모, 입주 가정교사 등은 2에 해당됨)
2. 사업장 내 또는 사무실 이외의 지정된 장소에서

[비정규직만 응답]**D25) 지난 주의 일자리 형태로 일하게 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1. 내가 원해서
2. 원하지는 않았지만 비자발적인 사유로

D25-1) 귀하가 그 일자리 형태로 일하게 된 것은 귀하의 장애가 영향을 미쳤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약간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D26) 지난 주에 다음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까?**◆ D26-1) 국민연금 또는 특수직역연금**

- ↳ 111.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11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13.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 (D26-2번 응답 후 종사상 지위에 따라 이동)

12. 아니오 13. 모른다

◆ D26-2) 건강보험

- ↳ 211. 직장가입자 212. 지역가입자 213. 의료수급권자 214. 직장가입피부양자
22. 아니오 23. 모른다

◆ D26-3) 고용보험

- ↳ 31. 예 32. 아니오 33. 모른다

☞ 임금근로자는 D30으로

D27) 귀하가 운영하는(소속된) 사업체의 주된 장소는 어디입니까?

1. 사업장(건물 등)
2. 자기 집(나의 집에서 과외 지도 등)
3. 남의 집(방문과외 등)
4. 거리(노점, 행상, 방문판매, 이동판매 등)
5. 야외 작업현장(논, 밭, 건설 및 토목공사 현장 등)
6. 운송수단(자동차, 트럭, 선박 등)
7. 기타()

☞ 무급가족종사자는 D29로

D28) 현재 이 일자리에서 얻는 순수입은 월평균(세금공제 전) 얼마입니까?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단, 소득이 일시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평균을 내어 응답해 주세요)

1. 월평균 만원
2. 적자(손해)를 보고 있음

D28-1) 정확한 월평균 소득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 | | |
|-----------------|------------------|
| 1. 50만원 미만 | 5. 200~300만원 미만 |
| 2. 50~100만원 미만 | 6. 300~500만원 미만 |
| 3. 100~150만원 미만 | 7. 500~1000만원 미만 |
| 4. 150~200만원 미만 | 8. 1,000만원 이상 |

D29) 현재 사업체(일자리)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1. 1년 이내 확장할 계획임
2. 계속 유지할 계획임
3. 향후 그만둘 계획임
 - ↳ D29-1) 언제 좀 그만 둘 계획이십니까?
 1. 6개월 이내에 그만 둘 계획
 2. 6개월~1년 이내에 그만 둘 계획
 3. 1년 이후에 그만 둘 계획
4. 잘 모르겠음

☞ D32로 이동

[임금근로자만 응답]

D30) 귀하께서 현 일자리(직장)에서 근무할 때 코로나 지속으로 인해 겪었거나, 현재 겪고 있는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코로나 지속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항목만 응답해 주세요.)

근로일, 근로시간	1. 유급휴가(기족돌봄휴가 등), 유급휴직 2. 무급휴가, 무급휴직 3. 근로시간 단축 4. 근로시간 연장
근로형태	5. 재택근무(원격근무) 6. 유연근무(출퇴근 시간 변경 등) 7. 비대면업무 전환(온라인 등)
업무 및 임금	8. 업무량 감소 9. 업무량 증가 10. 업무 변경 11. 임금 삭감 12. 임금 체불 13. 근로자 지원 축소
일자리(직장) 상황 및 고용유지	14. 일자리(직장) 휴업 15. 일자리(직장) 매출·고객 감소 16. 일자리(직장) 직원 감원 17. 재계약, 계약기간 연장 등 실패 18. 퇴사 권고
그 외	19. 기타(적을 것 :) 20. 특별히 없었음

[2021년 5월 이전(5월 포함) 입사한 임금근로자만 응답]

D31) 현재 일자리(직장)에서의 고용안정 정도는 작년 5월(1년 전)에 비해 어떠합니까?

1. 매우 불안해짐
2. 다소 불안해짐
3. 변화 없음
4. 다소 안정적임
5. 매우 안정적임

☞ D34로 이동

[비임금근로자만 응답]

D32) 코로나 지속으로 인해 현 사업체 운영 시 겪었거나, 겪고 있는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코로나 지속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항목만 응답해 주세요.)

1. 매출(소득) 감소
2. 고객 감소
3. 영업(근로)시간 단축(영업제한)
4. 일시휴업 (총 휴업기간 : 1. 1개월 미만 2. 개월)
5. 직원 감원
6. 신규채용 제한
7. 근무(영업)방식 변화(온라인 영업 강화 등)
8. 기타(적을 것 :)
9. 특별히 없었음

[2021년 5월 이전(5월 포함) 창업한 비임금근로자만 응답]

D33) 현재 사업체 운영상황은 작년 5월(1년 전)에 비해 어떠합니까?

1. 매우 어려워짐
2. 다소 어려워짐
3. 변화 없음
4. 다소 나아짐
5. 매우 나아짐

<p>[취업자 응답]</p> <p>D34) 귀하는 근무할 때 마스크를 착용합니까?</p> <p>1. 항상 착용함 2. 착용하기도 하고 착용하지 않기도 함 3. 착용하지 않음</p>	<p>D35) 귀하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입니까? 가장 최근 확진 시기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p> <p>1. 있음 → ███ 년 █ 월 (※ 2019년 12월 0전 응답 불가) 2. 없음 → (D36으로)</p>
<p>[코로나 확진 경험이 있는 경우 응답]</p> <p>D35-1) 귀하는 현재 코로나 증상이나 후유증으로부터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입니까?</p> <p>1. 전혀 회복하지 못했음 2. 회복하지 못한 편임 3. 회복한 편임 4. 완전히 회복하였음</p>	<p>D36) 귀하가 주로 일하는 곳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신체적 위험뿐 아니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적 위험도 고려해서 말씀해 주십시오.</p> <p>1. 매우 위험함 2. 위험한 편임 3. 안전한 편임 4. 매우 안전함</p>
<p>D37) 귀하가 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관련 위험요소를 모두 선택해주세요.</p> <p>1. 정적인 자세, 반복 동작, 무리한 힘의 사용 등 신체적인 활동과 관련된 위험 2. 추락, 감전, 밀폐, 미끄러짐 등 위험장소에서의 작업 3. 프레스기, 분쇄기 등 위험한 기계, 기구 4. 감정 노동, 직무 스트레스, 차별 등 정신적, 심리적 위험 5. 소음, 진동, 고온/저온 등 물리적(환경적) 위험 6. 염소, 산·일칼리류 등을 포함한 화학물질 위험 7. 바이러스, 혈액 등 생물학적 위험 8. 특별히 없음</p>	<p>D38) 귀하의 직장(일자리)에는 산업재해·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안전 설비/장비, 안전 지침/수칙, 안전 지도/교육 등)</p> <p>1.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마련되어 있지 않은 편임 3. 마련되어 있는 편임 4. 잘 마련되어 있음</p>
<p>D39) 귀하는 현재 일자리에서 최근 1년 동안 업무 수행 시 질병이나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일주일 이상의 병가를 필요로 하는 수준의 질병이나 사고를 의미합니다.</p> <p>1. 있었음 2. 없었음</p>	<p>D40) 귀하는 화재 등의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대피나 대응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p> <p>1.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함 2. 상당한 도움이 필요함 3. 일부 도움이 필요함 4. 도움 필요 없음(혼자서도 대피하거나 대응할 수 있음) → (G1로)</p> <p>D40-1) 귀하가 일하는 곳에는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대피나 대응하는 것을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p> <p>1. 있음 2. 없음</p>

☞ 취업자 질문 끝. (G1번으로)

E. 실업자

E-1) 과거 취업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E1) 지난 주에 직장(일)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1. 있었음

2. 없었음 → (F6번으로)

E2) 전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그 일을 그만둔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1. □□ 년 □□ 개월

2. 없었음 → (E7번으로)

E3) 이전 직장(일)을 그만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또는 장애상태의 악화)
2.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건강문제)
3. 기타 개인·가족 관련 사유(결혼, 임신, 육아, 가사, 학업, 가족 병간호 등)
4. 일자리에서 정년에 도달하여 공식적으로 퇴사함(정년퇴직)
5. 연로해서 그만둠
6. 일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움
7. 임금이 낮아서
8. 임금 이외 근로조건(복리후생, 근로시간, 승진, 장래전망)의 문제
9. 더 좋은 일자리로 이직(창업)하기 위해

10. 근무환경(장애인편의시설, 작업장환경)의 문제
11. 직장의 휴업, 폐업
12. 명예·조기퇴직, 정리해고
13.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계약기간 종료)
14.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
15. 지속적인 근무의 어려움(휴식 필요)
16. 장애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17. 기타(적을 것 :)

[2020년 이후 퇴사자만 응답]

E3-1) 위에서 말씀하신 퇴사 사유가 코로나 지속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까?

1.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음(전혀 관련 없음)
2. 일정 정도 영향을 받음
3. 많은 영향을 받음

E4) 이전에 어디에서 일하였습니까?

- ◆ E4-1-1) 사업체(직장)명 : _____
- ◆ E4-1-2) 사업체(직장)가 주로 하는 일 : _____ □□

E5) 이전 직장(사업체)에서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 ◆ E5-1-1) 내가 한 일 : _____
- ◆ E5-1-2) 직명(직위) : _____ □□□

◆ E4-2) 다니던 직장(사업체)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1.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과 같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2. 공공근로, 복지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과 같은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3. 공무원, 교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일자리
4. 그 외 일반사업체

◆ E4-3) 다니던 직장(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 | | |
|-----------|--------------|
| 1. 1~4인 | 6. 100~299인 |
| 2. 5~9인 | 7. 300~499인 |
| 3. 10~29인 | 8. 500~999인 |
| 4. 30~49인 | 9. 1,000인 이상 |
| 5. 50~99인 | |

E6) 이전 직장(일)에서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

- ◆ 임금근로자
 - 1. 상용근로자
 - 2. 임시근로자
 - 3. 일용근로자
- ◆ 비임금근로자
 - 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6. 무급가족종사자

E-II) 희망하는 일자리(직장)에 대한 질문입니다.**E7) 희망하는 직장(일)의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1. 임금근로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
2. 비임금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 (E8응답 후 E11번으로)

E8) 희망하는 일자리(직장)의 사업 및 업무내용은 무엇입니까?**◆ E8-1) 희망 일자리(직장) 사업**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
10. 정보통신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부동산업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 교육 서비스업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 활동
21. 국제 및 외국기관

◆ E8-2) 희망 일자리(직장) 업무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E9) 희망하는 직장(사업체)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1.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과 같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2. 공공근로, 복지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과 같은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3. 공무원, 교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일자리
4. 그 외 일반사업체

E10) 희망하는 근무시간 형태는 무엇입니까?

1. 전일제 근로
2. 시간제 근로

E11) 일자리에서 희망하는 월평균 소득(세금공제 전)은 최소 어느 정도 입니까?

월평균 만원

E11-1) 정확한 월평균 소득을 응답하기 어려운 경우, 대략 얼마정도 희망하십니까?

- | | |
|-----------------|-----------------|
| 1. 50만원 미만 | 4. 150~200만원 미만 |
| 2. 50~100만원 미만 | 5. 200~300만원 미만 |
| 3. 100~150만원 미만 | 6. 300만원 이상 |

E-III) 구직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E12) 직장(일)을 구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얼마동안 계속 해왔습니까?

 개월

E12-1) 정확한 시기가 기억나지 않는 경우,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요?

1. 6개월 미만 2. 6개월~1년 미만 3. 1년 이상

E13) 주로 어떠한 방법과 경로로 직장(일)을 구해 보았습니까? (주된 것 2개까지 선택)

E13-1) 구직 방법은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 ()

1. 구직등록, 구직응모(주로 공공, 민간알선기관)
2. 시험 접수, 시험 응시
3. 사업체 문의, 방문, 원서제출
4. 취업(채용)박람회 참가
5. 자영업 준비
6. 부모(친척), 친구, 동료 등 지인에게 소개 부탁
7. 기타(적을 것 : _____)

E13-2) 주로 어떤 경로로 직장(일)을 알아보았습니까? (), ()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워크투게더 포함)
2.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워크넷 포함)
3.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 등)
4.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5. 민간 취업알선기관(복지관 제외)
6. 대중매체(신문, 인터넷, 광고 등)
7. 학교, 학원
8. 부모(친척), 친구, 동료 등 지인
9. 기타(적을 것 : _____)

E14)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실업상태로 있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것 2개까지 선택)

1순위 2순위

1. 학력, 경력(경험), 기술 부족(자격 제한)
2. 수입이나 임금이 맞지 않아서
3. 근무환경이나 근무시간 등이 맞지 않아서
4. 구직(취업, 창업) 정보접근의 어려움
5. 취업알선기관 및 서비스 부재, 접근의 어려움
6.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7.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아서
8.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건강문제)
9. 심리적 불안감이나 초조함(자신감 결여)
10. 신체기능의 제한
11. 이동능력의 제한
12. 의사소통의 제한
13. 기타(적을 것 : _____)
14. 특별히 없었음

E15) 귀하는 어느 정도 수준의 근로가 가능합니까?

1. 일반적인 근로가 가능
2. 단시간 또는 단순한 근로가 가능

E16) 코로나 지속이 귀하께서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데 있어 가장 크게 영향을 준 부분은 무엇입니까?

1. 일자리 채용 규모가 줄어들거나 채용 계획이 없어짐
2. 채용이나 입사 시험 일정이 연기됨
3. 스스로 취·창업 일정을 연기함
4. 이력서 제출, 구직 응모 등 구직활동 자체가 어려워짐
5. 취·창업에 필요한 기술습득, 학원수강, 자격증 취득 등이 어려워짐
6. 코로나 지속으로 특별히 취업이나 창업에 영향을 받은 것이 없음

E17) 향후 귀하의 취업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까?

1. 좋아질 것임
2. 변하지 않을 것임
3. 나빠질 것임

E18) 귀하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입니까? 가장 최근 확진 시기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코로나 확진 경험이 있는 경우 응답]

E18-1) 귀하는 현재 코로나 증상이나 후유증으로부터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입니까?

1. 있음 → [] 년 [] 월 (※ 2019년 12월 0전 응답 불가)
2. 없음 → (G1번으로)

1. 전혀 회복하지 못했음
2. 회복하지 못한 편임
3. 회복한 편임
4. 완전히 회복하였음

(G1번으로)

F. 비경제활동인구

F1) 지난 주에 직장(일)을 원하였습니까?

1. 원하였음 → (F2번 응답 후 F3번으로)
2. 원하지 않았음 → (F2번 응답 후 F4번으로)

F2) 지난 주에 직장(일)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1. 있었음
2. 없었음

F3) 지난 4주내에 직장(일)을 구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2.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3. 근처(주변)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4.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5.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6.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7.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주가 채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8. 구직(취업·창업) 정보나 방법을 몰라서
9. 자영업을 하려고 하지만 창업할 능력, 상황이 안 되어서
10. 육아 또는 가사로 인해
11.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학생이어서)
12.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
13.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로(건강문제)
14. 취업/창업을 준비 중이어서
15. 일을 하게 되면 기초수급자격이 박탈될 것을 우려해
16. 취업 이외의 활동 때문에(진학, 결혼 등)
17. 기타(적을 것 : _____)

F3-1) 위에서 말씀하신 직장(일)을 구하지 않은 이유가 코로나 지속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까?

1.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음(전혀 관련 없음)
2. 일정 정도 영향을 받음
3. 많은 영향을 받음

(F5번으로)

F4) 지난 주에 직장(일)을 원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2.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3. 그저 일하고 싶지 않아서 또는 일할 필요가 없어서
4.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5.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생각해서
6.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7.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때문에
8. 일해 본 경험이 없어서(직장생활에 대한 자신감 부족)
9. 자영업을 하려고 하지만 창업할 능력, 상황이 안 되어서
10. 육아 또는 가사로 인해
11.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학생이어서)
12.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
13.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로(건강문제)
14. 취업/창업을 준비 중이어서
15. 일을 하게 되면 기초수급자격이 박탈될 것을 우려해
16. 취업 이외의 활동 때문에(진학, 결혼 등)
17. 기타(적을 것 : _____)

F4-1) 위에서 말씀하신 직장(일)을 원하지 않은 이유가 코로나 지속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까?

1.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음(전혀 관련 없음)
2. 일정 정도 영향을 받음
3. 많은 영향을 받음

F5) 지난 1년 동안 구직활동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마지막으로 구직활동을 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1. 있었음 →

2	0	2	
---	---	---	--

 년

--	--	--

 월 2. 없었음

F6) 지난 주에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1. 육아
2. 가사
3. 정규교육기관 통학(온라인 등교 등)
4. 입시학원 통학
5.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6. 취업준비

7. 진학준비
8. 연로
9. 심신장애
10. 쉬었음

↳ F6-1) 지난주에 쉰 이유가 코로나19 지속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까?

1. 코로나19 지속과 관련이 있음
2. 코로나19 지속과 관련이 없음

11. 기타 (적을 것 : _____)

F7) 전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그 일을 그만둔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1. 년 개월
2. 없었음 → (F12번으로)

F8) 이전 직장(일)을 그만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1.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또는 장애상태의 악화) | 10. 근무환경(장애인편의시설, 작업장환경)의 문제 |
| 2.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건강문제) | 11. 직장의 휴업, 폐업 |
| 3. 기타 개인·가족 관련 사유(결혼, 임신, 육아, 가사, 학업, 가족 병간호 등) | 12. 명예·조기퇴직, 정리해고 |
| 4. 일자리에서 정년에 도달하여 공식적으로 퇴사함(정년퇴직) | 13.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계약기간 종료) |
| 5. 연로해서 그만둠 | 14.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 |
| 6. 일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움 | 15. 지속적인 근무의 어려움(휴식 필요) |
| 7. 임금이 낮아서 | 16. 장애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
| 8. 임금 이외 근로조건(복리후생, 근로시간, 승진, 장래전망)의 문제 | 17. 기타(적을 것 :) |
| 9. 더 좋은 일자리로 이직(창업)하기 위해 | |

[2020년 이후 퇴사자만 응답]

F8-1) 위에서 말씀하신 퇴사 사유가 코로나 지속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까?

1.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음(전혀 관련 없음)
2. 일정 정도 영향을 받음
3. 많은 영향을 받음

F9) 이전에 어디에서 일하였습니까?

- ◆ F9-1-1) 사업체(직장)명 : _____
◆ F9-1-2) 사업체(직장)가 주로 하는 일 : _____ □□

◆ F9-2) 다니던 직장(사업체)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1.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과 같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2. 공공근로, 복지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과 같은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3. 공무원, 교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일자리
4. 그 외 일반사업체

◆ F9-3) 다니던 직장(사업체)의 종사자수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 | | |
|-----------|--------------|
| 1. 1~4인 | 6. 100~299인 |
| 2. 5~9인 | 7. 300~499인 |
| 3. 10~29인 | 8. 500~999인 |
| 4. 30~49인 | 9. 1,000인 이상 |
| 5. 50~99인 | |

F10) 이전 직장(사업체)에서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 ◆ F10-1-1) 내가 한 일 : _____
◆ F10-1-2) 직명(직위) : _____ □□□

F11) 이전 직장(일)에서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

- | | |
|----------|-----------------|
| ◆ 임금근로자 | ◆ 비임금근로자 |
| 1. 상용근로자 | 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 2. 임시근로자 | 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 3. 일용근로자 | 6. 무급가족종사자 |

F12) 향후 1년 이내 일자리(직장)를 가질 의향이 있습니까?

1. 예 → (F14번으로)

2. 아니오

F13) 향후 1년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일할 의향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F18번으로)

F14) 희망하는 직장(일)의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1. 임금근로(상용, 임시, 일용근로자) → (F15번으로)
2. 비임금근로(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F14-1) 비임금근로를 희망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가족 사업에 참여하거나 물려받아서
2. 더 많은 소득이 가능해서
3. 임금근로자 취업을 원했으나 취업하기가 어려워서
4. 유연한 근로시간
5. 재택근무가 가능해서
6.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
7. 내 장애 상황에 부합해서
8. 기타(적을 것 :) → (F15번 응답 후 F18번으로)

F15) 희망하는 일자리(직장)의 사업 및 업무내용은 무엇입니까?**◆ F15-1) 희망 일자리(직장) 사업**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
10. 정보통신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부동산업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 교육 서비스업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 활동
21. 국제 및 외국기관

◆ F15-2) 희망 일자리(직장) 업무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비임금근로 희망자는 F18번으로)

F16) 희망하는 직장(사업체)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1.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과 같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2. 공공근로, 복지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과 같은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3. 공무원, 교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일자리
4. 그 외 일반사업체

F17) 희망하는 근무시간 형태는 무엇입니까?

1. 전일제 근로
2. 시간제 근로

F18) 귀하는 일자리 희망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수준의 근로가 가능합니까?

1. 일반적인 근로가 가능
2. 단시간 또는 단순한 근로가 가능
3. 집안 일 정도만 가능
4. 집안 일도 하기 어려움

F19) 귀하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입니까? 가장 최근 확진 시기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코로나 확진 경험이 있는 경우 응답]

F19-1) 귀하는 현재 코로나 증상이나 후유증으로부터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입니까?

1. 있음 → [] 년 [] 월 (※ 2019년 12월 0전 응답 불가)
2. 없음 → (G1번으로)

1. 전혀 회복하지 못했음
2. 회복하지 못한 편임
3. 회복한 편임
4. 완전히 회복하였음

(G1번으로)

G. 고용서비스 욕구

G1) 취업을 하기 위해(또는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합니까? 원하는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1. 취업알선, 일자리 정보 제공, 장애인 특별채용 등 취업지원 → (G1-1번으로)
 2. 취업 후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근로지원, 근무환경 개선, 작업보조기기 지원 등) → (G1-2번으로)
 3. 직업능력개발훈련 → (G1-3번으로)
 4.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 작업장 근로
 5. 금전적 지원(임금보조, 세제 지원 등)
 6. 창업 지원(창업컨설팅, 창업정보 제공, 창업자금 융자 등)
 7. 차별금지, 인식개선 등 고용여건 조성
 8. 기타(적을 것 : _____)
 9. 특별히 없음
- (H1번으로)

G1-1) “취업알선, 일자리 정보 제공, 장애인 특별채용 등 취업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합니까? 원하는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1. 취업알선(취업성공패키지 등 포함)
2. 진로지도, 직업능력평가 등 구직(직업) 상담
3. 일자리 정보 제공
4. 현장실습, 인턴, 연수 등
5. 장애인 구분모집/특별채용
6. 채용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
7. 대인관계 향상 및 직장 적응 프로그램 제공
8. 이력서 작성, 면접기술 등의 구직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9. 기타(적을 것 : _____)

G1-1-1) 만약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3개월 이내에 즉시 참여하겠습니까?

1. 예
 2. 아니오
- ☞ (G1번 응답 결과에 따라 이동)

G1-2) “취업 후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합니까? 원하는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1. 수행업무에 대한 타인의 도움(근로 지원)
 2. 직무적응을 위한 지원(작업지도원)
 3. 근무환경(장애인 편의시설, 작업장 환경 등) 개선 지원
 4. 작업보조기기 지원(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확대독서기, 특수키보드 등)
 5. 근무시간 및 직무 조정
 6. 직업생활 및 고충처리 상담 등
 7. 출퇴근 지원
 8. 기타(적을 것 : _____)
- ☞ (G1번 응답 결과에 따라 이동)

G1-3) 만약 취업 연계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가 제공된다면 3개월 이내에 즉시 참여하겠습니까?

1. 예
 2. 아니오
- ☞ (H1번으로)

H. 가구 정보

H1) 귀댁의 가구주는 누구입니까?

- | | |
|------------|-----------------------|
| 1. 본인 | 8. 조부모 |
| 2. 배우자 | 9. 손자녀 |
| 3. 자녀 | 10. 배우자의 부모 |
| 4. 자녀의 배우자 | 11. 배우자의 형제자매 |
| 5. 아버지 | 12. 기타(적을 것 : _____) |
| 6. 어머니 | 13. 시설에 거주함 → (H3번으로) |
| 7. 형제자매 | |

H2) 귀댁의 총 가구원수는 몇 명입니까?

- ◆ 본인을 포함한 총 가구원수 ()명
- ◆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가구원수(본인 포함) ()명

H3) 귀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입니까?

1. 예 → (H3-1로)
 2. 아니오 → (H4로)

H3-1) 받고 계신 급여 종류를 모두 말씀해 주세요.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H4) 귀 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세금공제 이전 금액)은 얼마입니까?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월평균

--	--	--	--

 만원

H4-1) 정확한 금액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요?

- | | |
|-----------------|-------------------|
| 1. 50만원 미만 | 7. 400~500만원 미만 |
| 2. 50~100만원 미만 | 8. 500~600만원 미만 |
| 3. 100~150만원 미만 | 9. 600~700만원 미만 |
| 4. 150~200만원 미만 | 10. 700~1000만원 미만 |
| 5. 200~300만원 미만 | 11. 1000만원 이상 |
| 6. 300~400만원 미만 | |

※ 마지막으로 본 조사나 장애인 고용정책 등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